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관광숙박시설 건립 및 지원제도 안내서

2013. 2

서울특별시
(관광정책과)

목 차

1] 관광호텔

1. 관광숙박시설의 종류 및 체계
2. 관광호텔 건축 흐름도
3. 관광숙박시설 용적률에 관한 특례 운영기준
4.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특례 운용기준 Q&A
5. '12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지침

2] 여관·모텔 등 일반숙박시설

1. 우수 숙박시설 “굿스테이” 사업 소개
 - ※ 한국관광공사의 ‘굿스테이’ 지정사업은 2013년 서울시 ‘이노스텔’과 통합할 예정이므로, 사업내용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2. 우수 숙박시설 지정 규약

3]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1.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2.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신청서 등

4] 관계법령 및 관광숙박시설 현황

1. 관광진흥법
2. 관광진흥법 시행령
3.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4. 관광숙박시설 현황
 - ※ 자치구 관광호텔 담당자 및 연락처

I . 관 광 호 텔

1. 관광숙박시설의 종류 및 체계
2. 관광호텔 건축 흐름도
3. 관광숙박시설 용적율에 관한 특례 운영기준
4. 관광숙박시설 용적율에 관한 특례 Q&A
5. '12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지침

1. 관광숙박시설의 종류 및 체계

□ 법규정이 있는 숙박시설

관계법령	구분	형태	주요내용
관광진흥법 제3조	관광숙박업	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휴양콘도미니엄업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호텔업	관광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수상관광호텔업	수상에 구조물 또는 선박을 고정하거나 매어 놓고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한국전통호텔업	한국전통의 건축물에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가족호텔업	가족단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호스텔업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로서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과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을 위한 문화·정보 교류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
	관광편의시설업	관광펜션업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자연·문화 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한옥체험업	한옥에 숙박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한옥 : 주요 구조부가 목조구조로서 한식기와 등을 사용한 건축물 중 고유의 전통미를 간직하고 있는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함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관광편의시설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p>도시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주택, 아파트 · 다가구주택(3층 이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 · 다세대주택(4층 이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 · 연립주택(4층 이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초과) <p>※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 제외</p>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숙박업	숙박업	<p>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함.</p> <p>※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외</p>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숙박업(세분)	일반 숙박업	<p>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은 제외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p>
		생활 숙박업	<p>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을 포함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사시설과 환기를 위한 시설이나 창문을 설치 · 객실별로 욕실 또는 샤워실을 설치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	숙박시설	일반숙박시설	호텔, 여관, 여인숙
		관광숙박시설	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고시원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함
	제2종근린생활 시설	고시원	<p>「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 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을 말함.</p> <p>※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p>
	업무시설	오피스텔	<p>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의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해양 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함.</p>
	공동주택	기숙사	<p>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p> <p>※ 「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p>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다중이용업	고시원업	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농어촌정비법 제2조	농어촌관광휴양 사업	농어촌민박사업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숙박·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사업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	청소년수련시설	유스호스텔	청소년의 숙박 및 체재에 적합한 시설·설비와 부대·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 지원 등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시설

□ **호텔업의 등록기준(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관련 별표1)**

시 설 명	시설 기준
관광호텔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을 30실 이상 갖추고 있을 것 (2)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3)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수상관광호텔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상관광호텔이 위치하는 수면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또는 「하천법」에 따라 관리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을 것 (2)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이 30실 이상일 것 (3)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4) 수상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오수 저장·처리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5) 구조물 및 선박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한국전통호텔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물의 외관은 전통기옥의 형태를 갖추고 있을 것 (2)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4)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가족호텔업	<p>(1) 가족단위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취사시설이 객실별로 설치되어 있거나 총별로 공동취사장이 설치되어 있을 것</p> <p>(2)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이 30실 이상일 것</p> <p>(3) 객실별 면적이 19제곱미터 이상일 것</p> <p>(4)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p> <p>(5)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p>
호스텔업	<p>(1)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객실을 갖추고 있을 것</p> <p>(2)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화장실,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다만, 이러한 편의시설은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p> <p>(3)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문화·정보 교류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p> <p>(4)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p>
휴양콘도미니엄업	<p>가. 객실</p> <p>(1) 같은 단지 안에 객실이 30실 이상일 것</p> <p>(2) 관광객의 취사·체류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p> <p>나. 매점 등</p> <p>매점이나 간이매장이 있을 것. 다만, 여러 개의 동으로 단지를 구성할 경우에는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p> <p>다. 문화체육공간</p> <p>공연장·전시관·미술관·박물관·수영장·테니스장·축구장·농구장, 그 밖에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문화체육공간을 1개소 이상 갖춘 것. 다만, 수개의 동으로 단지를 구성할 경우에는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관광지·관광단지 또는 종합휴양업의 시설 안에 있는 휴양콘도미니엄의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라.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p>

□ 관광사업계획 승인기준(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사업계획 승인기준) ①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의 내용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사업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능력 및 방안이 있을 것
3. **일반 주거지역의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의 위락시설은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아야 하고, 준주거지역의 경우에는 다목의 기준에 맞을 것.** 다만, 일반 주거지역에서의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축 또는 기존 건축물 전부를 철거하고 다시 축조하는 개축을 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의 경우에는 가목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가. **대지가 폭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연접할 것.** 다만, 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조례로 이 기준을 강화할 수 있다.
 - 나.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그 건물의 채광을 위하여 설치하는 창이나 문이 향하는 방향으로 **인접된 대지의 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가 공원·광장·도로·하천이나 그 밖의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空地)인 경우에는 그 인접된 대지의 반대편 경계선을 말한다)**까지의 수평거리의 두 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다. 소음 공해를 유발하는 시설은 지하층에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주변의 주거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라. **대지 안의 조경은 대지면적의 20퍼센트 이상으로 하되,** 대지 경계선 주위에는 다자란 나무를 심어 인접 대지와 차단하는 수림대(樹林帶)를 조성할 것

제14조(관광숙박시설 건축지역) 법 제16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일반주거지역
2. 준주거지역
3. 준공업지역
4. 자연녹지지역

《관광진흥법 제16조 제5항》

제16조(사업계획 승인 시의 인·허가 의제 등) ①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 또는 해제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⑤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업계획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 안의 위락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호의 용도지역의 시설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6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거지역에서는 주거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승인기준에 맞는 경우에 한한다.

1. 상업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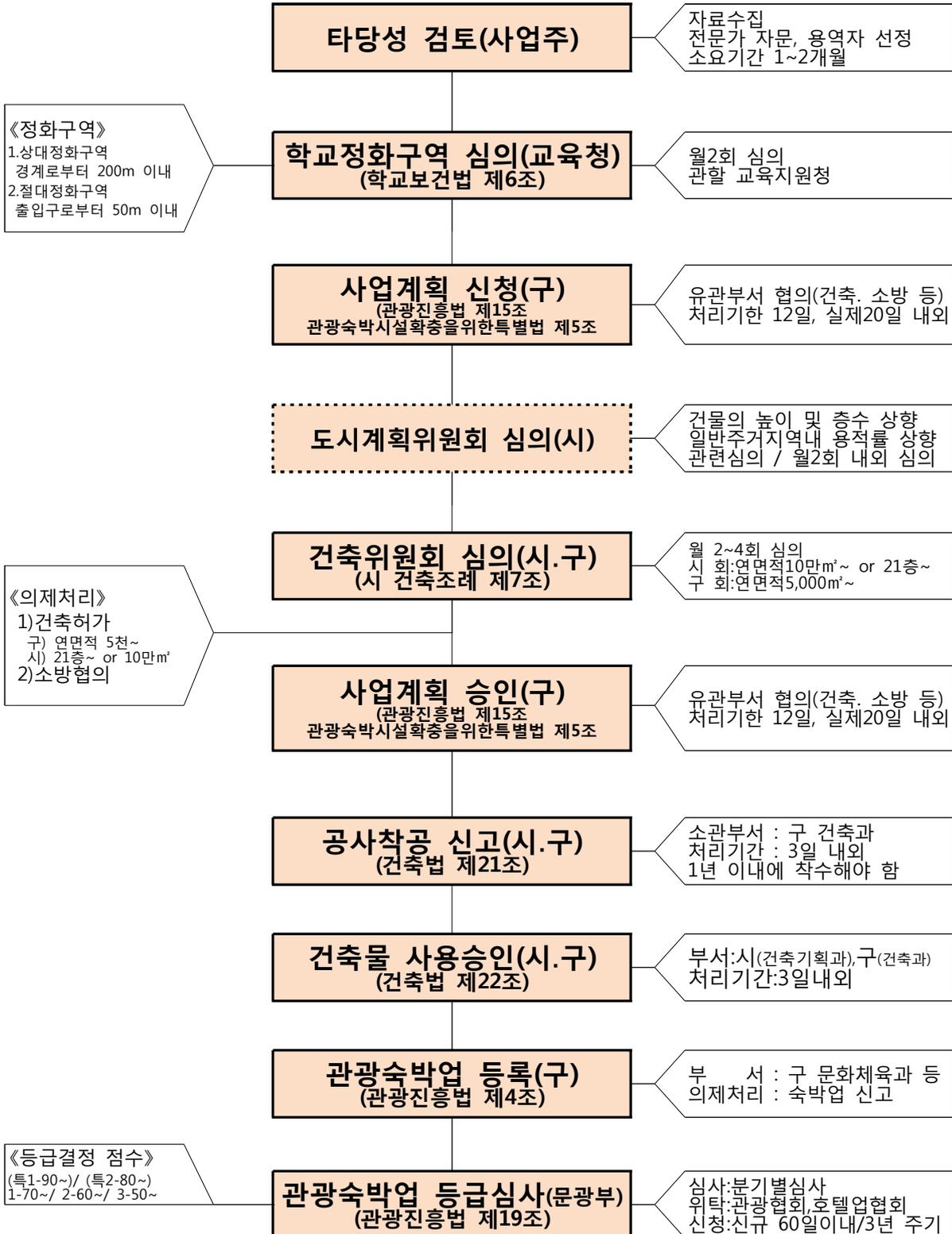
2. 주거지역·공업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법규정이 없는 숙박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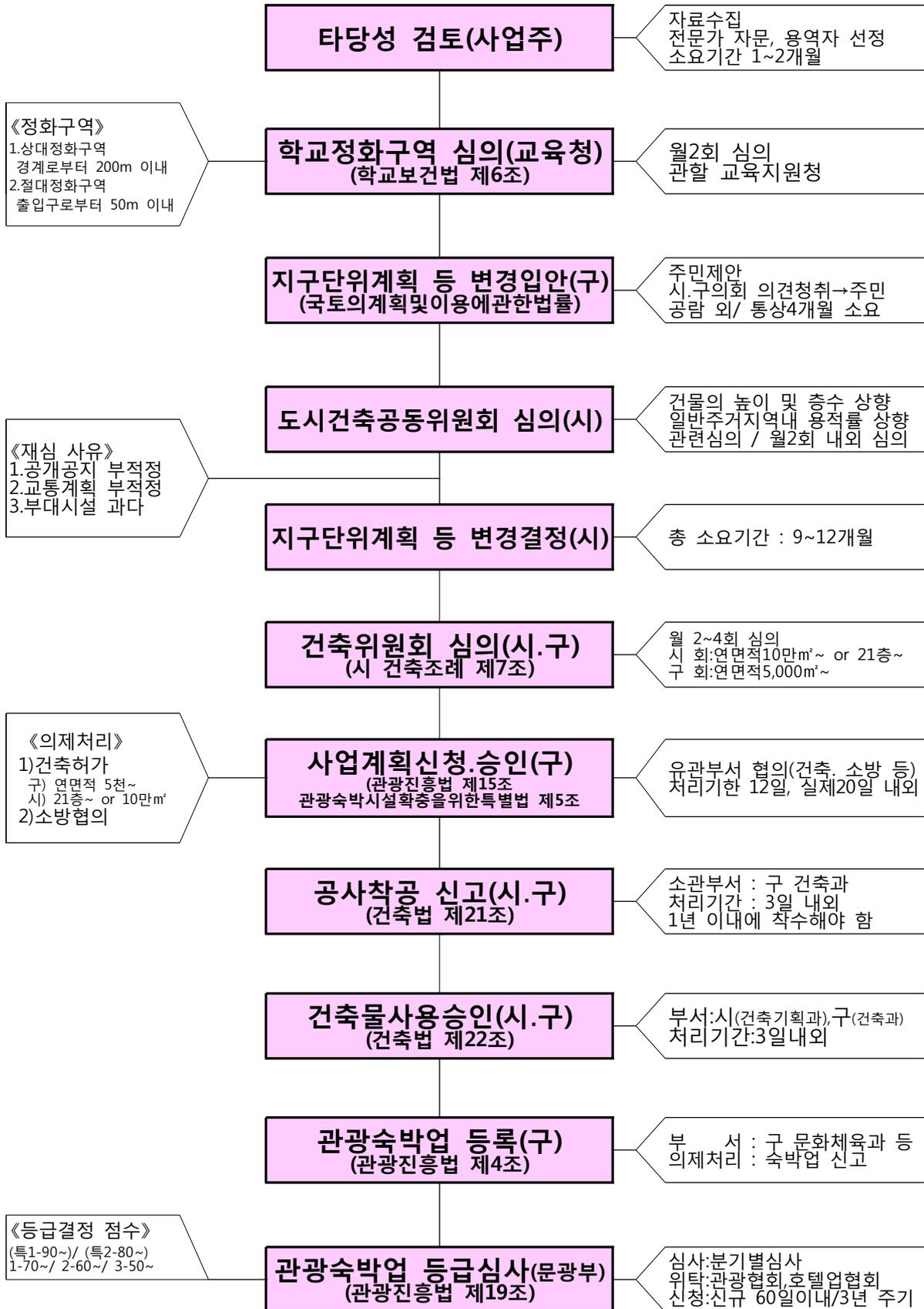
시 설 명	주 요 내 용	제도권 편입 방안
홈스테이	장기체류 관광객을 대상으로, 1실에 1인 혹은 지인 또는 동료와 함께 숙박하도록 운영되는 시설 숙박과 함께 호스트와 게스트간 생활문화를 교류할 수 있는 체험형 숙박시설	대부분 거주하는 주택(단독·다가구·아파트)의 빈방을 이용하여 공급하는 형태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설치기준에 가장 적합한 숙박시설임 ※ 외국어 가능, 면적제한(230㎡미만) 등 일부 설치기준은 제도개선 필요
게스트하우스	단기체류 관광객을 대상으로, 1실에 지인이나 동료가 아닌 4~5인이 숙박할 수 있는 도미토리 형식(2층 침대 비치 등)으로 운영되는 시설 숙소 해결을 위해 이용하며, 운영자도 수익 창출에 우선을 두는 숙박시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설치기준에 적합한 경우 제도권 편입이 가능하나, 운영자 주거와 분리된 시설, 업무시설인 오피스텔 등에서 공급되는 경우 제도권 편입이 어려운 실정임 ※ 관광진흥법 시행령상 관광편의시설업에 관련규정 신설 등 검토 추진
서비스드레지던스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비즈니스센터, 휘트니스센터 등의 부대시설과 취사·세탁 시설을 갖추고 장기투숙 목적의 내·외국인을 주대상으로 임대 및 숙박영업을 하는 “호텔형 주거시스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생활숙박업(숙박과 취사가 가능한 형태)이나 관광호텔 설치기준에 맞게 시설물 변경 후 제도권 편입 유도
한옥체험업	한옥에 숙박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한옥 : 주요 구조부가 목조구조로서 한식기와 등을 사용한 건축물 중 고유의 전통미를 간직하고 있는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함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관광편의 시설업으로(한옥체험업) 신고후 영업

2. 관광호텔 건축 흐름도

□ 일반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환경정비구역)



□ 관광숙박업 사업처리 절차

처리절차	주요내용
① 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자 : 사업자 ○ 접수 및 처리기관 : 구청장 ○ 처리기간 : 12일 - 건설계획서 2부(건설장소, 총부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 공사계획, 공사자금 및 조달방법, 시설별·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조감도) - 신청인(법인인 경우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 개요서 2부(분양 또는 회원 모집하는 경우만) - 인허가 등 의제를 받거나 신고하려는 경우 해당법령에서 제출토록 한 서류 - 신고를 이미 하였거나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② 서류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시,군,구 및 관련과 협의(처리기간에서 제외)
③ 사업계획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인권자 : 구청장 ○ 승인시 의제 처리 - 농지전용 허가, 산지전용 허가·신고,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 사방지 지정 해제, 초지전용 허가 - 하천공사 등의 허가·실시계획의 인가, 하천 점용허가 -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사도개설의 허가 - 개발행위의 허가, 분묘의 개장신고·허가
④ 사업계획 승인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청장 ⇒ 사업자
⑤ 건축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건축법에 의한 개별허가)
⑥ 착공 및 준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 ○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착공, 착공한 날부터 5년 이내 준공
⑦ 관광호텔 등록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 ⇒ 구청장 ○ 처리기간 : 7일 ○ 구비서류(시행규칙 제2조) - 사업계획서 1부 - 신청인(법인의 경우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 -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처리절차	주요내용
⑦ 관광호텔 등록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모집계획인 호텔·콘도가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보증보험가입 증명서류 - 외국인투자 증명 서류(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에 포함된 부대영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관청 신고를 하였거나 인허가를 받은 경우 증명서류 (등록시 의제 처리되는 서류 제외) - 신고, 인허가 의제 처리되는 경우 신고서 또는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 1부 - 의제 처리되는 사항의 신고, 인허가를 받은 경우 증명하는 서류 1부. -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각 1부 - 시설별 일람표(별지2호 서식) 각 1부
⑧ 관광숙박업 등록심의 위원회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구 관광숙박등록심의위원회 ○ 위원회 심의시 다음사항 일괄 허가 또는 신고한 것으로 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 목욕장업, 이·미용업, 세탁업의 신고 -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의 허가 또는 신고 - 주세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허가 또는 신고 -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환전업무의 등록 - 담배사업법에 의한 담배소매인의 지정 - 학교보건법에 의한 유흥시설 설치 인정(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경우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의 신고 - 해상교통안전법에 의한 해상레저 활동의 허가 - 의료법에 의한 부속의료기관의 개설신고 또는 허가
⑨ 관광숙박업 등록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청장 등록증 교부 ⇒ 사업자
⑩ 영업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등록후 60일 이내에 등급결정 신청)

※ 해당부지가 학교정화구역 대상여부 확인(대지경계선에서 200m 이내)

⇒ 해당되면 반드시 사업계획 승인신청 전에 관할 교육청에서 심의후 사업추진

□ 관광호텔 등록절차

구 분	관련법규	담당기관 · 부서	비 고
토지취득	관광진흥법, 국토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서울시도시계획조례, 지구단위계획 등	소관행정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가능 지역 · 상업지역 · 일반주거지역 · 준공업지역 · 자연녹지지역
사업계획 승인신청	관광진흥법 제15조, 동법시행령제10조	자치구청장	
사업계획승인	관광진흥법 제15조, 동법시행령제13조	자치구청장	
건축허가 및 공사시행	건축법, 서울시건축조례, 서울시도시계획조례	자치구청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모에 따라 건축심의,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 수립
관광숙박업 등록신청	관광진흥법제4조, 동법시행규칙제2조	자치구청장	
등록심의	관광진흥법제17조, 동법시행령제3조	등록심의위원회 (자치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호텔업 등록기준
등급판정	관광진흥법제19조, 동법시행령제22조	문광부/ 관광호텔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1 · 2급, 1 ~ 3등급 (5단계)
등록증교부	관광진흥법제4조	자치구청장	
사업시행	공중위생관리법, 외환관리법, 관광진흥법, 식품위생법, 주세법, 지방세법등	소관행정기관의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텔오픈 및 영업개시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 관련

3. 관광숙박시설 용적률에 관한 특례 운영기준

I 개 요

□ 검토배경

- '12.7.27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용적률 특례 규정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도시관리 및 양질의 관광숙박시설 공급지원을 위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용적률·높이관리 운영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관광숙박시설 특별법 상 건축기준 완화규정

- 각종 개발계획에서 결정된 건축물 총수, 높이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완화(제2종 및 3종은 각각 50%, 100%를 더한 범위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추가 완화)

구 분		용 적 률				비 고	
		국토법 제78조	국토법시행령 제85조	서울시 조례 제55조	관광특별법 시행령		
용도 지역	주거지역	제1종 일반	500	100 ~ 200	150	200	위원회
		제2종 일반		150 ~ 250	200	300(+50)	
		제3종 일반		200 ~ 300	250	400(+100)	
		준주거		200 ~ 500	400	500	
	상업지역	중 심	1,500	400 ~ 1,500	1,000(800)	1,500	
		일 반		300 ~ 1,300	800(600)	1,300	
		근 린		200 ~ 900	600(500)	900	
		유 통		200 ~ 1,100	600(500)	1,100	
	공업지역	준공업	400	200 ~ 400	400	400	
	녹지지역	보 전	100	50 ~ 80	50	80	
생 산		50 ~ 100		50	100		
자 연		50 ~ 100		50	100		

〈 관광숙박시설 특별법령 용적률 운영 체계 〉

□ 현행 용적률 완화 운용기준

【 일반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

○ 준주거, 상업지역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례상 용적률 20% 범위내 완화

종 전	변 경	일반건축물 허용용적률	관광숙박시설 적용 허용용적률	관광숙박시설 적용 상한용적률
3종일반	일반상업	610%이하	720%이하	960%이하
	준주거	350%이하	400%이하	480%이하
일반주거	일반상업	630%이하	740%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
	준주거	360%이하	420%이하	
준주거	일반상업	660%이하	770%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
	준주거	400%이하	480%이하	
일반상업	일반상업	800(600)%이하	960(720)%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중심상업	중심상업	1,000(800)%이하	1,200(960)%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준공업	일반상업	660%이하	770%이하	960%이하

【 도시환경정비구역 】

○ 도심부 상업지역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조례 미적용)

상한용적률	1,200
허용용적률	800
기준용적률	600

- 공공시설 부지제공 및 공개공지 추가 설치시 1,200%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 부여
- 200% 범위 안에서 공공기여에 따라 인센티브 부여
 - 관광숙박시설 복합비율(20~80%)에 따라 50~200%까지 차등부여
- 4대문안 도시환경정비구역 용적률 800%이하

○ 도심외 상업지역 : 용도지역 용적률의 20% 범위안에서 완화

〈 마포지역 〉	〈 청량리지역 〉	〈 용산·영등포·신촌 등 〉
상한용적률 1,000	상한용적률 1,000	상한용적률 1,600
호텔 도입시 960	호텔 도입시 960	호텔 도입시 960
허용용적률 800	허용용적률 800	허용용적률 800
기준용적률 700	기준용적률 800	기준용적률 300~600

- 마포지역은 2020 기본계획 수립시 공공기여 확대를 위해 허용용적률 도입 (자치구 요청)
- 청량리지역은 도심재개발 사업의 용적률 체계 유지 (허용용적률 개념 없음)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수립된 용산·영등포·신촌 지역 등은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기준 적용

※ 사업별 용적률 적용체계

구 분	[도심부 상업지역]			[도심부 외 상업지역]		
	일반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일반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기준 용적률	600%이하	300~600%이하	600%이하	800%이하	300~600%이하	800%이하 (마포지역 700%)
허용 용적률		600%이하	800%이하		800%이하	(마포지역 800%)
숙박용도 도입시	720%이하	720%이하	800%이하 (허용용적률에 포함)	960%이하	960%이하	960%이하
상한 용적률	1,200%이하	1,200%이하	1,200%이하	1,600%이하	1,600%이하	1,000%이하

II

특별법 제정에 따른 용적률·높이 운용기준

□ 건축기준 완화 기본원칙

【 높이기준 관련 】

○ 도시경관 유지, 주거환경 보호 등을 위해 관계법령의 높이제한 규정 준수

- 국토계획법 : 자연녹지·제1종일반주거(4층이하), 제2종일반주거(7층이하)
자연경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조망가로미관지구, 최고고도지구 등
- 건축법 : 도로·일조권 사선제한, 가로구역별 높이기준
- 관광진흥법 : 일반주거지역 내 채광높이 한계선

○ 지역특성을 고려한 특정지역의 높이기준 체계 준수

- 도심부는 역사성을 보존하고, 내사산으로 둘러싸인 지형특성을 고려한 점진적인 스카이라인의 변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심부발전계획 및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높이기준 준수 (30~110m)
-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높이계획 준수

【 용적률 적용 관련 】

○ 주거지역 내 밀도증가로 인한 주거환경 저해 최소화 및 주변지역 토지이용 부조화에 따른 도시경관 훼손 방지를 위해 관계법령 및 특정지역 높이 기준 범위 내에서 지역별·사업별 특성을 고려 용적률 적용

- 일반주거지역은 위락시설 용도배제, 입지조건 충족시 용적률 완화 적용
- 특별법령 용적률과 조례상 용적률 차이에 대하여 입지여건, 건축계획, 교통처리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용적률 차등 부여 (정량적 기준)
- 주변지역과의 조화로운 높이계획 유도, 도로 등 기반시설의 과부하 방지, 공개공지 실효성 등에 대하여는 위원회 심의시 적정성 판단 (정성적 기준)

□ 용적률 세부 운용기준

① 일반지역

- 관광숙박시설 건축시 운용기준(정량적/정성적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 용적률 차등 적용

※ 관광숙박시설 인센티브 용적률 = 특별법령 용적률 - 조례상 용적률

용적률	용도 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	자연녹지
		1종일반	2종일반	3종일반	준주거	중심	일반	근린	유통		
특별법령(A)		200	250(300)	300(400)	500	1,500	1,300	900	1,100	400	100
조례용적률(B)		150	200	250	400	1,000	800(600)	600	600	400	50
인센티브(A-B)		50	50(100)	50(150)	100	500	500(700)	300	500	-	50

-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완화 대상지 입지조건

- 도로 접도조건 : 보조간선도로 이상 연접
- 부대시설로 위락시설 용도도입 불허

※ 2종(300%), 3종(400%) 추가 용적률 완화 대상지 입지요건

- 도로 접도조건 : 주간선도로 이상 연접
- 건축물 연면적 : 5천㎡ 이상

⇒ 입지조건 충족 대상지에 한하여 인센티브 용적률 부여

- 인센티브 용적률 부여기준 (정량적 기준)

항 목		처리기준 및 계수			비 고
		0.9	0.95	1.0	
입지 여건	상대정화구역	○	-	×	
	대지면적	500㎡ 미만	500~1,000㎡ 이하	1,000㎡ 이상	
건축 계획	공개공지 면적 ¹⁾	법정면적의 10%미만 추가 확보	법정면적의 10~20% 추가 확보	법정면적의 20% 이상 추가 확보	실효성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판단
	객실 비율 ²⁾	70%미만	70~80%	80%이상	
교통 처리	부지내 버스 주차 공간 확보	×	-	○	
	이면부 진출입 또는 완화차로 조성 여부	×	-	○	

- 1) 공개공지 의무 확보가 아닌 건축물(연면적 5천㎡ 미만)은 0.85 적용. 단, 확보시 최소 법정비율(5%)을 기준으로 상기항목 적용
- 2) 객실 비율 : 전체 연면적에 대한 객실 사용 바닥면적의 합계(호텔 운영을 위한 주차장, 기계실/전기실 등 지원시설 및 복도, 화장실 등 공용면적은 객실 연면적에 포함)

○ (도시계획·건축)위원회 심의시 고려사항 (정성적 기준)

항 목	주요 내용	비 고
① 건축계획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변지역과의 건축물 규모 및 높이의 조화 여부 일조량, 경관차폐 등 저층 주거지와 부조화 여부 건축물 형태 및 외부의 시각적 경관상의 적정성 지속가능한 건축구조, 친환경/신재생에너지 계획 포함 등 	
② 기반시설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면도로 등 주변 교통흐름 영향 최소화 공개공지 위치 및 기능 등 설치계획의 적정성 및 실효성 지하철, 버스정류장 등 대중교통의 접근성 	
③ 용도도입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물 1층부 가로활성화 가능 용도 배치 여부 객실 규모에 적절한 편의·부대시설 설치 여부 향후 관광숙박시설 운영계획의 적정성 등 	

※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에 대하여는 별도 체크리스트 마련후 시달 예정임(주택정책실)

○ 복합건축물(관광숙박시설 포함) 건축시

- 관광숙박시설 연면적 비율에 대해서만 완화 적용

< 응적률 산정예시 >

용도 지역	특별법 용적률 (A)	조례 용적률 (B)	인센티브 용적률 (C=A-B)	관광 숙박시설 비율 (D)	인센티브 확보 용적률 (E=(C×계수)×D)	계수	계수 적용					건축 가능 용적률 (F=B+E)	
							입지여건		건축계획		교통처리		
							상대 정화 구역	대지면적	공개 공지	객실 비율	버스 주차 공간		이면 도로 진출입
일반 상업	1,300	800	500	60%	243	0.81	○ 0.9	600㎡ 0.95	5.6% 0.95	83.3% 1	○ 1	○ 1	1,043

○ 2 이상의 용도지역이 걸치는 경우

- 특별법령에서 제시한 용적률 범위 내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 적용

※ 최소 면적기준(330㎡, 노선상업 660㎡) 이하인 경우 면적 가중평균값 적용

< 응적률 산정예시 >

- ◆ 대지면적 : 1,000㎡ (일반상업 600㎡, 3종일반 400㎡)
- ◆ 인센티브 용적률 (특별법령 용적률 - 조례 용적률) = 320%
 - 특별법령 용적률 = $\{(600 \times 1,300) + (400 \times 300)\} / 1,000 = 900\%$
 - 조례 용적률 = $\{(600 \times 800) + (400 \times 250)\} / 1,000 = 580\%$
- ※ 정량적 기준에 따라 인센티브 용적률 차등 부여

② 지구단위계획구역

○ 용적률 산정방법 : 일반지역과의 용적률 특례 정합성 유지

-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 (허용용적률 × 1.3α)} + 관광숙박시설 인센티브 용적률

※ 관광숙박시설 인센티브 용적률 = 특별법령 용적률 - 허용용적률

○ 용적률 운용체계 (예시)

종 전	변 경	특별법령 용적률 (A)	허용용적률 (B)	관광숙박시설 인센티브 용적률 (C=A-B)	상한용적률	
					일반건축물	관광숙박시설
1종 일반	1종일반	200% 이하	150% 이하	50% 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2종일반	250(300)% 이하	180% 이하	70(120)% 이하	200% 이하	300% 이하
	3종일반	300(400)% 이하	210% 이하	90(190)% 이하	250% 이하	400% 이하
	준주거	500% 이하	310% 이하	190% 이하	400% 이하	500% 이하
	일반상업	1,300% 이하	580% 이하	720% 이하	800% 이하	1,300% 이하
2종 일반	2종일반	250(300)% 이하	200% 이하	50(100)% 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3종일반	300(400)% 이하	230% 이하	70(170)% 이하	250% 이하	400% 이하
	준주거	500% 이하	330% 이하	170% 이하	400% 이하	500% 이하
	일반상업	1,300% 이하	600% 이하	700% 이하	800% 이하	1,300% 이하
3종 일반	3종일반	300(400)% 이하	250% 이하	50(150)% 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준주거	500% 이하	350% 이하	150% 이하	400% 이하	500% 이하
	일반상업	1,300% 이하	610% 이하	690% 이하	800% 이하	1,300% 이하
일반주거	준주거	500% 이하	360% 이하	140% 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
	일반상업	1,300% 이하	630% 이하	670% 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
준주거	준주거	500% 이하	400% 이하	100% 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일반상업	1,300% 이하	660% 이하	640% 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
일반상업	준주거	500% 이하	400% 이하	100% 이하	800% 이하	800% 이하
	일반상업	1,300% 이하	800(600)% 이하	500(700)% 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1,600(1,300%)이하
	중심상업	1,500% 이하	930(730)% 이하	570(770)% 이하	1,000% 이하	1,500% 이하
유통상업	유통상업	1,100% 이하	600(500)% 이하	500(600)% 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1,200(1,100%) 이하
근린상업	근린상업	900% 이하	600(500)% 이하	300(400)% 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1,200(1,000%) 이하
중심상업	중심상업	1,500% 이하	1,000(800)% 이하	500(700)% 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2,000(1,600%) 이하
준공업	준주거	500% 이하	400% 이하	100% 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일반상업	1,300% 이하	660% 이하	640% 이하	800% 이하	1,300% 이하

※ () 안은 4대문 안의 경우 적용

★ 2000.7.1. 이후 용적률이 높은 용도지역으로 변경되고, 용적률 완화를 받은 경우에는 변경된 용도지역의 용적률 범위 내에서 상한용적률을 적용

종 전	변 경	상한용적률			
		일반건축물		관광숙박시설	
		2000. 7. 1 이전	2000. 7. 1 이후	2000. 7. 1 이전	2000. 7. 1 이후
일반주거	준주거	800% 이하	400% 이하	800% 이하	500% 이하
	일반상업	1,600(1,200)% 이하	800(600)% 이하	1,600(1,300)% 이하	1,300% 이하
준주거	일반상업	1,600(1,200)% 이하	800(600)% 이하	1,600(1,300)% 이하	1,300% 이하

③ 도시환경정비구역

○ 도심부 상업지역

- 도심 역사환경 보전정책 및 과도한 밀도 증가 등을 고려하여 현행 도시환경정비기본 계획 상 용적률 체계 유지
 - 기준 600%, 허용 800%(호텔도입 인센티브 포함), 상한 1,200%

○ 도심부 외 상업지역

- 마포·청량리 지역
 - 마포지역 : 기준 700%, 허용 800%, 숙박허용 960%, 상한 1,300%
 - 청량리 : 기준 800%, 숙박허용 960%, 상한 1,300%
- 용산, 영등포, 신촌 등 :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 적용

□ 용적률 특례 적용 운용절차

○ 일반지역 : 자치구 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건축위원회 심의·허가절차 이행

- 2종(300%), 3종(400%) 용적률 완화는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 이행
-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닌 관광숙박시설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축위원회 또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통해 용적률 완화 적정여부 판단

○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도시환경정비구역

- 개별 사업단위로 지구단위/정비계획 수립(변경) 절차 이행

Ⅲ 행정 사항

□ 시행일

-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2012.7.28) 이후,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 사업부터 적용.

4.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특례 운영기준 Q&A

I. 관광숙박시설 특별법령 관련

- Q1. 관광숙박시설 건축가능 용도지역은 ?
- Q2. 특별법령 용적률 적용 범위는 ?
- Q3.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은 ?
- Q4. 각종 개발계획의 층수, 높이 완화 대상지는 ?

II. 용적률·높이 운영기준 관련

- Q5. 각종 개발계획에서 결정된 건축물 높이/층수는 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완화가 가능한지 ?
- Q6. 일반지역의 용적률 특례 적용 방법은 ?
- Q7. 일반주거지역도 용적률 완화를 받을 수 있는지 ?
- Q8. 위락시설의 용도 범위는 ?
- Q9. 2종과 3종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이 2가지로 운영되는데 그 차이가 무엇인지 ?
- Q10. 보조간선도로와 주간선도로로 설정한 사유 및 구분 방법은 ?
- Q11. 건축물 연면적을 5천㎡로 규정한 사유는 ?
- Q12. 특별법령 용적률 적용방법은 ?
- Q13. 정량적 기준 선정원칙은 ?
- Q14. 정량적 기준 항목별 적용방법은 ?
- Q15. 산정된 계수 적용방법은 ?
- Q16. 정성적 기준 적용방법은 ?
- Q17.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적률 적용 체계는 ?
- Q18. 도심부 도시환경정비구역의 현행 기본계획 상 용적률 체계 유지는 특별법령 제정 취지와 맞지 않는데 변경이 필요한 것이 아닌지 ?
- Q19. 도심부 외 도시환경정비구역의 용적률 적용 체계는 ?

III. 행정사항 관련

- Q20. 관광숙박시설 용적률에 관한 특례 운영기준 위상은 ?
- Q21.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 절차는 ?
- Q22.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닌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용적률 완화 적용 방법은 ?
- Q23. 도시계획 조례 제55조 17항의 용적률 완화(1.2배)와 특별법령 용적률 특례 차이점은 ?

I . 관광숙박시설 특별법령 관련

Q1. 관광숙박시설 건축가능 용도지역은 ?

- 관광숙박시설은 「관광진흥법」 제16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관광숙박시설 건축지역)에 의거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음

Q2. 특별법령 용적률 적용 범위는 ?

-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용적률에 관한 특례) 제1항에 의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 제1항의 범위까지 완화 가능**

Q3.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은 ?

- **각종 개발계획에서 결정된 건축물 층수, 높이 완화가 필요한 경우**
- **제2종일반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 제1항 범위에 **각각 50%, 100% 더한 범위에서 추가완화가 필요한 경우**

Q4. 각종 개발계획의 층수, 높이 완화 대상지는 ?

- 각종 개발계획의 층수, 높이는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층수, 높이가 아니라 특정지역의 높이기준을 시장이 정한 지역으로,
 - 국토계획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높이계획**
 - 도정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높이계획**
 - 건축법에 의한 **가로구역별 높이기준**
 - **도심부발전계획 상 도심부 높이계획** 등을 말함

II . 용적률 · 높이 운영기준 관련

Q5. 각종 개발계획에서 결정된 건축물 높이/층수는 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완화가 가능한지 ?

- 용적률 특례에 따른 도시경관 및 주거환경 저해 등 문제점 최소화를 위하여 **관계법령 및 특정지역의 현행 높이기준 범위 내**에서 지역별 ·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용적률을 적용할 예정임

Q6. 일반지역의 용적률 특례 적용 방법은 ?

- 지구단위계획구역과 도시환경정비구역이 아닌 일반지역의 용적률 특례 적용은 **특별법령의 용적률과 도시계획조례 상 용적률 차이**에 대하여 **정량적/정성적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로 차등 운용**할 예정임

Q7. 일반주거지역도 용적률 완화를 받을 수 있는지 ?

- 일반주거지역은 주거 · 교육환경 저해 방지 및 과도한 밀도증가로 인한 주변지역 토지이용 부조화 방지를 위하여 **위락시설 용도 배제 및 입지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량적/정성적 기준에 의한 인센티브 용적률을 부여**할 예정임

Q8. 위락시설의 용도 범위는 ?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을 말함
 - 가.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나. 유흥주점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 라. 무도장, 무도학원
 - 마. 카지노영업소

Q9. 2종과 3종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이 2가지로 운영되는데 그 차이가 무엇인지 ?

- 국토계획법 시행령 범위인 **2종(250%), 3종(300%)까지 용적률 적용은 보조간선도로 이상** 연접하고, **부대시설로 위락시설 용도도입 불허시 자치구 인허가 등을 거쳐 완화가 가능**하고,
- 국토계획법 시행령 범위를 초과하는 **2종(300%), 3종(400%)은 주간선도로 이상** 연접하고, **건축물 연면적이 5천㎡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용적률 완화 가능**

Q10. 보조간선도로와 주간선도로로 설정한 사유 및 구분 방법은 ?

- 기능적으로 위계가 높은 도로변을 중심으로 상업.업무, 근린생활 기능 등이 입지 하고, 주거지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보조간선도로 이상을 도로 접도조건으로 설정함
- 보조간선도로 및 주간선도로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도로의 기능에 의한 분류이며, 도로법에 의한 **관리주체 구분시 시도에 해당되는 도로**임 (시도중 도시고속도로와 연접한 대상지는 제외)

※ 특별시도 인정 노선현황 (2012.8.31 기준)

구 분	노선수	연 장(km)	정 의
계	166	1,012.64	
주간선도로	26	423.42	도시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도시 상호간이나 주요지방 상호간을 연결하여 대량 통과교통을 처리하는 도로로서 도시의 골격 을 형성하는 도로
보조간선도로	140	589.22	주간선도로를 집산도로 또는 주요 교통발생원과 연결하여 도시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생활권의 외곽 을 형성하는 도로

※ 특별시도 노선명 및 노선도면(별첨목록 참고)

Q11. 건축물 연면적을 5천㎡로 규정한 사유는 ?

- 관광숙박시설 연면적 5천㎡ 이상 건축물은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및 공개공지 확보 법정기준으로 양질의 관광숙박시설로서의 기능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Q12. 특별법령 용적률 적용방법은 ?

- 일반주거지역은 입지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지에 한정하고, 일반주거지역 외 지역은 입지조건에 관계없이 특별법령과 조례상 용적률 차이에 대하여 정량적 기준에 따라 용적률을 적용함

Q13. 정량적 기준 선정원칙은 ?

- 정량적 기준은 그 동안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 1.2배 용적률 완화 운영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권고 및 조건부 되었던 사항들을 수치화한 것으로
-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상대정화구역 유무, 양질의 관광숙박시설 확보를 위한 대지면적 적정성, 가로활성화 등을 위한 공개공지 면적 및 실효성, 부족한 숙박시설 확보를 위한 객실 확보 비율,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고려한 버스 주차공간 확보 여부, 주변 교통흐름 최소화를 위한 이면부 진출입 및 완화차로 조성 등 총 6개 항목을 정량적 기준으로 정함

Q14. 정량적 기준 항목별 적용방법은 ?

- 상대정화구역은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학생 위생정화구역 중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의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상대정화구역에 해당되면 계수 0.9를 적용하고, 상대정화구역이 아닌 경우 계수 1.0을 적용함
- 양질의 관광숙박시설 확보를 위하여 대지면적에 따라 500㎡ 미만은 계수 0.9, 500~1,000㎡는 0.95, 1,000㎡ 이상은 1.0을 적용함
- 공개공지 면적은 법정 초과 확보비율에 따라 계수를 차등 적용하고, 법정 의무 확보가 아닌 건축물(연면적 5천㎡ 미만)에 대해서는 0.85 계수를 적용함

건축물 연면적	공개공지 법정 확보면적	계 수		
		0.9	0.95	1.0
		법정면적 10% 미만 추가확보	법정면적 10~ 20% 추가확보	법정면적 20% 이상 추가확보
5천㎡이상~1만㎡미만	대지면적 5%	대지면적 5.5% 미만	대지면적 5.5~6.0 미만	대지면적 6.0% 이상
1만㎡이상~3만㎡미만	대지면적 7%	대지면적 7.7% 미만	대지면적 7.7~8.4 미만	대지면적 8.4% 이상
3만㎡ 이상	대지면적 10%	대지면적 11% 미만	대지면적 11~12% 미만	대지면적 12% 이상

- 부족한 관광숙박시설 확충이라는 특별법령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객실 비율이 70% 미만인 경우 0.9, 70~80%는 0.95, 80% 이상인 경우 1을 적용함.**
객실비율은 전체 연면적에 대한 객실 사용 바닥면적의 합계로 호텔 운영을 위한 주차장, 기계/전기 등 **지원시설 및 복도, 화장실 등 공용면적은 객실 연면적에 포함되며, 근린생활시설 등 부대시설은 객실 비율에서 제외함**
- 외국인 등 단체 관광객이 이용하는 건축물 특성을 감안하여 부지내 **버스 주차 공간 확보 유무에 따라 계수 1.0, 0.9 차등 적용함**
- 또한, 주변 지역의 교통흐름 최소화를 위하여 **이면부로 차량 진출입을 유도**하거나 또는 부지 특성상 **이면부 진출입이 어려운 경우 완화차로 조성 여부에 따라 계수를 1.0, 0.9 차등 적용함**

Q15. 산정된 계수 적용방법은 ?

- **6개 항목에 의하여 산정된 계수는 인센티브 용적률(특별법-조례 용적률)에 곱하고, 최종적으로 조례 용적률과 합산하여 건축가능 용적률로 산정함**

Q16. 정성적 기준 적용방법은 ?

- 정량적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 확보 용적률 및 건축가능 용적률을 검토한 후 도시계획 또는 건축위원회 심의에 상정하고,
- 해당 위원회에서 정성적 기준에 의한 건축계획, 기반시설, 용도도입 적정성 주요 내용을 참고하여 관광숙박시설 용적률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임

Q17.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적률 적용 체계는 ?

-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일반지역과의 용적률 특례 정합성 유지를 위하여 **특별법령 용적률과 허용용적률 차이를 관광숙박시설 인센티브 용적률로 운용**하고,
- **인센티브 용적률은 정량적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결정될 예정임

Q18. 도심부 도시환경정비구역의 현행 기본계획 상 용적률 체계 유지는 특별법령 제정 취지와 맞지 않는데 변경이 필요한 것이 아닌지 ?

- 성곽으로 둘러싸인 역사도시로써의 서울의 고유성을 간직하고 있는 도심부의 특성 보존 및 면적으로 넓게 지정되어 있는 상업지역 지정 현황을 감안하여 기반시설 및 경관에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코자 **4대문안의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고 있는 우리시 도시관리계획의 기본방향 유지**를 위하여 도심부 도시환경정비구역은 현행 용적률 적용체계 유지 필요

Q19. 도심부 외 도시환경정비구역의 용적률 적용 체계는 ?

- 도심부 외 마포, 청량리 상업지역은 현재 상한용적률이 1,000%로 제한되어 있으나, 관광숙박시설 도입시 **도시경관 및 주변지역의 교통영향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1,300%까지 완화할 예정**임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절차 선행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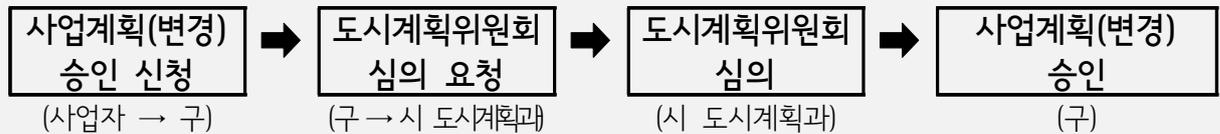
Ⅲ. 행정사항 관련

Q20. 관광숙박시설 용적률에 관한 특례 운영기준 위상은 ?

- 관광숙박시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 사업의 용적률 특례 적용 적정성 검토를 위한 내부검토 자료 및 도시계획,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자료로 활용

Q21.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 절차는 ?

- 관광숙박시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이 자치구 문화관광 부서에 접수되면, 도시계획 관련사항을 자치구 도시계획과에 검토 요청하고, 자치구 도시계획과에서 서울시 도시계획과로 심의를 요청함



※ 지구단위계획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관련변경 절차에 따름

Q22.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닌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용적률 완화 적용 방법은 ?

- 건축물 연면적 5천㎡ 미만의 관광숙박시설은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니나, 용적률 자치구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자문을 통해 용적률 완화 적정 여부 판단 필요

※ 서울시 건축조례 제7조 1항 2호 (구 위원회 심의사항)

라.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심의대상 및 구청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Q23. 도시계획 조례 제55조 17항의 용적률 완화(1.2배)와 특별법령 용적률 특례 차이점은 ?

-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12.7.27)에 따라 용적률 특례 운영기준을 마련한 사항으로 도시계획 조례 용적률 완화(1.2배)와 별도로 적용 가능함. 다만, 한시법('15.12.31)으로 조례 용적률 완화 조항은 유지할 예정임

5. '12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용자지원 지침

1. 접수기간 및 선정일정

- 접수기간 : 2012. 05. 30(수) ~ 06. 18(월), 20일간
- 선정발표 : 2012. 7. 23(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등
- ※ 2013년 상반기 용자지원지침은 2012년 11월 20일경 공고 예정
- ※ 제주도 소재 사업체는 제주특별자치도청이 별도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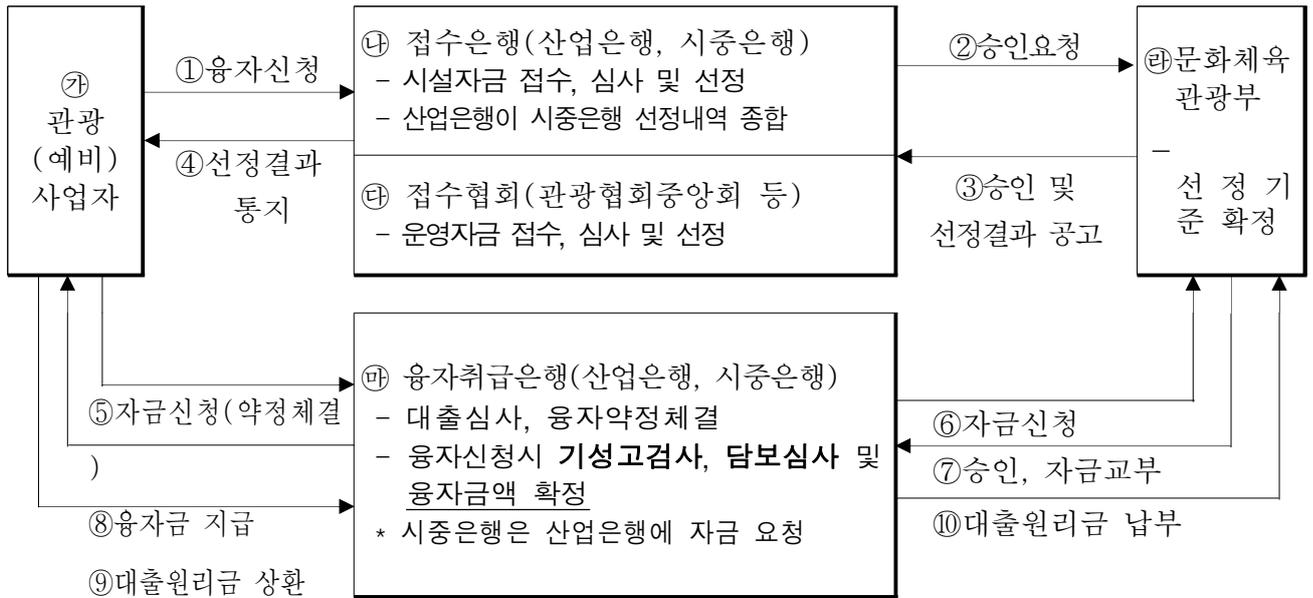
2. 선정규모 : 308,0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선정 예정액	비 고
관광시설 확충 (시설자금)	<u>289,000</u>	건설·개보수 자금
관광사업체 운영 (운영자금)	<u>19,000</u>	일반여행업(5,300), 국내·외여행업(1,200), 호텔업(4,300),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1,700), 관광식당업(1,100), 국제회의업(1,500), 카지노업(3,100), 유원시설업(800) ※ 우수관광기념품개발, 우수여행사는 별도 선정

- 최종 선정규모는 '12년 용자 예산 및 신청규모에 따라 조정 예정
- * 선정업체의 용자금 미 신청 사례를 감안하여 예산보다 초과하여 선정
- 다음의 경우, 관광기금 선정규모 내에서 우선 선정 가능
 - 중소기업, 소액신청 사업체
 - 관광특구 내 소재 호텔, 1~3급 호텔·베니키아 체인호텔(단, 대기업 제외)
 - 특급호텔 내 한식당을 운영 중인 자가 당해 호텔을 증축 및 개보수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시설확충자금 (특급호텔 내 한식당 확충자금 포함)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녹색사업인증' 받은 시설자금
 - 「2012 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2조제5호에 의거 박람회 지원시설구역 내 소재 업체
- 관광사업체 운영자금 중 <우수여행사, 우수관광기념품개발>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별도 선정
 - 우수여행사 : 국제관광과(02-3704-9782), 우수관광기념품개발 : 관광산업팀(02-3704-9780)

3. 시행절차



4. 관광기금 용자 신청 접수 등

- 시설자금 접수처(나) : 한국산업은행(02-787-4000, 5000, 6000, 7000, 6221),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외환은행, 한국씨티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수협중앙회, SC제일은행, 농협중앙회 등 16개 은행 본·지점
- 운영자금 접수처(다)

업종	접수처 (연락처)	비고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 관광식당업	한국관광협회중앙회(02-757-7485), 시·도 관광협회	
일반여행업	한국여행업협회(02-752-8692), 시·도 관광협회	* 다만, 시·도관광협회에서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한국여행업협회, 한국관광호텔업협회에서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협의(의견, 청취 등)하여 심사·선정
호텔업	한국관광호텔업협회(02-703-2845), 시·도 관광협회	
카지노업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02-730-6364)	
국제회의업	한국MICE협회(02-3476-8325)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02-884-2863)	

- 용자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 붙임 ‘업종별 용자세부지침’ 참조
- 용자취급은행(㉡) : 위 시설자금 접수처와 같음 (한국산업은행 등 16개 은행 본·지점)
- 용자선정 결과 공고 후 자금신청(㉢)
 - 자금신청 후 은행에서 용자금액을 확정하고 용자금이 지급되기까지 14일 정도 소요되며, 은행의 업무절차 또는 기금의 자금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
 - 관광시설 확충자금의 경우, 공사 진행 후 선정금액 범위 내에서 자금 신청
 - * 단, 공사 계약금액에 한하여 공사시행 전에 용자선정액의 40%까지 자금신청 가능
 - *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광진흥법」 제54조에 의한 공공법인(이하 ‘공공법인 등’이라 함)의 토지매입비는 계약금액에 대하여 용자선정액의 60% 이내 자금신청 가능
- 용자금 지급(㉣)
 - 관광시설 확충자금 실 대출금액은 용자취급은행의 기성고검사 결과에 따라 확정
 - * 대출금액 = (당기 선정금액 / 당기 공사소요자금) X (기성고 검사 인정금액)

5. 용자금리

- 기준금리 :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용자계정 변동금리’ (이하 ‘공자금리’라 함)를 적용 (’12년 2/4분기 : 3.55%)
- 대출금리

구 분	대 출 금 리
대기업	○ 공자금리
중소기업, 공공법인 등	○ 공자금리에서 0.75%P 우대 * 다만, 아래 업종의 시설자금(건설, 개보수)은 공자금리에서 1.25%P우대 -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관광펜션업, 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일반숙박시설, 우수숙박시설, 공공법인 등이 추진하는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을 말하며, 대기업은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을 말한다.

- 적용조건 : 최초 대출 시 적용된 우대 금리조건은 용자금 상환 완료 시까지 적용(중도 변경 불가)
- * 다만, 용자지원 대상업체로 선정된 후 용자 시행전에 대기업이 중소기업,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대출금리를 변경 적용

6. 용자기간

구 분		대 출 기 간
시설자금	신축·신설/ 증축·증설	4년거치 5년 분할상환 * 다만, 1~3급 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일반숙박시설, 우수숙박시설은 5년거치 5년 분할상환
	개·보수	3년거치 4년 분할상환 * 다만, 1~3급 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일반숙박시설, 우수숙박시설은 4년거치 4년 분할상환
운영자금		2년거치 2년 분할상환

7. 자금 신청범위(소요자금)

- 시설자금 : 용자취급은행의 심사를 거친 관광사업체의 공사금액 중 '12년 하반기에 소요되는 공사 및 시설구입 자금으로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계상되는 건축물, 기계장비 및 비품 등에 한함
 - 개보수자금은 [건축법시행령] 제2조의 '개축', '재축'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기존 건축물의 규모와 동일하게 보수하는 것에 한하며 규모가 변동되는 증축, 증설 등은 건설자금으로 신청하여야 함
 - 건축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는 개보수에 해당
 - [관광진흥법시행령]에 의한 사업계획 변경절차를 거쳐 공사소요자금이 변경된 경우는 이를 기준으로 사업체의 요청에 따라 총 소요자금 재확정 가능
 - 다음의 경우,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가능
 - '12. 1. 1일 이후 미지급 중인 사전공사비('12년도 상반기내 준공된 공사 제외)
 - 객실 내 컴퓨터 설치, 도색, 벽지 및 카펫 교체비용
 - '공공법인 등이 추진하는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토지매입비
 - 다음의 경우,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불가
 - 유흥주점, 나이트클럽 등 호화사치성 시설비용
 - 헬스클럽 등 관광사업 고유목적과 연관성이 적은 시설비용
 - 토지매입비
 - 영업수행에 직접 관계되지 않는 자산취득비용
 - 내구연한 1년 미만의 집기·비품 구입비용
- 운영자금 : 국제회의(행사), 외국인관광객 유치활동 및 사업체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 카지노업의 경우 영업장 개보수비, 신기종 구입비, 해외사무소 유지비, 해외 광고홍보비를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가능
 - 자산취득비용, 이자 등 금융비용은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불가

8. 신청한도

○ 시설자금

- 신축·증축 : '12년 하반기 소요자금의 100%, 150억원 이내
(단, 대기업 또는 특급호텔은 소요자금의 70%, 100억원 이내)
- 개보수자금 : '12년 하반기 소요자금의 100%, 80억원 이내
(단, 대기업 또는 특급호텔은 소요자금의 70%, 50억원 이내)
- ※ 공사기간에 따라 반기별 신청 한도 이내에서 연속 신청 가능 [(예) 공사기간이 2년인 경우 반기별로 4회 신청 가능]
- ※ 특급호텔 내 한식당 신설, 증축, 개보수 자금은 소요자금의 100% 한도액 까지 신청 가능

○ 운영자금

- 붙임 '업종별 용자세부지침' 참조

9. 용자선정액 이월

- 용자선정액을 2012. 12. 20(목)까지 신청하지 않을 경우, 선정 잔액 소멸
 - 선정액의 70%이상이 대출된 경우, 선정 잔액은 1회에 한하여 다음 반기로 이월 가능(단, '공공법인 등의 토지매입비'는 선정 잔액 전액 이월 가능)
- * 이월 신청은 2012. 12. 20(목)까지 선정 잔액에 대해 용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은행에 신청함.

10. 용자사업자 유의사항

- 용자신청자는 업종, 공사형태(건설·개보수·운영), 사업장별로 개별 용자 신청
 - 은행이 증빙서류, 재무건전성, 사업성, 상환능력, 담보규모 등에 따라 용자 신청을 거부하거나, 신청액을 감액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 전에 충분히 협의하시기 바람.
- 용자신청자는 직접 용자 신청하여야 하며 대리 신청 불가
- 용자선정액은 최대 대출가능액이며, 담보관련사항은 접수은행과 협의바람
- 용자사업자는 기금 사용용도가 기재된 별도 장부 비치(세부사용명세 보존)
 - 목적 외 사용 예방, 공정관리 등을 위하여 용자취급은행이나 정부 관계기관이 관련 증빙서류 열람을 요구할 경우 협조
- 관광사업체 등록을 전제로 용자받은 사업자는 공사완료 후 반드시 해당업종으로 등록·신고·지정 등을 필하여야 함.
 - 관광숙박시설 중 등급결정을 받아야 하는 관광호텔은 등급 결정을 받아야 함

- 용자사업자는 기금을 대출받은 당해연도 결산서 1부를 결산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로 제출하여야 함
 - 단, 결산서 작성대상이 아닌 사업체는 용자금 집행내역(세무신고서류)을 기금 대출이후 180일 이내 제출
- 용자 취급은행을 변경할 경우에는 용자사업자가 신청은행과 변경할 은행 등 협의 후, 변경할 은행이 한국산업은행에 문서로 용자취급은행 변경 요청
 - 운영자금은 해당 협회가 변경내용을 한국산업은행에 문서로 요청
- 용자금은 사업체가 보유한 자기자금, 예금 등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용자받으시기 바람. 취급은행이 해당 사업체의 금융자산 현황을 파악하여 여유 자금이 있는 경우 용자금을 조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음.

11. 용자금 회수 및 제재

- 다음의 경우 기 대출된 용자금을 회수할 수 있음.
 - 용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 용자신청서 및 장부 등 관련서류 허위 작성 또는 미작성, 용자금 사용처가 불명확한 경우 등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련규정을 위반한 경우
 - 용자사업자가 공사종료 후 자금신청 업종으로 등록(신고·지정 포함)하지 않거나 용자금 상환완료 전에 해당업종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 용자신청 시 제출한 회원모집계획을 벗어나는 경우
 - 대실영업 등 부당영업으로 3회 이상 행정처분(주의)을 받는 경우
 - 사후 제출서류(결산서, 세무신고서류 등)상 기금사용금액이 부족하거나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 위 회수사유 경중에 따라 용자선정내역을 취소하고, 취소일로부터 최대 3년간 용자신청을 제한할 수 있음.

12. 담당부서 및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국 관광정책과
 - 전자우편 : goodone@mcst.go.kr, yangsy@mcst.go.kr
 - 팩스번호 : 02-3704-9729
 - 전화번호 : 02-3704-9746, 9744, 9721
 - 주 소 : 110-360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문화체육관광부 4층 관광정책과

※ 붙임 : 1. 업종별 용자세부지침 1부.

2. 접수 및 심사기관 업무지침 1부. 끝.

Ⅱ . 여관 · 모텔 등 일반숙박시설

1. 우수숙박시설 ‘굿스테이’ 사업소개
2. 우수숙박시설 지정 규약

1. 우수숙박시설 ‘굿스테이’ 사업소개

1

굿스테이 연혁

□ 추진배경

- 주 5일 근무에 따른 국내 여행 수요 증가
- 가족 중심의 관광패턴 변화, FIT 등 저렴한 합리적인 관광에 대한 요구 등 계층별 고객 수요의 다양화
- 중화권 관광객 폭증 등으로 관광숙박시설 부족, 전국에서 가장 보편적인 숙박 시설인 일반 숙박업체를 관광숙박시설로 활용 필요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우수 중저가 숙박시설 확보를 통한 관광인프라 경쟁력 강화 및 외래객 숙박부족 현상 완화
- 전국적 중저가 숙박시설 지정을 통한 지방관광 활성화 도모
⇒ 품질관리 강화를 통한 양.질적 동반 성장 추구

□ 추진과정

- 2005년 우수 중저가 숙박업체 인증제도 “굿스테이” 도입
- 2005.7월 인증시스템 개발
- 2006.3월 우수숙박시설 브랜드 『굿스테이(Goodstay)』 런칭
- 2006.5월 브랜드 로고 개발 및 홈페이지 구축
- 2007.5월 굿스테이 로고 및 브랜드명 상표권 등록
- 2008.5월 인증기준 강화(주차장 차단막 제거, 프론트 개방 등)
- 2009.3월 우수숙박시설 지정제도 신설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용자지원 법제화(진흥법시행령22조의2)
- 2009.10월 한국관광공사 우수숙박시설 지정사업 위탁수행기관 지정 및 지정기준 법제화

2

지정 기준 및 혜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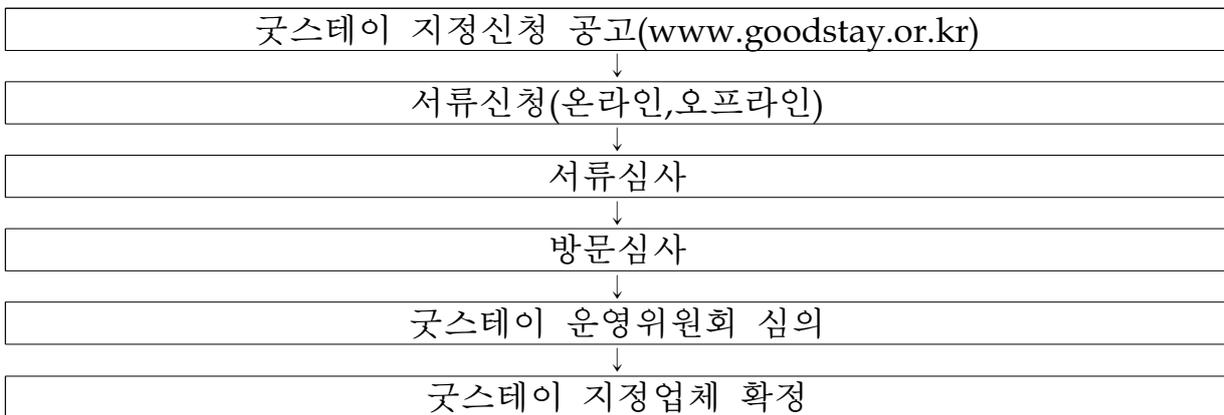
□ 지정대상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제3조제1항제2호의 따른 관광 숙박업시설 제외)중 관광진흥법 제19조의 2항(우수숙박시설의 지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시설 → 시청 또는 구청에서 발급된 **영업신고증** 구비 필수

<우수숙박시설의 지정기준(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2조의 2제 1항) 관련>

1. 외국인에게 서비스(숙박요금 등 이용정보 안내서비스 등을 말한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2. 안내데스크에 요금표를 게시하고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할 것.
3. 조명, 소방 및 안전관리 등은 관련법령으로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것.
4. 관광객을 맞이하는 프론트 등의接客공간이 개방형 구조일 것.
5. 주차장에 차단막 등 폐쇄형 구조물이 없을 것.
6. 건물 내부 및 외부에 대실 영업에 대한 공지를 하지 아니할 것.
7. 성인방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등의 제어 기능 장치를 갖추고 있을 것.

□ 심사과정 및 절차



□ 심사 종류 : 심사는 공사가 ISO 인증기관에 위탁 의뢰 진행

- 신규 심사 : 신규 신청 업소
- 갱신 심사 : 지정후 2년 경과후, 재심사
- 특별 심사 : 민원, 지정 조건 위반 등에 의한 현장실사가 필요한 심사로 발생 시 수시 수행

□ 심사 기준 : 매년 심사기준은 변동 될수 있음

- 필수평가내용(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 관광진흥법 필수기준 7개 조항
- 항목별 적합여부 평가기준표(현장심사)

항목	평가지표	항목별 점수		총점
시설 및 위생관리 부문 (40점)	● 객실 관리수준(5점) - 객실 청결상태(2점) - 객실 관리상태(2점) - 비품(컵, 빗, 화장품, 드라이기 등) 보유여부(1점)	청결	점	점
		관리	점	
		비품	점	
	● 욕실 관리수준(5점) - 욕실 청결상태(2점) - 욕실 관리상태(2점) - 비품(비누, 샴푸/린스, 수건, 샤워용품 등) 보유여부(1점)	청결	점	점
		관리	점	
		비품	점	
	● 냉난방기 가동여부 및 방음상태(10점) - 냉난방기 가동여부(5점) - 방음상태(5점)	냉난방가동	점	점
		방음상태	점	
	● 침구류 관리 상태(20점) - 침구류(이불/베개) 포사용 여부(10점) - 침구류 세탁상태(5점) - 침구류 악취발생 여부(5점)	포사용	점	점
		세탁상태	점	
		악취여부	점	

○ 항목별 적합여부 평가표(계속)

항목	평가지표	항목별 점수		총점	
건전성 부문 (15점)	● 영업장내 불건전한 유흥주점 및 안마시술소등의 입점 여부(15점)	불건전 시설	점	점	
고객 서비스 부문 (45점)	● 예약가능 여부(5점) - 인터넷 예약가능 여부(2.5점) - 상시 예약 가능상태 여부(2.5점)	인터넷 예약	점	점	
		상시 예약	점		
		인터넷 활용	점		
	● 비즈니스 이용시설 지원가능(5점) - 인터넷 전용선 설치/인터넷 사용 가능 여부(5점)	인터넷 활용	점	점	
		● 외국어 서비스 제공가능 여부(5점) - 종사원 중 외국어 구사 가능인 보유(5점) - 관광안내서비스 1330 사용가능(3점) - 외국어서비스 제공 불가능(0점)	외국어 활용		점
			● 종사자接客응대 서비스 및 용모(20점) - 친절도 및 고객접객 태도(10점) - 복장 상태(5점) - 명찰패용 여부(5점)		친절도
	복장			점	
	명찰	점			
	● 콜서비스(모닝콜) 제공 유무(5점) - 콜서비스 기기설치 및 작동 여부(5점)	모닝콜 기기	점	점	
		● 주변 관광지 안내자료 비치 여부(5점) - 간행물 비치대 설치 여부(2.5점) - 홍보물 비치 여부(2.5점)	비치대 설치		점
비치대 활용	점				

* 총점 70점 이상일 경우, 합격 조치

□ 지정혜택

- 지정에 따른 굿스테이 브랜드 로고 사용 권리 제공
 - 한국관광공사 지정 굿스테이 지정서 및 지정현판 제작 지원
 - 간판 등 각종 홍보용 물품 제작 시 굿스테이 브랜드 사용권 부여
 - 굿스테이 로고 활용 홍보물품 지원(타올, 매트, 캘린더, 홍보책자 등)
- 지정업체 운영자 및 종사원 표준화 교육지원
 - 경영컨설팅 및 서비스교육 등 표준화 교육기회 지원
(경영주 아카데미, 새터민 취업교육 등)
 - 모니터링 조사 우수업소(TOP 7) 해외선진숙박시설 벤치마킹 실시
- 온·오프라인 홍보 및 객실 판매 지원
 - 온라인 예약서비스 및 웹사이트(국, 영, 일, 중어)를 통한 홍보 및 모객(www.goodstay.or.kr, www.agoda.com)
 - 신규 지정업소 DB구축을 위한 사진촬영(1회)
 - 오프라인 굿스테이 홍보 브로슈어 및 책자제작, 전국 안내소 배포
 - 네비게이션(MAPPY, GINI) POI(업소명, 주소, 전화번호) 등록
 - 매스컴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 기사화 추진 및 바이럴 마케팅
 - 각종 이벤트 개최 및 지원을 통한 브랜드 이미지 제고
 - 공사 해외네트워크 및 여행사 연계 통한 외래관광객 모객지원
 - 각종 전시·이벤트 참가를 통한 국내외 홍보활동 전개
- 시설개보수(증축, 증설)자금 저리 융자
 - 관광진흥법시행령에 따라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02-3704-9746)

□ 지정관리

- 신규 지정 후, 2년간 자격 유지 ⇒ 2년 후, 갱신심사
- 특별심사 사유 발생시 특별심사 시행
- 소비자모니터링, 언론인 모니터링, 공사자체 모니터링 등 수시 모니터링 실시(연간 3~4회)
- 동일 민원 2건 이상 발생, 법적 필수기준 위반 시 지정 취소
- 사업자변경, 건축물 개보수시 재심사 등

3

지정 현황(2012년 12월 기준)

○ 연도별 지정현황

연 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지정업소수(누적)	88	118	171	188	282	345	451
취소 업소수	-	6	82	31	36	22	29

○ 지역별 지정현황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2010년	15	12	2	7	0	2	7	26	61	12	15	24	43	21	26	9	282
2011년	20	15	2	11	1	2	8	33	65	12	17	30	68	25	27	9	345
2012년	32	20	3	31	1	2	8	68	64	14	21	51	68	25	29	14	451

○ 2012년 12월 기준, 전국에 451개 업소 16,644

지역	업체수	객실수	분포율
서울	32	1,102	7.10%
경기	68	2,749	15.08%
인천	31	1,302	6.87%
제주	14	430	3.10%
강원	64	3,291	14.19%
경북	25	1,013	5.54%
대구	3	110	0.67%
경남	29	745	6.43%
부산	20	717	4.43%
울산	8	209	1.77%
광주	1	29	0.22%
전남	68	2,311	15.08%
전북	51	1,215	11.31%
대전	2	78	0.44%
충남	21	902	4.66%
충북	14	441	3.10%
계	451	16,644	100%

- 외래관광객 객실 판매 지원 현황
 - 숙박전문사이트(www.agoda.com) 연계 판매
 - * 2010년 : 453실 \$28,036 (3천8십만원)
 - * 2011년 : 15,483실 \$833,642.56 (9억1천7백만원)
 - * 2012년 : 31,557실 1,927,317달러(20억 5천만원), 전년 동기 대비 객실판매수 2.03배 / 판매금액 2.31배 증가
- 굿스테이 지정 취소
 - 지정 취소 업소 수 : 총 181개 업소
 - 취소 내용 : 주차장차단막 설치, 프론트폐쇄형 재설치, 서비스 미흡 등 동일민원 2회 발생, 자진취소 등

4 사후 관리

- 모니터링 및 서비스 교육
 - 공사임직원모니터링, 체험단이벤트, 소비자만족도조사, 전수모니터링, 공사출입기자단 평가 모니터링 등 연간 4~5회 암행모니터링 실시
 - 우수업소 해외선진사례 연수 실시(연말 정기 모니터링 실시(전문리서치 기관), 전 업소에 전화 3회, 방문 1회를 통해 서비스 모니터링, 2011년 12월 모니터링 결과 1~7위 우수업소 선정)

순위	업소명	종합점수	방문모니터링	전화모니터링
1	엠비즈호텔	96.30	98.00	92.30
2	지리산리틀프린스펜션	94.50	94.00	95.70
3	채석강스타힐스호텔	94.40	95.00	93.00
4	무안비치호텔	94.40	98.00	86.00
5	담양골든리버모텔	94.30	94.00	95.00
6	아리랑호텔	94.25	97.50	86.70
7	프린스호텔	93.80	94.00	93.30

- 하위업소 사안에 따라 경고 및 지정 취소 등
- 신규지정 업소 사전교육, 업소 방문 서비스 교육, 경영자 워크숍 등 연 3~4회 서비스 교육 실시 - 지속 강화 추진 중

2. 우수숙박시설 지정 규약

제1조(목적)

이 규약은 「관광진흥법」 제19조의2에 따라 우수숙박시설의 지정을 통해 관광객이 숙박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우수숙박시설이 늘어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우수숙박시설”이란 한국관광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로부터 우수숙박시설 지정서를 수여받은 시설을 말하며 이 시설은 ‘굿스테이’로 칭한다.

제3조(지정대상)

- ① 우수숙박시설 지정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시설을 제외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시설에 한하여 실시한다.
- ② 우수숙박시설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③ 지정대상은 제 1항의 시설 중 제2항의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숙박시설이 국민정서와 미풍양속에 반하거나 우수숙박시설 이미지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시설로 의심되어 한국관광공사에서 설치·운영하는 숙박환경 개선운영위원회에서 우수숙박시설로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우수숙박시설 지정현판의 교부 등)

- ① 공사는 제3조제1항에서 명시한 우수숙박시설지정 조건을 충족하는 숙박시설에 대하여 우수숙박시설 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를 교부한다.
- ② 제1항의 지정서 및 지정현판을 교부받은 시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지정서 및 지정현판을 공사에 반납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2. 시설이 폐업된 경우

제5조(지정서 기재사항의 변경 및 재교부)

제4조제1항의 지정서를 교부받은 시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공사에 지정서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하고, 공사는 재교부 신청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지정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1. 지정서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2. 지정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제6조(지정 유효기간)

우수숙박시설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2년 경과 년도의 공사 우수숙박시설 정규 심사기간까지로 한다.

제7조(정기 갱신 심사 및 재심사)

- ① 공사는 지정시설에 대하여 지정 후 유효기간 만료 전에 1회의 정기 갱신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정기 갱신 심사에 합격한 지정 시설은 2년간 유효기간이 재연장 될 수 있다.
-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우수숙박시설 운영자는 공사에 즉시 통보하여 지정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1. 영업자 지위승계신고(다만 공동명의자중 일부변경 제외)
 2. 영업장 장소이전

제8조(특별심사)

공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지정시설에 대해 특별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언론에 보도된 경우
2. 지정된 시설에 대한 지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민원이 제기된 경우
3. 민간소비자 단체, 유관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사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지정시설의 홍보)

우수숙박시설로 지정된 시설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정마크를 시설 내에 게시하거나 인터넷, 홍보물, 방송, 신문 등에 지정마크와 지정획득 사실을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처분)

- ① 공사는 제7조 또는 제8조의 심사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요구를 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때는 경고 조치를 할 수 있다.
 - 가. 제5조에 따른 재교부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나. 본 규약에서 정한 지정마크 또는 지정현판이 아닌 다른 것을 표시한 경우
 - 다. 제7조 또는 제8조의 심사를 실시한 결과 지정기준에는 적합하나 일반 관리상태 및 서비스가 미흡한 경우
 - 라. 별표 1의 우수숙박시설의 지정기준을 위반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가.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경고처분을 받고 지정 기일 내 시정하지 않은 경우
 - 나. 동일한 내용으로 2회 연속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숙박시설로 지정을 받은 경우
라.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마. 공사가 설치한 숙박환경개선위원회의 심의결과 취소결정을 받은 경우

-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는 지정서 및 지정현판을 즉시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반납하여야 하고 처분받은 날부터 지정마크 등을 사용하거나 우수숙박시설 지정 시설임을 공지할 수 없다.
- ③ 지정취소에도 불구하고 지정서 및 지정현판, 지정마크를 사용하거나 우수숙박시설임을 공지·홍보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우수숙박시설 재지정이 불가하다.

제11조 (기타)

- ① 공사는 본 규약의 내용을 우수숙박시설 운영자에게 제시하고, 우수숙박시설로 지정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② 본 규약은 서비스 개선 및 효율적인 운용 등을 위해 운영자에게 사전 통지없이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시에는 적용일자 10일 이전에 운영자에게 통지(또는 공지)한다.
- ③ 우수숙박시설과 동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자와의 민원이나 분쟁에 대해 공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우수숙박시설 운영자(소유자)가 본 규약을 위반하여 공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 운영자(소유자)는 공사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 ④ 본 규약과 관련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공사 관할 법원으로 한다.

[별표 1]

우수숙박시설의 지정기준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2조의2제1항)

- 1. 외국인에게 서비스(숙박요금 등 이용정보 안내서비스 등을 말한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 2. 안내데스크에 요금표를 게시하고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할 것
- 3. 조명, 소방 및 안전관리 등은 관련 법령으로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것
- 4. 관광객을 맞이하는 프론트 등의 접객공간이 개방형 구조일 것
- 5. 주차장에 차단막 등 폐쇄형 구조물이 없을 것
- 6. 건물 내부 및 외부에 대실영업에 대한 공지를 하지 아니할 것
- 7. 성인방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등의 제어기능 장치를 갖추고 있을 것

III.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1.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2.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신청서 등

1.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I 개 요

□ 목 적

- 본 가이드라인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6항카목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지정 절차, 시설 기준, 안전·사후관리에 대한 세부 사항에 대한 처리 지침을 규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 적용 범위

- 본 가이드라인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지정권자인 특별자치도·시·군·구 의 자치 단체에 적용됨.
- 본 가이드라인은 2012년1월 시달한 내용을 일부 개정하여 시범 적용 한다. 시범 기간 중, 가이드라인의 개선 요구사항을 접수하며 그에 따른 신규 가이드라인이 시달될 때까지 유효하다.

《가이드라인 관련 문의, 개정(수정)요청 및 건의사항 접수처》

- 공문 접수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과
- 담당자 연락처 : 3704-9754 또는 9755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관리·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 규정 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가이드라인에 의거, 처리함.

II 정의 및 요건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의 정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6호 카목]

- (법적 정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은 제외한다)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업

*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 의해 숙박업 신고대상에서 제외됨.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 (대상 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 다만,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은 제외됨.

※ 제외사유: 농어촌, 준농어촌지역은 농어촌 정비법상 농어촌민박사업 가능

○ 농어촌 지역(「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

가. 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어업, 농어업 관련 산업, 농어업인구 및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 준농어촌 지역(「농어촌정비법 제2조제2호」) 광역시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광역시 자치구"라 한다)의 구역 중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 (대상 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분 류	종 류	내 용
1. 단독 주택	가. 단독 주택	
	다. 다가구 주택	<p>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p> <p>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p> <p>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p> <p>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p>
2. 공동 주택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보며, 지하주차장 면적은 바닥면적에서 제외한다)

○ (결격 사항) * 관광진흥법 제7조 적용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2. 파산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동법 제 36조제1항에 따라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4. 관광진흥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Ⅲ 지정신청 및 절차

□ 지정 신청

- **(관련 규정)** 지정신청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관광진흥법 제6조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지정사항의 변경 및 지정증의 재발급에 대해서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와 제5조의 규정에 따름.
- **(지정신청 대상)**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서식(참고 1 - 시행규칙상의 별지 제21호 서식)과 다음의 각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함.
 1. 신청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2. 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
 - * 지정기관에 따라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와 등록기준지가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정신청인에게 요청할 수 있음.
- **(수수료)** 관광진흥법 제7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른 별표 23에 따라 20,000원의 수수료 징수

Ⅳ 지정처리 및 심의

지정접수를 받은 해당 관청은 서류심의, 현장심의를 거쳐 지정승인 및 지정증 교부를 실시함.

□ 서류 심의

- (신청 서류 확인 등) 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이하 '지정기관'이라 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출된 서류와 지정요건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함.

1. 해당 주택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이 아닐 것)에 위치하는지 여부

2. 건물의 연면적이 **230m²** 제곱미터 미만인지 여부

- * 면적은 사업자가 실제 거주하는 곳(방)을 포함하며, 해당 거주지를 분리하여 일정 면적만을 대상으로 사업을 할 수 없음.

※ 건물의 연면적 관련 적용 기준

- 단독주택 중 단독주택의 경우 건물 총 면적의 합계, 다가구주택의 경우 사업자가구의 면적(계단, 주차장 등 다른 가구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제함)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경우 사업자 세대의 면적(계단, 주차장 등 다른 세대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제함)

3. 해당 주택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중에 하나에 해당할 것

4. 관광 사업자가 관광진흥법(제7조)에 따른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공동주택에 관한 사항** - 서류~현장 점검 전후 중 실정에 맞게 점검-

-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지 확인해야 함.
 - **(관리주체의 동의 확인)** 관리규약에서 입주자 등의 행위에 대해 일정사항 동의를 요하고 있는 경우를 확인하고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행위가 그에 해당 한다면 관련 동의서를 첨부할 것
 - * 관리규약에서 관리주체의 동의를 요하는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이 포괄적인 경우가 급적 동의서를 받도록 행정 지도
 - **(공동생활상의 의무사항 고지)** 관리규약 상 공동생활의 질서를 지킬 의무를 위반하거나, 민법 제217조에 의한 주의조치 의무에 반하여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쟁송 등이 발생할 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지정이란 사실로 면책되지 아니함을 반드시 고지함.

□ **현장 심사**

- **(심사 일정)** 서류 접수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자와 협의하여 정함. 다만, 신청인 또는 지정기관의 사정에 따라 서로 협의된 경우 7일 이후의 기간 동안 진행할 수 있음.
- **(점검 인력)**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지정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 외 공중위생관리, 소방, 건축 관련 부서의 관계 공무원이 동행하거나 외국어 서비스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지정 기관이 정한 전문가 또는 홈스테이 관련 민간단체 관계자와 함께 할 수 있음.

* 관광진흥법 제78조제4항에 의거 권한을 표시하는 징표를 지녀야 함.

- (점검 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들에 대해 시설 평가 또는 신청인과의 질의·응답을 하고 본 가이드라인에 첨부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사업자 현장점검표」을 담당 공무원이 작성함.

1) 신청인이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

2) 외국어 서비스가 가능한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 신청인 또는 함께 거주하는 세대원(가족 또는 동거인) 중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안내 가능성 점검

구 분	세부 내용
평가 기준	○ 사용가능한 외국어로 가족소개, 시설 및 서비스 소개, 한국문화에 대한 소개토록 하여 유창성을 중심으로 평가
평가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분의 의사소통 가능하며 전문적 안내 가능 ○ 제한된 의사소통 가능하며 무리 없이 안내 가능 ○ 간단한 의사소통만 가능하나 한정된 업무 수행 가능 ○ 단편적 지식만 갖추어 외국인 안내가 어려운 상황
조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단한 의사소통만 가능한 경우, 외국어 안내 책자(리플릿) 또는 설명자료 등을 비치토록 한 후 지정 ○ 단편적 지식으로 외국인 안내가 어려운 경우 반려처리

* 외국어 서비스 점검과 관련,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별표 15의 관광통역안내사 합격기준점 이상의 공인된 시험 점수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로 갈음할 수 있음.

3) 외국인에게 한국가정문화를 체험하게 하기 위한 위생 상태를 갖추고 있을 것

구 분	세부 내용
평가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실의 유무, 청결 및 이용의 편리성 ○ 객실 정돈 및 청결 상태(벽지, 바닥 등 포함) ○ 손님용 침구류의 청결도 ○ 식수 및 식사 제공 유무와 위생상태(식수원, 주방 등)
평가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합(공중위생관리법상 위생관리기준에 준하는 정도) ○ 보통(외국인관광객이 숙박하기에 불편함이 없는 정도) ○ 불량(불쾌감 또는 혐오감을 줄 수 있어 무리가 있는 정도)
조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량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보완 후 재신청토록 반려

4) 해당 주택이 건축물대장 상 '위반 건축물'로 표시되지 아니한 상태여야 하며, 전부 또는 일부가 훼손되거나 멸실(외관상)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 사고 우려가 있는 건물*이 아닐 것

* (예시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주택법 등 주택 관련 법령에 의해 특정관리대상 시설로 지정되었거나 안전진단 결과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평가된 경우 등)

5)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소방관련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관리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

-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법적 구비 사항 등

6) 기타 외국인관광객 안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여타 법령 상에 위배되는 것이 없는지 여부 등

V

사후 관리

□ 지정증 교부 및 고지사항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지정 신청을 받은 후,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라 지정증 교부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5조 등 참고

- **교부 시, 담당 공무원은 반드시 다음의 사항에 대해 고지해야 함.**

* 필요시, 현장점검 시 담당공무원이 사업자에게 고지

- 1) 외국인 관광객이 아닌 내국인을 상대로 숙식을 제공하며, 대가를 받는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 있음.
- 2) 성매매, 사행행위 등 다른 법에 의해 규율되는 불법 행위를 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
- 3) 소음, 소란, 매연 및 진동 등 이와 유사한 행위로 이웃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거주자의 생활에 불편, 고통을 주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 상기 사항 등으로 인한 다툼·손해배상·분쟁 및 법적 처벌 등에 대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지정되었다는 이유로 보호되지 아니함.

□ 사후 점검 (지도·감독)

- (점검 주기) 지정 권자는 반기에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 감독 하여야 함. 다만, 다음의 경우에 대해선 분기에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 검사할 것을 권고함.

* 관광진흥법 제78조(보고·검사) 조항 참고 ⇒ 응하지 않는 경우 제35조에 의거 지정취소 또는 사업정지 등 가능

- 1) 주택 구조(안전), 소방 관리 관련 사고 위험 또는 위생 관리상의 문제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경우
- 2) 내국인 출입, 소란·소음 등 문제로 주변의 민원이 있는 경우
- 3) 사업자 혹은 함께 거주하는 자가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 (특히, 성범죄, 도박·사행행위 관련)
- 4) 지자체, 관광공사 및 민간교류 단체 등에 등록, 소속되지 아니하고 독자적인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 외국인도시민박업 제도의 효율적 정착 및 관리 체계 마련을 위해 지정 등록 시, 가급적 독자적 영업 행위 보다 지자체, 관광공사 또는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홈스테이 사업에 참여할 것을 권고

- **(점검 사항)** 담당 공무원이 점검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중심으로 점검해야 함.
 - 1) 본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양식에 따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숙박일지 작성, 비치
 - 2) 관광 사업자의 지정 당시 주택에의 실제 거주 여부 (주민등록표 등 서류 및 실제 거주여부 확인)
 - 3) 주택의 안전, 불법 개변조 여부 및 위생 상태
 - 4) 건축(주택)·소방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 사고 등 위험 요인에 대한 시설 점검
 - 5) 공동 주택의 경우, 관리규약에 반하여 입주자간 마찰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시설물 또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여부

□ 휴업, 폐업 통보서 제출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때에는 관광진흥법 제8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등록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행정지도

□ 행정지도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에 통보 사항

- 불법행위, 안전사고 가능성, ‘외국인관광 민박업’ 행위와 관련된 소송 등이 제기된 경우 휴업 또는 폐업토록 행정 지도하고 관련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에 통보

* 금년 상반기 중 지정취소, 벌칙 관련 규정 마련 예정

VI 행정 사항

□ 기존 홈스테이,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지정권고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제도 도입(‘11.12.30) 이전, 이 규정의 적용 가능한 형태로 외국인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자(외국인 홈스테이, 게스트하우스) 중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정 신청을 권고
 - 관광진흥법령에 의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자는 숙박업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나, 지정받지 아니하고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영업을 하는 경우 해당 법률에 의해 처벌될 수 있음.

□ 1년간 지정 즉시, 현장점검표 등 송부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대한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제도개선 및 통계·정책 지원 방안 검토를 위해 2012.12.31까지에 한해 지정사실이 있는 즉시 지정사실 및 현장 점검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제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과)

□ 법령, 가이드라인 개선 요청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련 법령, 가이드라인과 관련 일선 현장 적용과정에서 모순, 비합리적인 사항에 대해선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과로 건의해 주시기 바람.

참고 사항 : 민간 사례 및 향후 정책 방향

□ 민간 홈스테이 운영 사례

구분	청소년단체협의회 청소년교류센터	한국라보	히포패밀리	홈스테이 코리아	코리아홈스테이
운영 형태	여성가족부 산하단체	사단법인	사단법인	민간	민간
운영 실적	매년 300명 국제청소년교류	최근현황 미공개	매년 200명	실적 미공개	1일 1~2명 호스트 400호
매칭 절차	청소년단체와 지방자치단체 협력사업으로 추진	라보회원 에 한해 매칭, 수수료 20%	패밀리 회원 대상 국제교류	홈페이지 가입 → 개별매칭 → 매칭수수료 공제 후 입금	홈페이지 가입 → 개별매칭 → 매칭수수료 공제 후 입금

* 2011년부터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코리아스테이'란 사업명으로 호스트를 유치·인증하여 홈페이지 구축, 마케팅 및 교육사업 진행
(문의사항 관광인프라실 729-9465)

□ 향후 정책 방향

○ 향후 6개월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제도적 정착

- 사업효과는 높이고, 부작용(이웃간 다툼, 변질영업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

○ 금년 내 : 지원 예산 확보 (공동 마케팅, 교류(매칭)단체 지원, 우수 사업자 incentive 및 표창, 물품 구입, 안내 책자 등)

* 지원대상은 사업자 중 민간단체, 지자체 등의 사업에 소속되어 운영하는 경우에 한할 예정임.(개별, 직접지원은 계획없음)

* 지원예산 및 사업은 관계부처와의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신청서 등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1.3.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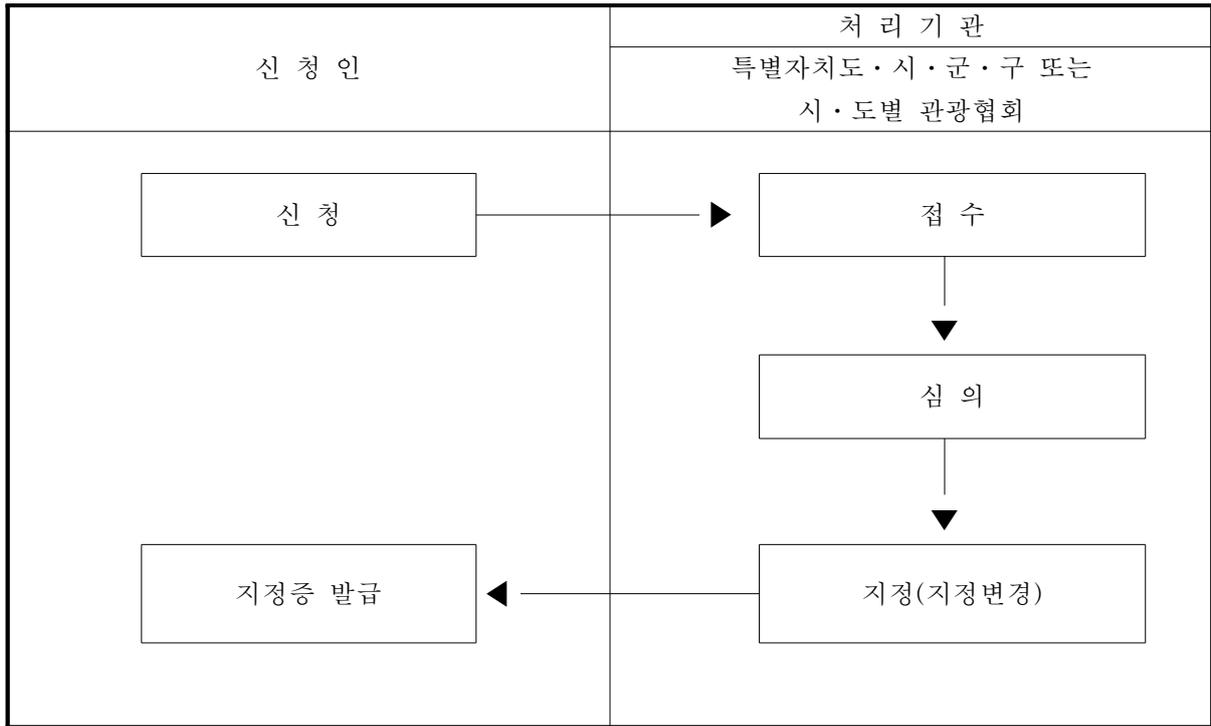
(앞 쪽)

관광 편의시설업 <input type="checkbox"/> 지정 신청서 <input type="checkbox"/> 지정변경		처리기간 17일				
신청인	① 성명(대표자)	②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③ 주소 (전화:)					
④ 상호(명칭)						
⑤ 업종						
⑥ 영업소 소재지						
⑦ 자본금						
⑧ 영업개시 예정 연월일						
⑨ 사업자등록번호						
⑩ 변경사항 <table style="width: 100%; border: none;"> <tr> <td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변경 전</td> <td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변경 후</td> </tr> <tr> <td style="height: 20px;"></td> <td style="height: 20px;"></td> </tr> </table>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관광진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지역별 관광협회장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관광협회에 위탁된 업종의 경우에는 해당 서류 제출)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국민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2. 업종별 면허증·허가증 사본 1부(관광사진업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 1부 4. 지정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관광사진업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20,000원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p>제 호</p> <p>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증</p> <p>상호(명칭)</p> <p>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성명)</p> <p>주 소</p> <p>업 종</p> <p>「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합니다.</p> <p>년 월 일</p> <p>특별자치도지사 <input type="checkbox"/></p> <p>시장·군수·구청장 <input type="checkbox"/></p> <p>지역별 관광협회장 <input type="checkbox"/></p>	<p>No.</p> <p>TOURISM SERVICE FACILITIES BUSINESS CERTIFICATE OF REGISTRATION</p> <p>COMPANY:</p> <p>REPRESENTATIVE:</p> <p>ADDRESS:</p> <p>TYPE OF BUSINESS:</p> <p>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company is registered as a tourist service facility in accordance with Article 6 of the Tourism Promotion Law.</p> <p>Date</p> <p>Signature</p> <p>Governor of (province name) <input type="checkbox"/></p> <p>Mayor of (city · county · district name) <input type="checkbox"/></p> <p>President of Tourism Association <input type="checkbox"/></p>
-------------------------------------------------------------------------------------------------------------------------------------------------------------------------------------------------------------------------------------------------------------------------------------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숙박 일지

(주소지, 사명자명 기재)

연 번	날 짜 ³⁾	성 명 ⁴⁾	국 적	숙박일수	수령요금 ⁵⁾
1					
2					

3) 연도, 월, 일별로 쓰되, 최초 입실일을 기준으로 작성함. 예시) 2011년 12월 31일
4) 이름은 여권에 표기된 바에 따른다. 다만, 필요한 경우 발음되는 바에 따라 한글로 기재할 수 있음. 일행이 있는 경우, 대표자 이름 외 인원수를 기입함.(예시. James Peters 외 3명)
5) 원화를 기준으로 하되, 외국화폐로 받은 경우 화폐 명 또는 기호를 표시한다. (예시 20,000원 또는 20\$)

외국인관광 도시민박 사업자 현장점검표

신청일				현장점검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 전입일
	주소						
외국어 안내 체계		서비스가능 외국어					
		외국어 구사능력	<input type="checkbox"/> 대부분의 의사소통 가능하며 전문적 안내 가능 <input type="checkbox"/> 제한된 의사소통 가능하며 무리 없이 안내 가능 <input type="checkbox"/> 간단한 의사소통만 가능하나 한정된 업무 수행 가능 <input type="checkbox"/> 단편적 지식만 갖추어 외국인 안내가 어려운 상황				
사업형태(매칭업체 가입여부)			<input type="checkbox"/> 지자체 <input type="checkbox"/> 관광공사 <input type="checkbox"/> 민간단체 <input type="checkbox"/> 별도				
민박소재지						민박명칭	
숙박요금(1박기준)		원 ~ 원				식비포함여부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	
대지면적		m ²	용도지역(지구)				
주택연면적		m ²	전체방수 (면적)		(개 m ²)		
객실수		개 (온돌0개, 침실0개)		최대 수용인원		명	
시설	건물 형태	<input type="checkbox"/> 단독 <input type="checkbox"/> 다가구 <input type="checkbox"/> 연립 <input type="checkbox"/> 아파트 <input type="checkbox"/> 다세대					
	청결도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보통 <input type="checkbox"/> 불량			주택내 화장실 수		
	소방안전	<input type="checkbox"/> 특이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불량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신청자의 제출서류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한 현장검사 및 질의응답 결과 상기 기재된 바와 같이 조사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담당 공무원 (서명 또는 인)							
담당공무원이 상기 작성한 사항에 대해 이견이 없으며, 1)내국인 숙박, 2) 성매매, 사행행위 등 불법행위, 3) 이웃간 주의의무 및 분쟁에 대한 면책이 되지 않음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IV. 관계법령 및 관광숙박시설 현황

1. 관광진흥법
2. 관광진흥법 시행령
3.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4. 관광숙박시설 현황

※ 자치구 관광호텔 담당자 및 연락처

1. 관광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과), 02-3704-971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7.19, 2011.4.5>

1.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業)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 허가 또는 지정(이하 "등록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3. "기획여행"이란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외여행을 하려는 여행자를 위하여 여행의 목적지·일정, 여행자가 제공받을 운송 또는 숙박 등의 서비스 내용과 그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고 이에 참가하는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을 말한다.
4. "회원"이란 관광사업의 시설을 일반 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해당 관광사업자(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5. "공유자"란 단독 소유나 공유(共有)의 형식으로 관광사업의 일부 시설을 관광사업자(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분양받은 자를 말한다.
6. "관광지"란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으로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7. "관광단지"란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 거점 지역으로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8. "민간개발자"란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개인이나 「상법」 또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9. "조성계획"이란 관광지나 관광단지의 보호 및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광시설의 조성관리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10. "지원시설"이란 관광지나 관광단지의 관리·운영 및 기능 활성화에 필요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안팎의 시설을 말한다.
11. "관광특구"란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 활동과 관련된 관계 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고, 관광 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안내 체계 및 홍보 등 관광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12. "문화관광해설사"란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관광사업

제1절 통칙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7.19>

1. 여행업 :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
2. 관광숙박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 가.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 나. 휴양 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3. 관광객 이용시설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 가. 관광객을 위하여 음식·운동·오락·휴양·문화·예술 또는 레저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종 이상의 시설과 관광숙박업의 시설(이하 "관광숙박시설"이라 한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회원이나 그 밖의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4. 국제회의업 :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세미나·토론회·전시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국제회의의 계획·준비·진행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
5. 카지노업 : 전문 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트럼프·슬롯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
6.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 : 유기사설(遊技施設)이나 유기기구(遊技機具)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관광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유기사설이나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관광 편의시설업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 외에 관광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시설 등을 운영하는 업

②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제4조(등록)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09.3.25>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허가와 신고) ①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전용영업장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기구를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유원시설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원시설업 외의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및 신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지정)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을 받을 수 있다.

제7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고,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따라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②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등록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3개월 이내에 그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관광사업의 양수 등) ① 관광사업을 양수(讓受)한 자 또는 관광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은 그 관광사업의 등록등 또는 신고에 따른 관광사업자의 권리·의무(제20조제1항에 따라 분양이나 회원 모집을 한 경우에는 그 관광사업자와 공유자 또는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주요한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관광사업자의 지위(제20조제1항에 따라 분양이나 회원 모집을 한 경우에는 그 관광사업자와 공유자 또는 회원 간에 약정한 권리 및 의무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관광사업자가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소·정지처분 또는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그 처분 또는 명령의 효과는 제1항에 따라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며, 그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새로운 관광사업자에게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그 승계한 관광사업자가 양수나 합병 당시 그 처분·명령이나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승계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하되, 카지노사업자의 경우에는 제7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⑦관광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때에는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보험 가입 등) 관광사업자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거나 관광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제10조(관광표지의 부착) ① 관광사업자는 사업장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관광표지를 붙일 수 있다. ② 관광사업자가 아닌 자는 제1항에 따른 관광표지를 사업장에 붙이지 못하며, 관광사업자로 잘못 알아볼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명칭 중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되는 상호를 사용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자가 아닌 자가 사용할 수 없는 상호에 포함되는 관광사업의 명칭 중 전부 또는 일부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관광시설의 타인 경영 및 처분과 위탁 경영) ① 관광사업자는 관광사업의 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기구 외의 부대시설을 타인에게 경영하도록 하거나, 그 용도로 계속하여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타인에게 처분할 수 있다.

1. 제4조제3항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등록에 필요한 객실
 2. 제4조제3항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3. 제23조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는 데 필요한 시설과 기구
 4. 제33조제1항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기사설 및 유기기구
- ② 관광사업자는 관광사업의 효율적 경영을 위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객실을 타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의 경영은 관광사업자의 명의로 하여야 하고, 이용자 또는 제3자와의 거래행위에 따른 대외적 책임은 관광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2절 여행업

제12조(기획여행의 실시) 제4조제1항에 따라 여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여행업자"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여행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의2(의료관광 활성화)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외국인 의료관광(의료관광이란 국내 의료기관의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와 그 동반자가 의료서비스와 병행하여 관광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지원 관련 기관에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외국인 의료관광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국외여행 인솔자) ① 여행업자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실시할 경우 여행자의 안전 및 편의 제공을 위하여 그 여행을 인솔하는 자를 둘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맞는 자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외여행 인솔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인솔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에게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 및 방법, 자격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여행계약 등) ① 여행업자는 여행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여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여행업자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그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적은 여행계약서(여행일정

표 및 약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여행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여행업자는 여행일정(선택관광 일정을 포함한다)을 변경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절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중 부지, 대지 면적, 건축 연면적의 일정 규모 이상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이나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중 부지, 대지 면적, 건축 연면적의 일정 규모 이상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기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사업계획 승인 시의 인·허가 의제 등) ①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 또는 해제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3. 「사방사업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4.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草地轉用)의 허가
5.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등의 허가 및 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占有許可) 및 실시계획의 인가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7.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私道開設)의 허가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른 분묘의 개장신고(改葬申告)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改葬許可)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그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포함되어 있으면 미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관광사업자(관광숙박업만 해당한다)가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⑤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업계획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 안의 위락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호의 용도지역의 시설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6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거지역에서는 주거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승인기준에 맞는 경우에 한한다.

1. 상업지역
2. 주거지역·공업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제17조(관광숙박업 등의 등록심의위원회)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이나 국제회의업의 등록(등록 사항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8조에서 같다) 소속으로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되며, 위원은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신고 또는 인·허가 등의 소관 기관의 직원이 된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관광숙박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이나 국제회의업의 등록기준 등에 관한 사항
2. 제18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업이 관계 법령상 신고 또는 인·허가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항
3. 삭제 <2007.7.19>

④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의 등록을 하려면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구성·운영이나 그 밖에 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등록 시의 신고·허가 의제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하면 그 관광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신고를 하였거나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 또는 세탁업의 신고
2.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3. 「주세법」 제8조에 따른 주류판매업의 면허 또는 신고
4.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환전업무의 등록
5. 「담배사업법」 제16조에 따른 담배소매인의 지정
6. 「학교보건법」 제6조에 따른 유흥시설 설치의 인정(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을 경영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으로서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
8. 「해상교통안전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해상 레저 활동의 허가
9. 「의료법」 제35조에 따른 부속의료기관의 개설신고 또는 개설허가

②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1항 각 호의 신고 또는 인·허가 등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관광숙박업의 등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숙박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돕고, 관광숙박시설 및 서비스의 수준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광숙박업에 대한 등급을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등급을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2(우수숙박시설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이 숙박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우수한 숙박시설이 늘어나도록 하기 위하여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숙박시설"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숙박시설을 우수숙박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우수숙박시설로 지정된 숙박시설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대여
2. 국내 또는 국외에서의 홍보
3. 그 밖에 숙박시설의 운영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우수숙박시설 지정의 절차 및 지정의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제20조(분양 및 회원 모집) ① 관광숙박업이나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아니면 그 관광사업의 시설에 대하여 분양(휴양 콘도미니엄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또는 회원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항에 따른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할 수 없는 자가 관광숙박업이나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는 행위
2. 관광숙박시설과 관광숙박시설이 아닌 시설을 혼합 또는 연계하여 이를 분양하거나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숙박업의 등록을 받은 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골프장의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관광숙박시설과 해당 골프장을 연계하여 분양하거나 회원을 모집할 수 있다.
3. 공유자 또는 회원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시설에 관한 이용권리를 양도받아 이를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

③제1항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려는 자가 사용하는 약관에는 제5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하여야 한다.

⑤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한 자는 공유자·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공유지분(共有持分) 또는 회원자격의 양도·양수
2. 시설의 이용
3.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징수
4. 회원 입회금의 반환
5. 회원증의 발급과 확인
6. 공유자·회원의 대표기구 구성
7. 그 밖에 공유자·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절 카지노업

제21조(허가 요건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이하 "카지노업"이라 한다)의 허가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1. 국제공항이나 국제여객선터미널이 있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있거나 관광특구에 있는 관광숙박업 중 호텔업 시설(관광숙박업의 등급 중 최상 등급을 받은 시설만 해당하며, 시·도에 최상 등급의 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등급의 시설만 해당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회의업 시설의 부대시설에서 카지노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경우
 2. 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여객선에서 카지노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경우
-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 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22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19세 미만인 자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 단체 또는 집단에 자금을 제공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자
 3. 조세를 포탈(逋脫)하거나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7.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카지노사업자"라 한다)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카지노업의 시설기준 등) ①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②카지노사업자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시설 중 일정 시설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③카지노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 및 기구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조건부 영업허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카지노업을 허가할 때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기구를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한 차례에 한하여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허가를 즉시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허가 조건에 해당하는 필요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춘 경우 그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5조(카지노기구의 규격 및 기준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카지노업에 이용되는 기구(이하 "카지노기구"라 한다)의 형상·구조·재질 및 성능 등에 관한 규격 및 기준(이하 "공인기준등"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의 검정을 받은 카지노기구의 규격 및 기준을 공인기준등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기구를 영업장소(그 부대시설 등을 포함한다)에 반입·사용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카지노기구가 공인기준등에 맞는지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된 카지노기구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증명서(이하 "검사합격증명서"이라 한다)를 붙이거나 표시하여야 한다.

제26조(카지노업의 영업 종류와 영업 방법 등) ①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②카지노사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별 영업 방법 및 배당금 등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7조(지도와 명령)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나친 사행심 유발을 방지하는 등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카지노사업자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제28조(카지노사업자 등의 준수 사항) ① 카지노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위반되는 카지노기구를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2. 법령을 위반하여 카지노기구 또는 시설을 변조하거나 변조된 카지노기구 또는 시설을 사용하는 행위
3. 허가받은 전용영업장 외에서 영업을 하는 행위
4. 내국인(「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는 제외한다)을 입장하게 하는 행위
5. 지나친 사행심을 유발하는 등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나 선전을 하는 행위
6. 제26조제1항에 따른 영업 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을 하거나 영업 방법 및 배당금 등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
7. 총매출액을 누락시켜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액을 감소시키는 행위
8. 19세 미만인 자를 입장시키는 행위
9.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연도 안에 60일 이상 휴업하는 행위

②카지노사업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준칙을 지켜야 한다. 이 경우 그 영업준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일 최소 영업시간
2. 게임 테이블의 집전함(集錢函) 부착 및 내기금액 한도액의 표시 의무
3. 슬롯머신 및 비디오게임의 최소배당률
4. 전산시설·환전소·계산실·폐쇄회로의 관리기록 및 회계와 관련된 기록의 유지 의무
5. 카지노 종사원의 게임참여 불가 등 행위금지사항

제29조(카지노영업소 이용자의 준수 사항) 카지노영업소에 입장하는 자는 카지노사업자가 외국인(「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를 포함한다)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분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묻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0조(기금 납부) ① 카지노사업자는 총매출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내야 한다.

②카지노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납부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납부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납부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제1항에 따른 총매출액, 징수비율 및 부과 징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납부금 또는 제2항 후단에 따른 가산금을 부과받은 자가 부과된 납부금 또는 가산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5절 유원시설업

제31조(조건부 영업허가)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유원시설업 허가를 할 때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5조제2항에 따른 시설 및 설비를 갖추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한 차례에 한하여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허가를 즉시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허가 조건에 해당하는 필요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춘 경우 그 내용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2조(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 제5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이하 "유원시설업자"라 한다)중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한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위생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33조(안전성검사 등) ① 유원시설업자 및 유원시설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그 조건을 이행한 후 영업을 시작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고,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성수기 등을 고려하여 검사시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원시설업자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항상 배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배치 기준 및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영업질서 유지 등) ① 유원시설업자는 영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 유원시설업자는 법령을 위반하여 제조한 유기시설·유기기구 또는 유기기구의 부분품(部分品)을 설치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절 영업에 대한 지도와 감독

제35조(등록취소 등) ①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변경등록기간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
2. 제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3. 제5조제3항 및 제4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8조제4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3의2. 제8조제7항을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 알리지 아니하는 경우
4. 제9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1조를 위반하여 관광사업의 시설을 타인에게 처분하거나 타인에게 경영하도록 한 경우
 6. 제12조에 따른 기획여행의 실시요건 또는 실시방법을 위반하여 기획여행을 실시한 경우
 7. 제14조를 위반하여 안전정보 또는 변경된 안전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여행계약서를 여행자에게 내주지 아니한 경우 또는 여행자의 사전 동의 없이 여행일정(선택관광 일정을 포함한다)을 변경하는 경우
 8.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착공 또는 준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를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9. 제20조제1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공유자·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21조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11.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카지노 시설 및 기구에 관한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12.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3. 제30조를 위반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14. 제32조에 따른 물놀이형 유원시설 등의 안전·위생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15.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성검사 및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16. 제34조제1항에 따른 영업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제조한 부분품을 설치하거나 사용한 경우
- 16의2. 제38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해당 자격이 없는 자를 종사하게 한 경우
17. 삭제 <2011.4.5>
18. 제78조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방해한 경우
 19. 관광사업의 경영 또는 사업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뇌물을 주고받은 경우
 20. 고의로 여행계약을 위반한 경우(여행업자만 해당한다)
- ②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국외여행을 인솔하게 한 경우
 2. 제27조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도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소·정지처분 및 시설·운영개선명령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관세법」 등에 따라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을 보유하고 있는 관광사업자로부터 그 물품의 수입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사업의 양도·폐업의 신고 또는 통보를 받거나 그 관광사업자의 등록등의 취소를 한 경우에는 관할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⑤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등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제18조제2항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의 장(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을 포함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 ⑥관할 등록기관등의 장 외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관광사업자에 대하여 그 사업의 정지나 취소 또는 시설의 이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면 미리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⑦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광숙박업자의 위반행위가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에 해당하면 「공중위생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

제36조(폐쇄조치 등) ①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제5조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영업을 하거나 제24조제2항·제31조제2항 또는 제35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명령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영업소의 간판이나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 또는 삭제
2. 해당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3. 영업을 위하여 꼭 필요한 시설물 또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封印)

②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봉인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기면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1항제2호에 따라 게시를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영업을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③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그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급박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에 따른 조치는 영업을 할 수 없게 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⑤제1항에 따라 영업소를 폐쇄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7조(과징금의 부과) ①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자가 제35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업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그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사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過徵金)을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7절 관광종사원

제38조(관광종사원의 자격 등) ①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 업무에는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종사하도록 해당 관광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는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관광안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따로 정하는 자는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에게 관광종사원 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④관광종사원 자격증을 가진 자는 그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그 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⑤제7조제1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다.

제39조(교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관광종사원과 그 밖에 관광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0조(자격취소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관광종사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종사원에 대하여는 시·도지사)은 제38조제1항에 따라 자격을 가진 관광종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7조제1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관광종사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부정 또는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4. 삭제 <2007.7.19>

제3장 관광사업자 단체

제41조(한국관광협회중앙회 설립) ① 제45조에 따른 지역별 관광협회 및 업종별 관광협회는 관광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관광업계를 대표하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 협회는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42조(정관)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 및 총회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업무에 관한 사항
7. 회계에 관한 사항
8. 해산(解散)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43조(업무)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업무
2. 관광사업 진흥에 필요한 조사·연구 및 홍보
3. 관광 통계
4. 관광종사원의 교육과 사후관리
5. 회원의 공제사업
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7. 관광안내소의 운영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공제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내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민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社團法人)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5조(지역별·업종별 관광협회) ① 관광사업자는 지역별 또는 업종별로 그 분야의 관광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별 또는 업종별 관광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종별 관광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설립허가를, 지역별 관광협회는 시·도지사의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6조(협회에 관한 규정의 준용) 지역별 관광협회 및 업종별 관광협회의 설립·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관광의 진흥과 홍보

제47조(관광정보 활용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정보의 활용과 관광을 통한 국제 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광과 관련된 국제기구와의 협력 관계를 증진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관광사업자·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한국관광공사(이하 "관광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사항을 권고·조정할 수 있다.

③ 관광사업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고나 조정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7조의2(관광통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광개발 기본계획 및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고 관광산업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관광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실태조사를 하거나, 공공기관·연구소·법인·단체·민간기업·개인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광통계의 작성·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제 관광의 촉진과 국민 관광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내외 관광 홍보 활동을 조정하거나 관광 선전물을 심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광홍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사업자등에게 해외관광시장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관광 홍보물의 제작, 관광안내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광사업자 또는 제54조제1항에 따라 관광지·관광단지의 조성계획승인을 받은 자는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관광시설 등 관광자원을 안내하거나 홍보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屋外廣告物)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
2.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사업
3.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4.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제48조의2(지역축제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축제의 체계적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축제에 대한 실태조사와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축제의 통폐합 등을 포함한 그 발전방향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양한 지역관광자원을 개발·육성하기 위하여 우수한 지역축제를 문화관광축제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문화관광축제의 지정 기준 및 지원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3(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에너지·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환경 훼손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관광자원의 개발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제공 및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제48조의4(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계획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관광해설사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양성·활용하기 위하여 해마다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활용계획에 따라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배치·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8조의5(관광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에게 역사·문화·예술·자연 등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광체험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을 위한 관광체험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제48조의6(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등의 인증) ①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거나 교육과정을 개설(開設)·운영하려는 자는 교육프로그램과 교육과정의 인증(認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이 교육시간·교육과목·교육시설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인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에 대하여 제3항의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의 절차 및 방법, 인증의 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7(인증의 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8조의6제2항에 따라 인증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경우

2. 제48조의6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48조의8(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및 활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을 대상으로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48조의6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문화관광해설사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론 및 실습을 평가하고, 3개월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친 자에게 자격을 부여

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배치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관광지 등의 개발

제1절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개발

제49조(관광개발기본계획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는 관광개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전국의 관광 여건과 관광 동향(動向)에 관한 사항
2. 전국의 관광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항
3. 관광자원 보호·개발·이용·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4. 관광권역(觀光圈域)의 설정에 관한 사항
5. 관광권역별 관광개발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관광개발에 관한 사항

②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구분된 권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이하 "권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권역의 관광 여건과 관광 동향에 관한 사항
2. 권역의 관광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항
3. 관광자원의 보호·개발·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정비·보완 등에 관한 사항
- 4의2.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5. 관광지 연계에 관한 사항
6. 관광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그 권역의 관광자원의 개발, 관리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0조(기본계획) 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관광 개발사업에 관한 요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를 종합·조정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수립된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공고하려면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확정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요구 또는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51조(권역계획) ① 권역계획(圈域計劃)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역이 하나의 권역계획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관계되는 시·도지사와의 협의에 따라 수립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시·도지사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권역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조정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권역계획이 확정되면 그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확정된 권역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관계 부처의 장과의 협의를 갈음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2조(관광지의 지정 등) ① 관광지 및 관광단지(이하 "관광지등"이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 지사가 지정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관광지등을 지정하려면 사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같은 법의 규정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지역인 경우에는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에 따라 준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을 관광지등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협의요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관광지등의 지정 취소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은 관광지등의 지정에 관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면적의 변경은 제2항 본문에 따른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정, 지정취소 또는 그 면적변경을 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53조(조사·측량 실시) 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권역계획을 수립하거나 관광지등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지역에 대한 조사와 측량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조사와 측량을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의 출입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와 제131조를 준용한다.

제54조(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 관광지등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공공기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민간개발자(이하 "관광단지개발자"라 한다)는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민간개발자가 관광단지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제58조제13호 및 제6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성계획상의 조성 대상 토지면적 중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한 경우 남은 사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관광지등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조성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55조(조성계획의 시행) ① 조성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이하 "조성사업"이라 한다)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제54조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가 조성계획을 수립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행한다.

②사업시행자가 관광지등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조성계획의 승인 전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그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로서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본다.

③사업시행자가 아닌 자로서 조성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서 조성사업을 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자인 경우에는 관광단지개발자와 협의하여 조성사업을 할 수 있다.

④사업시행자가 아닌 자로서 조성사업(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시행하려는 자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⑤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공공기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관광단지개발자는 필요하면 용지의 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민간개발자인 경우에는 제54조제4항 단서에 따라 남은 사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56조(관광지등 지정 등의 실효 및 취소 등) ① 제52조에 따라 관광지등으로 지정·고시된 관광지등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이 없으면 그 고시일부터 2년이 지난 다음 날에 그 관광지등 지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효력이 상실된 관광지등에 대하여 그 조성계획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새로운 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54조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관광지등 사업시행자(제55조제3항에 따른 조성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면 조성계획 승인고시일부터 2년이 지난 다음 날에 그 조성계획의 승인은 효력을 상실한다.

③시·도지사는 제54조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민간개발자가 사업 중단 등으로 환경·미관을 크게 해칠 경우에는 조성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이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④시·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의 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조성계획 승인신청 또는 사업 착수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⑤시·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정 또는 승인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및 제3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57조(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는 관광지등의 조성사업과 그 운영에 관련되는 도로, 전기,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을 우선하여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7조의2(관광단지의 전기시설 설치) ① 관광단지에 전기를 공급하는 자는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자가 요청하는 경우 관광단지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간선시설(電氣幹線施設) 및 배전시설(配電施設)을 관광단지 조성계획에서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까지 설치하되, 구체적인 설치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광단지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기간선시설 및 배전시설의 설치비용은 전기를 공급하는 자가 부담한다. 다만,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자·입주기업·지방자치단체 등의 요청에 의하여 전기간선시설 및 배전시설을 땅속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땅속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100분의 50의 비율로 설치비용을 부담한다.

제58조(인·허가 등의 의제) ① 제54조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성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같은 호 마목의 계획 중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계획 및 지구단위계획만 해당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승인, 같은 법 제36

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의 계획관리지역 지정,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용도지구 중 개발진흥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 상수도설치시설의 인가
 3.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등의 허가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5. 삭제 <2010.4.15>
 6.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등의 허가 및 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의 인가
 7. 「도로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 점용의 허가
 8.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 실시계획의 승인
 9.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10.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
 11.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 전용허가
 12. 자연공원법 제20조에 따른 공원사업 시행 및 공원시설관리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행위 허가
 1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14.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15. 사망사업법 제20조에 따른 사망지 지정의 해제
 1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른 분묘의 개장신고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17.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18. 「온천법」 제10조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19.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
 20. 제15조제1항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국제회의업의 사업계획 승인. 다만,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작성자와 제55조제1항에 따른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동일한 경우에만 한다.
 2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 승인. 다만,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작성자와 제55조제1항에 따른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동일한 경우에만 한다.
 22.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 ② 제1항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하는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7.19>
- ③ 시·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8조의2(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가 관광지등 조성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해당 준공검사 시행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58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인·허가 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8조의3(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사업시행자가 조성사업의 시행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6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이 아닌 경우"는 "사업시행자인 경우"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 등을 등기하는 경우에는 조성계획승인서와 준공검사증명서로써 「부동산등기법」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하천·도랑 등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을,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제59조(관광지등의 처분) ① 사업시행자는 조성한 토지, 개발된 관광시설 및 지원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하거나 임대하거나 타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관광시설 또는 지원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는 그 토지나 관광시설 또는 지원시설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60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준용) 조성계획의 수립, 조성사업의 시행 및 관광지등의 처분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 외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00조·제130조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시·도지사"로, "실시계획"은 "조성계획"으로, "인가"는 "승인"으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지구"는 "관광지등"으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자"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조성사업"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은 "조성계획"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1.4.14>

제61조(수용 및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와 다음 각 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농업 용수권(用水權)이나 그 밖의 농지개량 시설을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1.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2. 토지에 정착한 임목이나 건물, 그 밖의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3.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4. 토지에 속한 토석 또는 모래와 조약돌

②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협의를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성사업 시행 기간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 그 보상 및 재결 신청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62조 삭제 <2009.3.25>

제63조(선수금) 사업시행자는 그가 개발하는 토지 또는 시설을 분양받거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받을 수 있다.

제64조(이용자 부담금 및 원인자 부담금) ① 사업시행자는 지원시설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지원시설 건설의 원인이 되는 공사 또는 행위가 있으면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사업시행자는 관광지등의 안에 있는 공동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지등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분담금 또는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받은 자가 부과된 분담금 또는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사업시행자는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65조(강제징수) ① 제64조에 따라 이용자 분담금·원인자 부담금 또는 유지·관리 및 보수에 드는 비용을 내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징수를 위탁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징수를 위탁한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별자치도·시·군·구에 내야 한다.

제66조(이주대책) ① 사업시행자는 조성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제공함으로써 생활의 근거를 잃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의 수립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78조제2항·제3항과 제81조를 준용한다.

제67조(입장료 등의 징수와 사용) ① 관광지등에서 조성사업을 하거나 건축, 그 밖의 시설을 한 자는 관광지등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고, 관광시설을 관람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관람료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입장료·관람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 대상의 범위와 그 금액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8.6.5>

③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입장료·관람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하면 이를 관광지등의 보존·관리와 그 개발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68조 삭제 <2009.3.25>

제69조(관광지등의 관리) ① 사업시행자는 관광지등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는 필요하면 관광사업자 단체 등에 관광지등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2절 관광특구

제70조(관광특구의 지정) ① 관광특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1. 외국인 관광객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2.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의시설 및 숙박시설 등이 갖추어져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일 것
3. 임야·농지·공업용지 또는 택지 등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을 갖춘 지역이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아니할 것

②관광특구의 지정·취소·면적변경 및 고시에 관하여는 제5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1조(관광특구의 진흥계획)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특구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관광특구진흥계획에 포함될 사항 등 관광특구진흥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2조(관광특구에 대한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 활동을 위한 편의 증진 등 관광특구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편리한 관광 활동을 위하여 관광특구 안의 문화·체육·숙박·상가시설로서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라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3.25>

제73조(관광특구에 대한 평가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1조에 따른 관광특구진흥계획의 집행 상황을 평가하고, 우수한 관광특구에 대하여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거나 추진 실적이 미흡한 관광특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특구의 지정취소·면적조정·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4조(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 ① 관광특구 안에서는 「식품위생법」 제43조에 따른 영업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관광특구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텔업을 경영하는 자는 「건축법」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 공지(공지: 공터)를 사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公衆)이 해당 공개 공지를 사용하는 데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4.5>

③ 관광특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특구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차마(車馬)의 도로통행 금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를 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75조 삭제 <2007.7.19>

제76조(재정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 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국유·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77조(청문)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4조제2항·제31조제2항 또는 제35조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등이나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2. 제40조에 따른 관광중사원 자격의 취소

2의2. 제48조의7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 인증의 취소

3. 제56조 제3항에 따른 조성계획 승인의 취소

제78조(보고·검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진흥정책의 수립·집행에 필요한 사항과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진흥시책의 수립·집행 및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진흥시책의 수립·집행 및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의 사무소·사업장 또는 영업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경우 해당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79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
2.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
3.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유원시설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
4. 제6조에 따라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을 신청하는 자
5. 제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지위 승계를 신고하는 자
6.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자
7. 제19조에 따라 관광숙박업의 등급 결정을 신청하는 자
8. 제23조제2항에 따라 카지노시설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
9. 제25조제2항에 따라 카지노기구의 검정을 받으려는 자
10. 제25조제3항에 따라 카지노기구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
11. 제33조제1항에 따라 안전성검사 또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으려는 자
12. 제38조제2항에 따라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
13. 제38조제2항에 따라 관광종사원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14. 제38조제4항에 따라 관광종사원 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15. 제48조의6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의 인증을 신청하는 자

제80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관광공사, 협회, 지역별·업종별 관광협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연구·검사기관이나 자격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 및 제35조에 따른 지정 취소

1의2.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외여행 인솔자의 등록 및 자격증 발급

2. 제19조제1항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등급 결정
 - 2의2. 제19조의2에 따른 우수숙박시설의 지정 및 그 취소
 3. 제25조제3항에 따른 카지노기구의 검사
 4.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또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
 5. 제38조제2항에 따른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및 등록
 6. 삭제
 7. 제48조의6 및 제48조의7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의 인증 및 그 취소
- ④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관광공사, 협회, 지역별·업종별 관광협회 및 전문 연구·검사기관이나 자격검정기관의 임원 및 직원과 제23조제2항·제25조제2항에 따라 검사기관의 검사·검정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본다.

제7장 벌칙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併科)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카지노업을 경영한 자
2. 제2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

제8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1.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여행업·관광숙박업(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관광숙박업만 해당한다)·국제회의업 및 제3조제1항제3호나목의 관광객 이용시설업을 경영한 자
2. 제5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원시설업을 경영한 자
3.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시설을 분양하거나 회원을 모집한 자

제8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카지노사업자(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종사원을 포함한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1. 제5조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3.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광사업의 시설 중 부대시설 외의 시설을 타인에게 경영하게 한 자
4. 제23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을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이용하여 영업을 한 자
5. 제25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 결과 공인기준등에 맞지 아니한 카지노기구를 이용하여 영업을 한 자
6. 제25조제4항에 따른 검사합격증명서를 훼손하거나 제거한 자
7. 제28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8.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위반하여 사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자
9.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
10. 제35조제1항제19호를 위반한 자
11. 제78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제8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3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 제5조제4항 전단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3. 제33조를 위반하여 안전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한 자
4.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기사설·유기기구 또는 유기기구의 부분품(部分品)을 설치하거나 사용한 자
- 4의2. 제35조제1항제14호에 해당되어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이 발한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35조제1항제20호에 해당되어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이 발한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
6. 제55조제3항을 위반하여 조성사업을 한 자

제8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1조부터 제84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삭제 <2011.4.5>
2. 제10조제2항을 위반한 자
3. 삭제 <2011.4.5>
4. 제28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영업준칙을 지키지 아니한 자
5. 제48조의6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이 부과 징수한다.

부칙 <법률 제10801호, 2011.6.15> (해사안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8호 중 "「해상교통안전법」 제63조제3항"을 "「해사안전법」 제34조제3항"으로 한다.

④부터 ⑪까지 생략

제9조 생략

2. 관광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과), 02-3704-9715

제1조(목적) 이 영은 「관광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1. 여행업의 종류

가. 일반여행업 :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사증(査證)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나. 국외여행업 : 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사증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다. 국내여행업 :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2. 호텔업의 종류

가. 관광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이하 "부대시설"이라 한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業)

나. 수상관광호텔업 : 수상에 구조물 또는 선박을 고정하거나 매어 놓고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다. 한국전통호텔업 : 한국전통의 건축물에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라. 가족호텔업 : 가족단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마. 호스텔업 :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로서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과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을 위한 문화·정보 교류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

3.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종류

가. 전문휴양업 :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 선용을 위하여 숙박업 시설(「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을 포함하며, 이하 "숙박시설"이라 한다)이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나목 또는 바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의 신고에 필요한 시설(이하 "음식점시설"이라 한다)을 갖추고 별표 1 제4호가목(2)(가)부터 (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이하 "전문휴양시설"이라 한다) 중 한 종류의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나. 종합휴양업

(1) 제1종 종합휴양업 :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 선용을 위하여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이나,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한 종류 이상의 시설과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2) 제2종 종합휴양업 :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 선용을 위하여 관광숙박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과 제1종 종합휴양업의 등록에 필요한 전문휴양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의 시설 또는 전문휴양시설 중 한 종류 이상의 시설 및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다. 자동차야영장업 : 자동차를 이용하는 여행자의 야영·취사 및 주차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라. 관광유람선업

- 1) 일반관광유람선업: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나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선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한 자가 선박을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업
- 2) 크루즈업: 「해운법」에 따른 순항(順航) 여객운송사업이나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해당 선박 안에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춘 선박을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업

- 마. 관광공연장업 : 관광객을 위하여 적합한 공연시설을 갖추고 공연물을 공연하면서 관광객에게 식사와 주류를 판매하는 업
- 바.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판매업 : 외국인 관광객(출국 예정 사실이 확인되는 내국인을 포함한다)에게 물품을 판매하기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국내에서 생산되는 주원료를 이용하여 제조하거나 가공된 물품을 판매하는 업

4. 국제회의업의 종류

- 가. 국제회의시설업 :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 나. 국제회의기획업 :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의 계획·준비·진행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

5.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의 종류

- 가. 종합유원시설업 : 유기사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대규모의 대지 또는 실내에서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 여섯 종류 이상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 나. 일반유원시설업 : 유기사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 한 종류 이상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 다. 기타유원시설업 : 유기사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6. 관광 편의시설업의 종류

- 가. 관광유희음식점업: 식품위생 법령에 따른 유희주점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한국 전통 분위기의 시설을 갖추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노래와 춤을 감상하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업
- 나. 관광극장유희업: 식품위생 법령에 따른 유희주점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무도(舞蹈)시설을 갖추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노래와 춤을 감상하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업
- 다. 외국인전용 유희음식점업 : 식품위생 법령에 따른 유희주점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외국인이 이용하기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주류나 그 밖의 음식을 제공하고 노래와 춤을 감상하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업
- 라. 관광식당업 : 식품위생 법령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음식 제공시설을 갖추고 관광객에게 특정 국가의 음식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업
- 마. 시내순환관광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버스를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시내와 그 주변 관광지를 정기적으로 순회하면서 관광할 수 있도록 하는 업
- 바. 관광사진업 : 외국인관광객과 동행하며 기념사진을 촬영하여 판매하는 업
- 사.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을 갖추고 이들에게 휴게시설·안내시설 등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업

야. 관광펜션업 :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자연·문화 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자. 관광레도업 : 「레도운송법」에 따른 레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주변 관광과 운송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차. 한옥체험업 : 한옥(주요 구조부가 목조구조로서 한식기와 등을 사용한 건축물 중 고유의 전통미를 간직하고 있는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에 숙박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은 제외한다)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업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② 제1항제6호아목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적용받는 지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등록절차)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사업 등록신청서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관광사업의 경우에는 그 심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제4조(등록증의 발급) ① 제3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한 사항이 제5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으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증을 발급하려면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증을 한꺼번에 발급할 수 있도록 해당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인·허가증의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사업자등록대장을 작성하고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한 관광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버린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등록기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휴양 콘도미니엄업과 전문휴양업 중 온천장 및 농어촌휴양시설을 2012년 11월 1일부터 2013년 10월 31일까지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경우 별표 1 제3호가목(1)에도 불구하고 같은 단지 안에 20실 이상 객실을 갖추어야 한다.

2. 전문휴양업 중 온천장의 경우 별표 1 제4호가목(2)(사)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온천수를 이용한 대중목욕시설이 있을 것

나. 정구장·탁구장·볼링장·활동·미니골프장·배드민턴장·롤러스케이팅장·보트장 등의 레크리에이션 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거나 제2조제5호에 따른 유원시설업 시설이 있을 것

3. 전문휴양업 중 농어촌휴양시설의 경우 별표 1 제4호가목(2)(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또는 관광농원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나. 관광객의 관람이나 휴식에 이용될 수 있는 특용작물·나무 등을 재배하거나 어류·희귀동물 등을 기르고 있을 것
제6조(변경등록) ①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사항(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관광사업만 해당한다)
 2.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
 3. 객실 수 및 형태의 변경(휴양 콘도미니엄업을 제외한 관광숙박업만 해당한다)
 4. 부대시설의 위치·면적 및 종류의 변경(관광숙박업만 해당한다)
 5. 여행업의 경우에는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및 영업소의 신설, 국제회의기획업의 경우에는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 ②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서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의 변경등록사항 중 사무실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신청서를 새로운 소재지의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7조(허가대상 유원시설업)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원시설업"이란 종합유원시설업 및 일반유원시설업을 말한다.

제8조(상호의 사용제한) 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관광사업자가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업종 구분에 따른 명칭을 포함하는 상호를 사용할 수 없다.

1. 관광숙박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관광호텔과 휴양 콘도미니엄
2. 관광유람선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관광유람
3. 관광공연장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관광공연
4.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판매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관광기념품
5. 관광유희음식점업, 외국인전용 유희음식점업 또는 관광식당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관광식당
- 5의2. 관광극장유희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관광극장
6. 관광펜션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관광펜션

제8조의2(외국인 의료관광 유치·지원 관련 기관)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지원 관련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의료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이하 "유치업자"라 한다)
2.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3. 그 밖에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의료관광(이하 "의료관광"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추진실적이 있는 보건·의료·관광 관련 기관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②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지원 관련 기관에 대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대여나 보조의 기준 및 절차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의3(외국인 의료관광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외국인 의료관광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 의료관광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전문교육기관 중에서 우수 전문교육기관이나 우수 교육과정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외국인 의료관광 안내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내외에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 안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의료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와 공동으로 해외마케팅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사업계획 변경승인) ①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지 및 대지 면적을 변경할 때에 그 변경하려는 면적이 당초 승인받은 계획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는 경우
2. 건축 연면적을 변경할 때에 그 변경하려는 연면적이 당초 승인받은 계획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는 경우
3. 객실 수 또는 객실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휴양 콘도미니엄업만 해당한다)
4. 변경하려는 업종의 등록기준에 맞는 경우로서, 호텔업과 휴양 콘도미니엄업 간의 업종변경 또는 호텔업 종류 간의 업종 변경

② 법 제15조제2항 후단에 따라 관광객 이용시설업이나 국제회의업의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휴양업이나 종합휴양업의 경우 부지, 대지 면적 또는 건축 연면적을 변경할 때에 그 변경하려는 면적이 당초 승인받은 계획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는 경우
2. 국제회의업의 경우 국제회의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려는 경우
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전문회의시설의 회의실 수 또는 옥내전시 면적을 변경할 때에 그 변경하려는 회의실 수 또는 옥내전시면적이 당초 승인받은 계획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는 경우
나.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른 전시시설의 회의실 수 또는 옥내전시면적을 변경할 때에 그 변경하려는 회의실 수 또는 옥내전시면적이 당초 승인받은 계획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는 경우

제10조(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등)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광호텔업·수상관광호텔업·한국전통호텔업·가족호텔업·호스텔업과 휴양 콘도미니엄업 및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광사업의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9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서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신청서를 접수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관광사업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허가 등이 의제되는 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계획승인의 통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신청한 사업계획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계획승인 대상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법 제15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이나 국제회의업"이란 다음 각 호의 관광사업을 말한다.

1. 전문휴양업
2. 종합휴양업
3. 관광유람선업
4. 국제회의시설업

제13조(사업계획 승인기준) ①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의 내용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사업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능력 및 방안이 있을 것
3. 일반 주거지역의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의 위락시설은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아야 하고, 준주거지역의 경우에는 다목의 기준에 맞을 것. 다만, 일반 주거지역에서의 사업계획의 변경 승인(신축 또는 기존 건축물 전부를 철거하고 다시 축조하는 개축을 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의 경우에는 가목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가. 대지가 폭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연접할 것. 다만, 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조례로 이 기준을 강화할 수 있다.
 - 나.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그 건물의 채광을 위하여 설치하는 창이나 문이 향하는 방향으로 인접된 대지의 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가 공원·광장·도로·하천이나 그 밖의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空地)인 경우에는 그 인접된 대지의 반대편 경계선을 말한다]까지의 수평거리의 두 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다. 소음 공해를 유발하는 시설은 지하층에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주변의 주거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라. 대지 안의 조경은 대지면적의 20퍼센트 이상으로 하되, 대지 경계선 주위에는 다 자란 나무를 심어 인접 대지와 차단하는 수림대(樹林帶)를 조성할 것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규모를 축소하는 사업계획에 대한 변경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감소 비율이 당초 승인한 분양 및 회원 모집 계획상의 피분양자 및 회원(이하 이 항에서 "회원등"이라 한다) 총 수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승인 예정일 현재 실제로 미분양 및 모집 미달이 되고 있는 잔여 회원등 총 수의 비율(이하 이 항에서 "미분양률"이라 한다)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그 변경승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이미 분양받거나 회원권을 취득한 회원등에 대하여 그 대지면적 및 객실면적(전용 및 공유면적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감소분에 비례하여 분양가격 또는 회원 모집가격을 인하하여 해당 회원등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미분양률을 초과하여 변경승인을 할 수 있다.

1. 당초계획(승인한 사업계획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상의 대지면적에 대한 변경계획상의 대지면적 감소비율
2. 당초계획상의 객실 수에 대한 변경계획상의 객실 수 감소비율
3. 당초계획상의 전체 객실면적에 대한 변경계획상의 전체 객실면적 감소비율

제14조(관광숙박시설 건축지역) 법 제16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일반주거지역
2. 준주거지역
3. 준공업지역
4. 자연녹지지역

제1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의견 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인 또는 안전·소방 등에 대한 전문가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제19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등록심의대상 관광사업) ① 법 제17조제1항 및 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이나 국제회의업"이란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광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17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심의사항의 변경 중 관계되는 기관이 둘 이하인 경우의 심의사항 변경을 말한다.

제21조(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영업)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바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단란주점영업·유흥주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말한다.

제22조(호텔업의 등급 결정) ① 법 제19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중 호텔업의 등급은 특1등급·특2등급·1등급·2등급 및 3등급으로 구분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급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에게 호텔업의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조사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등급 결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2(우수숙박시설의 지정)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우수숙박시설의 지정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가 지정한 우수숙박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별표 1의2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23조(분양 및 회원모집 관광사업)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휴양 콘도미니엄업 및 호텔업
2.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제2종 종합휴양업

② 법 제20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숙박업"이란 다음 각 호의 숙박업을 말한다.

1. 휴양 콘도미니엄업
2. 호텔업
3. 삭제

제24조(분양 및 회원모집의 기준 및 시기) ①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 시설의 분양 및 회원모집 기준과 호텔업 및 제2종 종합휴양업 시설의 회원모집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종 종합휴양업 시설 중 등록 체육시설업 시설에 대한 회원모집에 관하여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소유권 등을 확보할 것. 이 경우 분양(휴양 콘도미니엄업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또는 회원모집 당시 해당 휴양 콘도미니엄업, 호텔업 및 제2종 종합휴양업의 건물이 사용승인된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소유권도 확보하여야 한다.

가. 휴양 콘도미니엄업 및 호텔업(수상관광호텔은 제외한다)의 경우 : 해당 관광숙박시설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

나. 수상관광호텔의 경우 : 구조물 또는 선박의 소유권

다. 제2종 종합휴양업의 경우 : 회원모집 대상인 해당 제2종 종합휴양업 시설이 건설되는 부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2. 제1항에 따른 대지·부지 및 건물이 저당권의 목적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을 말소할 것. 다만, 공유제(共有制)일 경우에는 분양받은 자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회원제일 경우에는 저당권이 말소될 때까지 분양 또는 회원모집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분양을 받은 자나 회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저당권 설정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분양을 하는 경우 한 개의 객실당 분양인원은 5명 이상으로 하되, 가족(부부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만을 수분양자로 하지 아니할 것. 다만, 공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한 개의 객실에 공유제 또는 회원제를 혼합하여 분양하거나 회원모집을 하지 아니할 것

5. 공유자 또는 회원의 연간 이용일수는 365일을 객실당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 인원수로 넘는 범위 이내일 것

6. 주거용으로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휴양 콘도미니엄업, 호텔업 및 제2종 종합휴양업의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 그 시기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휴양 콘도미니엄업 및 제2종 종합휴양업의 경우

가. 해당 시설공사의 총 공사 공정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정률 이상 진행된 때부터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되,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려는 총 객실 중 공정률에 해당하는 객실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할 것

나. 공정률에 해당하는 객실 수를 초과하여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분양 또는 회원모집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분양을 받은 자나 회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공정률을 초과하여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려는 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에 관광사업의 등록 시까지 가입할 것

2. 호텔업의 경우

관광사업의 등록 후부터 회원을 모집할 것. 다만, 제2종 종합휴양업에 포함된 호텔업의 경우에는 제1호가목 및 나목을 적용한다.

제25조(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의 제출) ① 제24조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의 내용이 사업계획승인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검토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6조(공유자 또는 회원의 보호)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한 자는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공유자 또는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공유지분 또는 회원자격의 양도·양수 : 공유지분 또는 회원자격의 양도·양수를 제한하지 아니할 것
2. 시설의 이용 : 공유자 또는 회원이 이용하지 아니하는 객실만을 공유자 또는 회원이 아닌 자에게 이용하게 할 것. 이 경우 객실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제6호에 따른 공유자·회원의 대표기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객실이용명세서를 작성하여 공유자·회원의 대표기구에 알려야 한다.
3.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징수
 - 가. 해당 시설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되, 시설의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 외의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할 것
 - 나. 가목에 따른 시설의 유지와 관리 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자·회원의 대표기구와 협의하고, 그 사용명세를 매년 공유자·회원의 대표기구에 공개할 것
4. 회원의 입회금(회원자격을 부여받은 대가로 회원을 모집하는 자에게 지불하는 비용을 말한다)의 반환 : 회원의 입회기간 및 입회금의 반환은 관광사업자 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와 회원 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르되, 회원의 입회기간이 끝나 입회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입회금 반환을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할 것
5. 회원증의 발급 및 확인 :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자나 회원에게 해당 시설의 공유자나 회원임을 증명하는 회원증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확인받아 발급할 것
6. 공유자·회원의 대표기구 구성 : 20명 이상의 공유자·회원으로 대표기구(그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한 자, 그 대표자 및 임직원은 대표기구에 참여할 수 없다)를 구성하여야 하며, 제3호나목 외의 공유자·회원의 권익에 관한 사항은 대표기구와 협의할 것
7. 그 밖의 공유자·회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약서에 사업계획의 승인번호·일자(관광사업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등록번호·일자), 시설물의 현황·소재지, 연간 이용일수 및 회원의 입회기간을 명시할 것

제27조(카지노업의 허가요건 등) ①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회의업 시설"이란 제2조제1항제4호가목의 국제회의시설업의 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호텔업이나 국제회의시설업의 부대시설에서 카지노업을 하려는 경우
 - 가. 해당 관광호텔업이나 국제회의시설업의 전년도 외래관광객 유치실적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고하는 기준에 맞을 것
 - 나. 외래관광객 유치계획 및 장기수지전망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가 적정할 것
 - 다. 나목에 규정된 사업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재정능력이 있을 것
 - 라. 현금 및 칩의 관리 등 영업거래에 관한 내부통제방안이 수립되어 있을 것
 - 마. 그 밖에 카지노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고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여객선에서 카지노업을 하려는 경우
 - 가. 여객선이 2만톤급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고하는 총톤수 이상일 것
 - 나. 삭제
 - 다. 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적합할 것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최근 신규허가를 한 날 이후에 전국 단위의 외래관광객이 60만 명 이상 증가한 경우에만 신규허가를 할 수 있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증가인원 60만 명당 2개 사업 이하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1. 전국 단위의 외래관광객 증가 추세 및 지역의 외래관광객 증가 추세
2. 카지노이용객의 증가 추세
3. 기존 카지노사업자의 총 수용능력
4. 기존 카지노사업자의 총 외화획득실적
5. 그 밖에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신규허가를 하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제2항제1호가목·마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의 세부 허가기준
2. 허가가능업체 수
3. 허가신청기간 및 요령

제28조(카지노업의 조건부 영업허가 기간) 법 제2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를 말한다.

제29조(카지노업의 종사원의 범위)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원"이란 그 직위와 명칭이 무엇이든 카지노사업자를 대리하거나 그 지시를 받아 상시 또는 일시적으로 카지노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2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카지노사업자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준칙을 이행 (카지노영업소 이용자의 도박 중독 등을 이유로 그 배우자 등이 출입 금지를 요청한 경우에 그 이용자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경우 및 카지노영업소 이용자의 출입일수 관리를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30조(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의 납부금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총매출액은 카지노영업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받은 총금액에서 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이하 "납부금"이라 한다)의 징수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연간 총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 총매출액의 100분의 1
2. 연간 총매출액이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총매출액 중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3. 연간 총매출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4억6천만원+총매출액 중 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③ 카지노사업자는 매년 3월 말까지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4월 30일까지 제2항에 따라 전년도 총매출액에 대하여 산출한 납부금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2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한국은행에 개설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출납관리를 위한 계정에 납부할 것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납부금을 2회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되, 납부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회: 해당 연도 6월 30일까지
2. 제2회: 해당 연도 9월 30일까지
3. 삭제 <2010.2.24>
4. 삭제 <2010.2.24>

⑤ 카지노사업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납부금을 그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제31조(유원시설업의 조건부 영업허가 기간 등) ①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종합유원시설업을 하려는 경우: 5년 이내
2. 일반유원시설업을 하려는 경우: 3년 이내

②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천재지변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정으로 부지의 조성, 시설 및 설비의 설치가 지연되는 경우
3. 그 밖의 기술적인 문제로 시설 및 설비의 설치가 지연되는 경우

제32조(사업계획승인시설의 착공 및 준공기간) 법 제35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 2011년 6월 30일 이전에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가. 착공기간: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4년
나. 준공기간: 착공한 날부터 7년
2. 2011년 7월 1일 이후에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가. 착공기간: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나. 준공기간: 착공한 날부터 5년

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등록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이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 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등록기관등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처분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34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② 등록기관등의 장은 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과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35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등록기관등의 장은 법 제37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등록기관등의 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과징금은 분할하여 낼 수 없다.

제36조(자격을 필요로 하는 관광 업무 자격기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등록기관등의 장이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종사하도록 권고할 수 있거나 종사하게 하여야 하는 관광 업무 및 업무별 자격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37조(시·도지사 관할 관광중사원) 법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중사원"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내여행안내사
2. 호텔서비스사

제38조(한국관광협회중앙회의 설립요건)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면 제41조에 따른 지역별 관광협회 및 업종별 관광협회의 대표자 3분의 1 이상으로 구성되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역별 관광협회 및 업종별 관광협회의 대표자 과반수로 구성되는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협회의 설립 후 임원이 임명될 때까지 필요한 업무는 발기인이 수행한다.

제39조(공제사업의 허가 등) ①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협회가 공제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면 공제규정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사업의 실시방법, 공제계약, 공제분담금 및 책임준비금의 산출방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을 변경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공제사업을 하는 자는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말에 그 사업의 책임준비금을 계상하고 적립하여야 한다.

⑤ 공제사업에 관한 회계는 협회의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제40조(공제사업의 내용)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사업자의 관광사업행위와 관련된 사고로 인한 대물 및 대인배상에 대비하는 공제 및 배상업무
2. 관광사업행위에 따른 사고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종사원에 대한 보상업무
3. 그 밖에 회원 상호간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

제41조(지역별 또는 업종별 관광협회의 설립)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지역별 관광협회 또는 업종별 관광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별 관광협회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를 단위로 설립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는 지부를 둘 수 있다.
2. 업종별 관광협회는 업종별로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국을 단위로 설립할 수 있다.

제41조의2(관광통계 작성 범위)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관광통계의 작성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 방한(訪韓) 관광객의 관광행태에 관한 사항
2. 국민의 관광행태에 관한 사항
3. 관광사업자의 경영에 관한 사항
4. 관광지와 관광단지의 현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1조의3(문화관광축제의 지정 기준) 법 제48조의2제3항에 따른 문화관광축제의 지정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1. 축제의 특성 및 콘텐츠
2. 축제의 운영능력
3. 관광객 유치 효과 및 경제적 파급효과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41조의4(문화관광축제의 지원 방법) ① 법 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받으려는 지역축제의 개최지는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1조의3에 따른 지정 기준에 따라 문화관광축제를 등급을 구분하여 지정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받은 문화관광축제를 예산의 범위에서 등급별로 차등을 두어 지원할 수 있다.

제42조(관광개발계획의 수립시기)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은 10년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은 5년마다 수립한다.

제43조(경미한 권역계획의 변경) 법 제51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관광개발기본계획의 범위에서 하는 법 제49조제2항제1호·제2호 또는 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 관한 사항의 변경

2. 법 제49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관한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변경

가. 관광자원의 보호·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나.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이하 "관광지등"이라 한다)의 면적(권역계획상의 면적을 말한다. 이하 다목과 라목에서 같다)의 축소

다. 관광지등 면적의 100분의 30 이내의 확대

라. 지형여건 등에 따른 관광지등의 구역 조정(그 면적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조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이나 명칭 변경

제44조(경미한 면적 변경) 법 제52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면적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지적조사 또는 지적측량의 결과에 따른 면적의 정정 등으로 인한 면적의 변경

2. 관광지등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내의 면적(「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농지가 1만 제곱미터 이상,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지역의 농지가 6만 제곱미터 이상 추가로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변경

제45조(관광지등의 지정·고시 등) ① 법 제52조제5항에 따른 시·도지사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시연월일

2. 관광지등의 위치 및 면적

3. 관광지등의 구역이 표시된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②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관광지등을 지정·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내용을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광지등의 지번·지목·지적 및 소유자가 표시된 토지조서를 갖추어 두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6조(조성계획의 승인신청)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관광지등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조성계획의 변경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과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한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하고, 제4호에 따른 국·공유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조성계획 승인 후 공사착공 전에 제출할 수 있다.

1.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관광시설계획서·투자계획서 및 관광지등 관리계획서

2. 지번·지목·지적·소유자 및 시설별 면적이 표시된 토지조서

3. 조감도

4. 법 제2조제8호의 민간개발자가 개발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만, 민간개발자가 개발하는 경우로서 해당 토지 중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국·공유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광단지개발자가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성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조성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경미한 조성계획의 변경) ① 법 제54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관광시설계획면적의 100분의 20 이내의 변경
2. 관광시설계획 중 시설지구별 토지이용계획면적(조성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변경승인을 받은 토지이용계획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내의 변경(시설지구별 토지이용계획면적이 2천2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660제곱미터 이내의 변경)
3. 관광시설계획 중 시설지구별 건축 연면적(조성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변경승인을 받은 건축 연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내의 변경(시설지구별 건축 연면적이 2천2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660제곱미터 이내의 변경)

② 관광지등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경미한 조성계획의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조성계획 승인권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48조(조성사업의 시행허가 등) ①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조성사업의 시행허가를 받거나 협의를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에게 각각 신청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협의를 하려면 해당 조성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조성계획에 저촉 여부
2. 관광지등의 자연경관 및 특성에 적합 여부

제49조(용지매수 및 보상업무의 위탁) ① 관광단지개발자는 법 제55조제5항에 따라 조성사업을 위한 용지의 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려면 그 위탁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위탁업무의 시행지 및 시행기간
2. 위탁업무의 종류·규모·금액
3.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과 그 지급방법
4. 그 밖에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한 자에게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제49조의2(전기간선시설 등의 설치범위) 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라 전기간선시설(電氣幹線施設) 및 배전시설(配電施設)을 설치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설치범위는 관광단지 조성사업구역 밖의 기간(基幹)이 되는 시설로부터 조성사업구역 안의 토지이용계획상 6미터 이상의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에 접하는 개별필지의 경계선까지를 말한다.

제50조(인·허가 등의 의제)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원지를 말한다.

제50조의2(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조성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하여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준공검사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주소
2. 조성사업의 명칭
3. 조성사업을 완료한 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조성사업기간

②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준공설계도서(착공 전의 사진 및 준공사진을 첨부한다)
2.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소관청이 발행하는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법 제58조의3에 따른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조서와 도면(민간개발자인 사업시행자의 경우에는 용도 폐지된 공공시설 및 토지 등에 대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조서와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공사비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취득할 대상 토지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토지 등의 내역서(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환지계획서 및 신·구 지적대조도(환지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6.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 등의 관리·처분 계획

③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검사일정을 정하여 준공검사 신청 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검사일 5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에 참여하려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준공검사일 전날까지 참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준공검사를 하여 해당 조성사업이 법 제54조에 따라 승인된 조성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조성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3. 조성사업을 완료한 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준공년월일
5. 주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1조 삭제 <2009.10.7>

제52조(선수금) 사업시행자는 법 제63조에 따라 선수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금액 및 납부방법에 대하여 토지 또는 시설을 분양받거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3조(이용자 부담금)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지원시설의 이용자에게 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지원시설의 건설사업명·건설비용·부담금액·납부방법 및 납부기한을 서면에 구체적으로 밝혀 그 이용자에게 부담금의 납부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의 건설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공사비(조사측량비·설계비 및 관리비는 제외한다)

2. 보상비(감정비를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담금액은 지원시설의 이용자의 수 및 이용횟수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가 이용자와 협의하여 산정한다.

제54조(원인자 부담금) 사업시행자가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원인자 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이용자 부담금에 관한 제53조를 준용한다.

제55조(유지·관리 및 보수 비용의 분담)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64조제3항에 따라 공동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수 비용을 분담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시설의 유지·관리·보수 현황, 분담금액, 납부방법, 납부기한 및 산출내용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관광지등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그 납부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수 비용의 분담비율은 시설사용에 따른 수익의 정도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경영하는 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유지·관리·보수 비용의 분담 및 사용 현황을 매년 결산하여 비용분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6조(이용자 부담금 및 원인자 부담금의 징수위탁) 사업시행자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법 제64조에 따른 이용자 부담금, 원인자 부담금 또는 유지·관리 및 보수 비용(이하 이 조에서 "분담금등"이라 한다)의 징수를 위탁하려면 그 위탁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분담금등의 납부의무자의 성명·주소
2. 분담금등의 금액
3. 분담금등의 납부사유 및 납부기간
4. 그 밖에 분담금등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

제57조(이주대책의 내용) 사업시행자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이주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택지 및 농경지의 매입
2. 택지 조성 및 주택 건설
3. 이주보상금
4. 이주방법 및 이주시기
5. 이주대책에 따른 비용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8조(관광특구의 지정요건) ① 법 제7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통계전문기관의 통계결과 해당 지역의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 수가 10만명(서울특별시는 50만 명)인 것을 말한다.

② 법 제7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관광특구 전체 면적 중 임야·농지·공업용지 또는 택지 등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10퍼센트인 것을 말한다.

제59조(관광특구진흥계획의 수립·시행)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71조에 따른 관광특구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도·시·군·구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한다.

1.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관광편의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특색 있고 다양한 축제, 행사, 그 밖에 홍보에 관한 사항

3.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관광특구를 중심으로 주변지역과 연계한 관광코스의 개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광질서 확립 및 관광서비스 개선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립된 진흥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진흥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0조(관광특구의 평가 및 조치) ① 시·도지사는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진흥계획의 집행 상황을 연 1회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 시에는 관광 관련 학계·기관 및 단체의 전문가와 지역주민, 관광 관련 업계 종사자가 포함된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평가가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도지사가 보고한 사항 외에 추가로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진흥계획의 집행 상황을 직접 평가할 수 있다.

③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진흥계획의 집행 상황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광특구의 지정요건에 3년 연속 미달하여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광특구 지정 취소

2. 진흥계획의 추진실적이 미흡한 관광특구로서 제3호에 따라 개선권고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광특구 지정 취소

3. 진흥계획의 추진실적이 미흡한 관광특구에 대하여는 지정 면적의 조정 또는 투자 및 사업계획 등의 개선 권고

제60조의2(「건축법」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는 호텔업의 범위) 법 제74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텔업"이란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또는 호스텔업을 말한다.

제61조(국고보조금의 지급신청) ①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의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그 신청의 내용과 조건을 심사할 수 있다.

제62조(보조금의 지급결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1조에 따른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보조금의 지급을 결정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사업완료 전에 지급하되, 필요한 경우 사업완료 후에 지급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을 받은 자(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추진 실적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3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① 보조사업자는 사업계획을 변경 또는 폐지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합병으로 존속되거나 새로 설립된 법인의 대표자가, 해산한 경우에는 그 청산인이 신고하여야 한다.

1.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이나 주소를 변경한 경우

2. 정관이나 규약을 변경한 경우

3. 해산하거나 파산한 경우

4. 사업을 시작하거나 종료한 경우

제64조(보조금의 사용 제한 등)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조금의 지급결정을 받은 자 또는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급결정의 취소, 보조금의 지급정지 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였거나 받은 경우
2. 보조금의 지급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64조의2(공유 재산의 임대료 감면) ① 법 제76조제3항에 따른 공유 재산의 임대료 감면율은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공유 재산 임대료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법 제76조제3항에 따라 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5조(권한의 위탁) ① 등록기관등의 장은 법 제8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관광공사, 협회, 지역별·업종별 관광협회, 전문 연구·검사기관 또는 자격검정기관에 각각 위탁한다.

1. 법 제6조 및 법 제35조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 중 관광식당업·관광사진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권한 : 지역별 관광협회에 위탁한다.
 - 1의2.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외여행 인솔자의 등록 및 자격증 발급에 관한 권한: 업종별 관광협회에 위탁한다.
 - 1의3. 법 제19조의2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우수숙박시설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권한: 한국관광공사에 위탁한다.
 2.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카지노기구의 검사에 관한 권한 :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이하 "카지노기구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3.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및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에 관한 권한 :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추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한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검사기관에 각각 위탁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검사기관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4. 법 제38조에 따른 관광종사원 중 관광통역안내사·호텔경영사 및 호텔관리사의 자격시험, 등록 및 자격증의 발급에 관한 권한 : 한국관광공사에 위탁한다. 다만, 자격시험의 출제, 시행, 채점 등 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는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5. 법 제38조에 따른 관광종사원 중 국내여행안내사 및 호텔서비스사의 자격시험, 등록 및 자격증의 발급에 관한 권한 : 협회에 위탁한다. 다만, 자격시험의 출제, 시행, 채점 등 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는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6. 법 제48조의6 및 제48조의7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교육과정 등의 인증 및 인증의 취소에 관한 권한: 한국관광공사에 위탁한다.
-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한 지역별 관광협회는 이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역별 관광협회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을 매월 종합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카지노기구의 검사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카지노기구 검사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2호의 검사에 관한 업무 규정을 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1항제3호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한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검사기관은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령 위반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1호의2, 제1호의3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한 한국관광공사, 협회, 업종별 관광협회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국외여행 인솔자의 등록 및 자격증 발급, 우수숙박시설의 지정·지정 취소, 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 등록 및 자격증의 발급,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등의 인증 및 인증의 취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이를 분기별로 종합하여 다음 분기 1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6조(등급결정 권한의 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80조제3항제2호에 따라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호텔업의 등급결정권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한 법인에 위탁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등급결정권을 위탁한 법인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1. 비영리법인일 것
2. 관광숙박업의 육성과 서비스 개선 등에 관한 연구 및 계몽활동 등을 하는 법인일 것
3.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격을 가진 평가요원을 평가요소별로 10명 이상 확보하고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등록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6조의2(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3조제1항의 회원 모집을 할 수 있는 관광사업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7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부칙 <대통령령 제24187호, 2012.11.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국 관광진흥과), 02-3704-9755

제1조(목적) 이 법은 관광숙박시설의 건설과 확충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국관광객 유치 확대와 관광산업의 발전 및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호텔업"이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을 말한다.
2. "호텔업자"란 제1호의 호텔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3. "국제행사"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제회의 또는 문화·체육 행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행사를 말한다.
4. "호텔시설"이란 제1호의 호텔업을 경영하는 데 필요한 객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제2조제1호의 호텔업을 경영하려는 자와 제2조제2호의 호텔업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호텔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이 법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군·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호텔업에 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에 관하여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 승인의 기준·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관광진흥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 승인 및 같은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해제·신고 등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
3. 「도로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승인·신고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시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군·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계획의 조건부승인) ① 시·군·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호텔업의 사업계획을 승인할 경우에는 해당 호텔시설 주변의 주거환경, 교육환경 및 자연환경을 해치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그 밖의 공사완료기간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시·군·구청장은 호텔업의 사업계획상 호텔시설의 부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국유지·공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확보할 것을 조건으로 사업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③ 시·군·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하기 전에 국유지·공유지의 관리청에 해당 토지의 매각 가능 여부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하며, 매각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계획의 변경승인)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호텔업에 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그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계획 변경사항은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다.

제8조(준용규정)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은 「관광진흥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고 그에 따라 호텔시설을 건설 또는 운영 중에 해당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9조(인허가일괄처리위원회) ①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호텔업의 사업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하 "사업계획승인등"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일괄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군·구청장 소속 하에 호텔업 인허가일괄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시·군·구청장은 사업계획승인등에 관한 업무를 위원회에서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제5조제3항에 따른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5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업무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지방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④ 시·군·구청장은 위원회의 사업계획승인등에 관한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담 공무원을 별도로 두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겸직하게 할 수 있다.

⑤ 이 법에서 정한 것 이외의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용적률에 관한 특례) ① 호텔시설을 건설하는 경우에는(증축·개축을 포함하되, 객실 외의 부대시설을 증축·개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 적용하는 데 있어 각종 개발계획에서 결정된 건축물 층수 또는 높이 제한의 완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다.

제11조(국유지·공유지 등의 매각 등에 관한 특례) ① 시·군·구청장은 제4조·제7조·제8조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사업계획서에 국유·공유 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국유·공유 재산의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요청을 받은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조건부로 호텔업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유지·공유지를 수의계약으로 우선하여 매각할 수 있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토지를 매수한 자가 제17조에 따라 그 사업계획승인 등이 취소된 경우에는 매각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12조(공유재산의 대부 등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호텔시설 건설 용도로 공유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유지를 대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부하는 공유지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호텔시설 및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유지를 대부받은 자는 대부기간이 끝날 때에 그 공유지를 매입 또는 원상회복하거나 축조한 시설물을 기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대부하는 공유지의 대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금액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제13조(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한 특례) 사업계획승인등을 받은 호텔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제1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14조(자금지원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업계획승인등을 받은 호텔시설에 대하여 해당 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존 시설을 호텔시설로 용도 변경하고자 호텔업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시설에 대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 용자조건을 특별히 우대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호텔시설에 대한 각종 부담금 감면과 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공동 관리·운영의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호텔업자가 다른 호텔업자 또는 호텔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국제적인 관리체제를 가진 자와 호텔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상호 협조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호텔업자에게 우선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호텔업자가 둘 이상의 호텔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호텔업의 종류 및 지원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관광숙박대책위원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국제행사 개최에 따른 참가자 및 관광객을 위한 숙박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관광숙박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광숙박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사업계획승인등의 취소) ① 시·군·구청장은 사업계획승인등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관광진흥법」 제35조제1항제8호에서 정한 기간 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승인등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시·군·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호텔업의 사업계획승인등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이 있거나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자금 등의 지원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청문) 시·군·구청장은 제17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등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부칙 <법률 제11227호, 2012.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사업계획승인등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등은 이 법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시까지 그 효력을 가지며 그 효력을 가지는 동안에는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를 적용한다.

제4조(유효기간 이후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등을 받은 자가 이 법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 그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15조를 적용한다.

4. 관광숙박시설 현황

관광호텔 현황(167개소)

연번	자치구	등급	호텔명	객실수	소재지(홈페이지 주소)
1	종로구	1급	호텔크라운인사동	80	낙원동25(www.hotelcrown.com)
2	종로구	2급	동대문관광호텔	52	창신동 444-14
3	종로구	2급	센츄럴관광호텔	78	장사동 227-1
4	종로구	2급	동화김스관광호텔	51	평창동66-50(www.kimshotel.co.kr)
5	종로구	3급	삼호관광호텔	50	창신동 436-73
6	종로구	3급	서울YMCA관광호텔	30	종로2가 9(www.ymca.or.kr)
7	종로구	-	써튼호텔	163	관수동125-1(www.sutton.co.kr)
8	종로구	-	호텔 아벤처리종로	155	견지동65-1(www.aventreehotel.com)
9	종로구	-	센터마크호텔	250	관훈동198-42(www.centermarkhotel.com)
10	종로구	가족호텔	프레이저스위츠 서울가족호텔	213	낙원동272(www.frasersuiteseoul.co.kr)
11	종로구	호스텔	Stay in GAM	15	율곡로 10길 12
12	종로구	호스텔	ICON	28	삼일대로 32가길 20
13	종로구	호스텔	엘로우브릭 호스텔	37	삼일대로 32가길 33
14	중구	특1급	호텔 롯데	1,151	소공동1(www.hotel.lotte.co.kr)
15	중구	특1급	서울 신라호텔	461	장충동2가 202(www.shilla.net)
16	중구	특1급	밀레니엄서울 힐튼	679	남대문로5가 395(www.millenniumseoulhilton.co.kr)
17	중구	특1급	플라자호텔	415	태평로2가23(www.seoulplaza.co.kr)
18	중구	특1급	더웨스턴조선서울	453	소공동 87-1(www.westinchosun.co.kr)
19	중구	특1급	그랜드앰배서더서울	413	장충동2가186-54(www.ambatel.com)
20	중구	특2급	서울 로얄호텔	312	명동1가 6(www.seoulroyal.co.kr)
21	중구	특2급	호텔프레지던트	303	을지로1가 188-3(www.hotelpresident.co.kr)
22	중구	특2급	코리아나호텔	337	태평로1가 61-1(www.koreanahotel.com)
23	중구	특2급	세종호텔서울	343	충무로2가 61-3(www.sejong.co.kr)
24	중구	특2급	퍼시픽호텔	181	남산동2가 31-1(www.thepacifichotel.co.kr)
25	중구	특2급	호텔 PJ	271	인현동2가 73-1(www.poongjun.net)
26	중구	특2급	베스트웨스턴프리미어호텔국도	295	을지로4가 310(www.hotelkukdo.com)
27	중구	1급	서울렉스호텔	93	회현동1가 65(www.hotelrex.co.kr)
28	중구	1급	뉴국제호텔	142	태평로1가 29-2(www.newkukjehotel.com)
29	중구	1급	베스트웨스턴 뉴서울호텔	169	태평로1가 29-1(www.bestwesternnewseoul.com)
30	중구	1급	사보이호텔	105	충무로1가 23-1(www.savoyhotel.co.kr)

31	중구	1급	프린스호텔	100	남산동2가 1-1(www.hotelprinceseoul.com)
32	중구	1급	메트로호텔	75	을지로2가199-33(www.metrohotel.co.kr)
33	중구	1급	이비스엠배서더 명동	280	명동1가 59-5(ibus.ambatel.com/myeongdong)
34	중구	1급	아스토리아호텔	80	남학동 13-2
35	중구	1급	호텔아카시아	134	을지로5가 99(www.hotelacacia.co.kr)
36	중구	3급	뉴오리엔탈관광호텔	65	회현동3가 10
37	중구	3급	뉴천지호텔	50	을지로5가 133-1(www.newhotelchonji.co.kr)
38	중구	3급	호텔 파레스	52	회현동1가 92-6
39	중구	-	호텔 스카이파크Ⅲ	136	충무로2가 62-9외 1(www.skyparkhotel.com)
40	중구	-	라마다호텔동대문	154	을지로5가 275-3외 17(www.ramadadm.com)
41	중구	-	호텔마누	90	퇴계로 90(www.hotelmanu.com)
42	중구	-	나인트리호텔명동	144	충무로2가 63-2(www.ninetreehotel.com)
43	중구	가족호텔	반얀트리 클럽앤호텔 서울	50	장충동2가 산5-5(www.towerhotel.co.kr)
44	중구	가족호텔	프레저플레이스센트럴서울	240	순화동 214 외1(www.fraserplace.co.kr)
45	중구	가족호텔	이스트게이트타워호텔	156	을지로 6가17-2(www.eastgatehotel.kr)
46	용산구	특1급	서울미라마(유)그랜드하얏트서울	607	한남동 747-7(seoul.grand.hyatt.kr)
47	용산구	특2급	(주)호텔캐피탈	286	이태원동 22-76번지(www.hotelcapital.co.kr)
48	용산구	1급	(주)해밀턴호텔	166	이태원동 119-24,25외(www.hamilton.co.kr)
49	용산구	1급	(주)크라운호텔	191	이태원동 36-69외(www.hotelcrown.com)
50	용산구	1급	아이피부티크호텔	132	한남동 737-32(ww.ipboutiquehotel.com)
51	용산구	2급	가야관광호텔	51	갈월동98-11번지(www.kayahotel.net)
52	성동구	2급	비전관광호텔	64	도선동2(www.hotelvision.co.kr)
53	성동구	3급	아모렉스 관광호텔	56	도선동72(www.amourexhotel.com)
54	성동구	-	JJ HOTEL	30	용답동 228-6
55	광진구	특1급	워커힐호텔	930	워커힐로177(www.walkerhill.co.kr)
56	광진구	1급	동서울관광호텔	115	구의강변로 38
57	광진구	1급	한강관광호텔	116	아차산로78길 147(www.hankanghotel.co.kr)
58	광진구	-	더클래식500펜타즈호텔	84	능동로 92(www.theclassic500.com)
59	동대문구	1급	(주)경남관광호텔	108	장안동 366-7번지
60	동대문구	2급	부림관광호텔	44	전농동 620-27번지
61	동대문구	-	플라워 관광호텔	38	청량리동 30-6번지
62	중랑구	3급	메이관광호텔	49	상봉동 89-3(www.hotelmai.com)
63	중랑구	-	더홀릭관광호텔	69	상봉동 90-3
64	성북구	특2급	홀리데이인서울성북	126	종암동 3-1343
65	성북구	2급	브라운관광호텔	50	보문동4가 77-2
66	성북구	-	D.H 르네상스	30	동선동1 가92-20

67	강북구	1급	호텔빅토리아	110	미아4동 42-8(www.hotelvictoria.co.kr)
68	강북구	1급	호텔아카데미하우스	52	수유동 산76(www.academyhouse.co.kr)
69	도봉구	3급	소피아	51	쌍문동 88-1
70	노원구	1급	노블레스관광호텔	65	상계동 711-9(www.hotelnoblesse.co.kr)
71	은평구	2급	프라임인서울호텔	64	불광동302-13(www.primeseoul.com)
72	은평구	3급	벨라지오관광호텔	52	불광동 285-14
73	서대문구	1급	그랜드힐튼호텔	503	홍은동 201-1(www.grandhiltonseoul.com)
74	마포구	특2급	베스트웨스턴프리미어 서울가든호텔	362	도화동 169-1(www.seoulgarden.co.kr)
75	마포구	특2급	(주)아주호텔서교	135	서교동 354-5(www.hotelseokyo.co.kr)
76	마포구	특2급	(주)롯데호텔 롯데시티호텔마포	284	공덕동467(www.lottecityhotel.co.kr)
77	마포구	특2급	스탠포드호텔코리아(주)스탠포드호텔서울	239	상암동 1587(www.stanfordseoul.com)
78	마포구	-	유양호텔	42	서교동 377-1(hotelyouyang.com)
79	마포구	-	씨클호텔	40	합정동 382-17(www.circlehotel.co.kr)
80	마포구	-	메리골드호텔	186	양화로 112
81	마포구	-	HOTEL THE DESIGNERS	80	양화로 86
82	마포구	가족호텔	까사빌 신촌 서울	39	서강로 137(노고산동)
83	마포구	가족호텔	더 엠 호텔	56	월드컵북로 120(www.hotelthem.com)
84	강서구	특1급	메이필드호텔	239	외발산동 426 외1필지(www.mayfield.co.kr)
85	강서구	특2급	베스트웨스턴나이아가라호텔	96	염창동 259-2 외1필지(www.niagarahotel.co.kr)
86	강서구	특2급	(주)호텔롯데롯데시티호텔 김포공항	197	빙화동 886 외6필지(www.lottecityhotelgimpoairport.com)
87	강서구	1급	호텔 노스탈자	61	화곡동 1110 외1필지(www.hotelnostalgia.co.kr)
88	강서구	1급	리버파크 관광호텔	81	염창동 260 외1필지(www.riverpark.co.kr)
89	강서구	1급	그린월드 관광호텔	52	등촌동 505-2외 5필지
90	강서구	2급	에어포트 관광호텔	40	공항동 11-21(www.hotelairport.co.kr)
91	강서구	2급	뉴리젠트 관광호텔	40	화곡동 1111-7외 1필지
92	강서구	-	칼튼 관광호텔	64	화곡동 1110-3
93	강서구	-	공원 관광호텔	39	화곡동 371-21외 1필지
94	강서구	-	뉴티파니 관광호텔	36	외발산동 215
95	강서구	-	봄 관광호텔	50	외발산동 282-2
96	강서구	-	이지갤러리 관광호텔	56	화곡동 1097-4(www.eghotel.co.kr)
97	강서구	-	메이트 관광호텔	57	화곡동 921-6 외5필지(www.matehotel.net)
98	강서구	-	호텔 디아망	48	외발산동 280-1 외2필지(www.hoteldiamant.co.kr)
99	강서구	-	호텔에스	88	화곡동 918-23 외2필지(www.s-hotel.co.kr)
100	강서구	-	드어반 관광호텔	46	곰달래로 24길 35

101	구로구	특1급	쉐라톤서울디큐브시티호텔	269	신도림동 692
102	구로구	특2급	베스트웨스턴프리미어구로호텔	201	구로동 1128-1
103	금천구	특2급	노보텔엠베서더독산서울	219	독산4동 1030-1(www.ambatel.com)
104	금천구	-	이사벨관광호텔	57	독산동 150-10,11
105	금천구	-	호텔마인드	66	가산동 141-1
106	영등포구	특1급	콘래드서울호텔	434	여의도동 23
107	영등포구	특2급	렉싱턴호텔	235	여의도동 13-3
108	영등포구	특2급	코트야드바이메리어트	283	영등포동4가 442,442-1
109	영등포구	1급	여의도관광호텔	107	여의도동 10-3
110	영등포구	2급	(주)도도관광호텔	55	영등포동2가 94-154
111	영등포구	2급	R관광호텔	92	영등포동1가 121-6
112	영등포구	가족호텔	매리엇이그제큐티브아파트먼트서울	103	여의도동 28
113	서초구	특1급	JW메리어트호텔서울	497	반포동19-3(jw-marriott.co.kr)
114	서초구	특1급	서울팔래스호텔	276	반포동 63-1(www.seoulpalace.co.kr)
115	서초구	특2급	더케이서울호텔	250	양재동 202(www.temf.co.kr)
116	서초구	특2급	더리버사이드호텔	120	잠원동 6-1
117	서초구	2급	관광호텔 바빌론	81	잠원동 18-5
118	서초구	2급	프렌드관광호텔	59	서초동 1605-7(www.friendhotel.co.kr)
119	서초구	3급	유원메이트관광호텔	73	서초동 1589-4(www.yuwonmatehotel.co.kr)
120	서초구	가족호텔	프로비스타 가족호텔	170	서초동 1677-8(www.provista.co.kr)
121	서초구	1급	호텔센트로	94	서초동 1594-3(www.centrohotel.co.kr)
122	강남구	특1급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파르나스	546	삼성동 159-8(www.grandicparnas.com)
123	강남구	특1급	노보텔엠베서더강남서울	335	역삼동 603(www.ambatel.com)
124	강남구	특1급	르네상스서울 호텔	497	역삼동 676(www.renaissance-seoul.com)
125	강남구	특1급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654	삼성동 159-8(www.iccoex.com)
126	강남구	특1급	임피리얼팰리스호텔	404	논현동 248-7(www.imperialpalace.co.kr)
127	강남구	특1급	파크하얏트서울	185	대치동 995-14(www.parkhyattseoul.co.kr)
128	강남구	특1급	호텔리츠칼튼서울	374	역삼동 602(www.ritzcarltonseoul.com)
129	강남구	특2급	라마다서울호텔	246	삼성동 112-5(www.ramadaseoul.co.kr)
130	강남구	특2급	머큐어엠베서더쏘도배호텔	288	역삼동 642(mercureseoul.com)
131	강남구	특2급	베스트웨스턴프리미어강남	128	논현동 205-9(www.bestwesterngangnam.com)
132	강남구	특2급	삼정관광호텔	163	역삼동 604-11(www.samjunghotel.co.kr)
133	강남구	특2급	호텔리베라 서울	319	청담동 53-7(www.hotelriviera.co.kr)

134	강남구	특2급	호텔엘루이	139	청담동 129(www.ellui.com)
135	강남구	특2급	호텔프리마	120	청담동 52-3(www.prima.co.kr)
136	강남구	1급	그린그래스관광호텔	76	삼성동 141-10(www.greengrasshotel.com)
137	강남구	1급	선샤인 관광호텔	111	신사동 587-1(www.hotelsunshine.co.kr)
138	강남구	1급	세울스타스호텔	169	논현동 236-8(www.seoulstarshotel.com)
139	강남구	1급	영동관광호텔	131	논현동 6(www.youngdonghotel.co.kr)
140	강남구	1급	이비스엠배서더 서울	317	대치동 893-1(www.ambatel.com)
141	강남구	1급	트리아관광호텔	50	역삼동 677-11(www.triahotel.co.kr)
142	강남구	1급	팝그린관광호텔	69	신사동 614-1(www.popgreenhotel.com)
143	강남구	2급	녹스부띠끄관광호텔	41	역삼동 677-13(www.noxhotel.com)
144	강남구	2급	뉴힐탑관광호텔	82	논현동 152(www.newhilltophotel.com)
145	강남구	2급	다이내스티관광호텔	64	논현동 202-7(www.hoteldynasty.co.kr)
146	강남구	2급	제이비스 호텔	53	대치동 890-28(www.jbis.kr)
147	강남구	2급	힐탑관광호텔	57	논현동 151-30(www.hotelhilltop.co.kr)
148	강남구	3급	라까사관광호텔	61	신사동 527-2,3(www.hotellacasa.kr)
149	강남구	3급	렉스관광호텔	56	논현1동 18-2
150	강남구	3급	티파니관광호텔	53	청담동 132-17(www.tiffanyhotel.com)
151	강남구	3급	호텔자이언트	52	삼성동 45-10
152	강남구	-	베네치아	62	역삼동 606-28
153	강남구	-	호텔 더 디자이너스	90	삼성동 144-7,8(www.hotelthedesigners.com)
154	강남구	-	호텔라미르	150	역삼동 662-7(www.hotellamir.co.kr)
155	강남구	-	호텔G	53	논현동 56-21
156	강남구	가족호텔	오크우드프리미어	280	삼상동 159외 1(www.oakwoodpremier.co.kr)
157	송파구	2급	가락관광호텔	66	가락동 98-5(www.hotelkarak.com)
158	송파구	2급	잠실관광호텔	53	잠실동 250-9(www.jshotel.co.kr)
159	송파구	2급	파로스 관광호텔	52	잠실동 180
160	송파구	특1급	롯데호텔월드	462	잠실동40-1(www.lottehotelworld.com)
161	송파구	1급	레이크관광호텔	94	석촌동 158(www.hotellake.co.kr)
162	송파구	1급	캘리포니아관광호텔	130	가락동 98-6(www.californiahotel.co.kr)
163	강동구	3급	발리관광호텔	50	강동구 성내동 417-5
164	강동구	-	바고관광호텔	42	강동구 천호동 324-39
165	강동구	-	아르고호텔	55	강동구 길1동 415-18
166	강동구	-	코리아관광호텔	40	강동구 성내동 199-7
167	강동구	-	투비인관광호텔	92	강동구 길동 388-2

서울시 “이노스텔 지정업소 현황(41개소)

연번	업소명	객실수	주 소
1	고궁호텔	52	종로구 원남동 177-1
2	애플 백팩커스	18	종로구 묘동 141
3	호스텔코리아	29	종로구 송인동 202-13
4	종로원	30	종로구 익선동 201
5	명동호스텔	17	중구 다동 114
6	뉴코리아호텔	35	중구 회현동1가 86-3
7	명동게스트하우스	19	중구 남산동3가 17
8	클릭호텔	17	중구 충무로2가 12-5
9	현대서비스드레지던스	45	중구 충무로5가 22-5
10	트레블러스A코리아	22	중구 주교동 106-2
11	호텔썬본	20	서대문구 연세로 2나길
12	노블레스호텔	58	동대문구 장안동 465-5
13	메르디앙호텔	58	동대문구 장안동 465-4
14	호텔엘르인	54	용산구 갈월동 98-14
15	레인보우호텔	65	용산구 갈월동 98-2
16	뉴월드호텔	41	용산구 남영동 42
17	코보스호텔	65	영등포구 여의도동 13-12
18	벤허호텔	62	영등포구 여의도동 13-18
19	엠호텔	70	영등포구 여의도동 14-23
20	쓰리썬본스테이호텔	114	영등포구 여의도동 15-13
21	모나이게스트하우스	15	영등포구 양평동 4가 280-2
22	아드리게 호텔	40	강남구 역삼동 718-13
23	카라모텔	34	종로구 낙원동 135-1
24	임스하우스	23	종로구 와룡동 33
25	리스호텔	42	종로구 연지동 200
26	호텔명동	32	중구 회현동2가 199-6
27	도요코인서울동대문	175	중구 광희동2가 73
28	엠비즈호텔	50	강남구 삼성동 144-5
29	노블호텔	34	종로구 운니동 19
30	종로비즈	32	종로구 낙원동 75
31	아미가모텔	30	종로구 연지동 193-9
32	나나레지던스	23	중구 충무로2가61-2
33	백팩커스코리아	10	마포구 노고산동 106-105
34	호텔스타	48	강남구 역삼동 736-53
35	노블레스호텔	42	강남구 역삼동 642-2
36	썬비호텔	42	종로구 관훈동 198-11
37	서울백팩커스	20	중구 남창동 205-125
38	명동비즈	39	중구 을지로3가 335-2
39	영빈호텔	36	중구 쌍림동 240
40	맨하탄 호텔	45	강남구 역삼동 677-14
41	아이엠아이 호텔	41	강남구 역삼2동 718-18

한국관광공사 “굿스테이” 지정업소 현황(32개소)

연번	업소명	객실수	새주소
1	호텔앳홈	45	종로구 종로31길 40
2	Vole(볼)	50	강남구 봉은사로 176
3	맥스	45	강남구 테헤란로33길 6-11
4	닉스호텔	31	강서구월정로20길19
5	(주)코스테이	24	강서구화곡4동799-9번지
6	발렌타인 호텔	55	금천구시흥대로105길8
7	호텔마레	52	동대문구 천호대로 341
8	몽블랑모텔	28	마포구 백범로2길 21
9	WS호텔	13	마포구 신촌로18길 15-6
10	남경장호텔	42	마포구 양화로 11
11	준희빈호텔	56	마포구 양화로 16
12	휴	47	성북구 동소문로20나길 25
13	춘해	10	용산구 청파로43길 43
14	지에스호텔	29	종로구 수포로 87
15	수송모텔	26	종로구 율곡로4길 59
16	세화호스텔	17	종로구 익선동 79번지
17	모텔 제로	21	종로구 창경궁로 135-9
18	그린텔	21	종로구 청계천로 97-6
19	호텔스타	49	강남구 논현로87길 17
20	아이엠아이호텔	40	강남구 역삼2동718-18
21	노블레스호텔	42	강남구 테헤란로25길 6-13
22	맨하탄호텔	45	강남구 테헤란로37길 13-11
23	엠비즈호텔	50	강남구테헤란로79길11
24	백팩커스코리아	10	마포구백범로2길24
25	종로비즈	32	종로구 삼일대로26길 7
26	노블호텔	31	종로구 율곡로6길 19
27	호텔썬비	42	종로구 인사동7길 26
28	아미가 인 서울	30	종로구 종로31길 46-8
29	나나레지던스	23	중구 명동8가길 52
30	명동비즈	38	중구 충무로5길 22
31	서울백팩커스	20	중구 퇴계로2길 15-3
32	영빈호텔	36	중구 퇴계로56길 18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현황(212개소)**

연번	자치구	업소명	객실수	주 소
1	종로구	백배커스인사이드	9	명륜2가112번지2층
2	종로구	백팩커미스터씨카오산서울	4	명륜2가195-10번지1층
3	종로구	골든폰드게스트하우스	4	명륜4가188-16번지
4	종로구	봉하우스(BongHouse)	3	명륜3가117-2번지1층
5	종로구	코리아센트럴백팩커스	6	명륜4가146-1번지
6	종로구	진하우스(Jinhouse)	3	송인동178-75번지
7	종로구	인왕산게스트하우스	1	무악동60번지 왕산I-PARK108동303호
8	종로구	란스홈(Ran'sHome)	3	통인동150번지
9	종로구	경복궁게스트하우스	3	옥인동19-44번지 케이엠빌,2층
10	종로구	지하우스(G.House)	2	부암동 95-44번지
11	종로구	썬디스비앤비(Cindy'sB&B)	3	자하문로40길 19-18
12	중 구	남대문게스트하우스	8	회현동1가82-33번지
13	중 구	수키게스트하우스	2	신당동363-10번지청운하이츠빌라202
14	중 구	레지던시오	4	중구남산동2가18-6번지1층
15	중 구	에코하우스	1	중구남산동3가20-9번지5층
16	중 구	해피 게스트하우스	2	신당동432-2051번지타워빌라301호
17	중 구	명동그린게스트하우스	4	회현동2가30-5번지
18	중 구	철성엄마집	2	충무로4가120-3번지진양아파트605호
19	중 구	마마 게스트하우스	6	남산동2가18-12번지
20	중 구	Kay's House	1	신당동844번지남산타운아파트16-302
21	중 구	방랑 게스트하우스	13	중립동397-14번지
22	중 구	홈스테이 마마하우스	3	충무로4가120-3번지진양아파트709
23	중 구	국제게스트하우스	7	회현동1가82-14번지
24	중 구	윤앤진게스트하우스	4	회현동1가100-62번지삼호빌라가동101호
25	중 구	남산스카이게스트하우스	5	회현동2가49-20번지
26	중 구	엔포시즌	3	회현동1가100-49번지 지상2층 202호
27	중 구	B my guesthouse	9	회현동2가32-5번지
28	중 구	청계천의 집	2	황학동 2545 롯데캐슬 베네치아 102동 1712호
29	중 구	곰게스트하우스	3	필동2가91번지
30	중 구	아지트게스트하우스	7	다산로 10길 5-4(신당동)
31	중 구	오케이빌	1	을지로 157, 1258호(산림동, 대림아파트)
32	중 구	제이오너 게스트	8	퇴계로20나길 2-15(남산동2가)
33	중 구	아이하우스	4	소공로6가길 22, 3층
34	용산구	아네스 인	7	이태원동451-1번지
35	용산구	Robin's Nest (로빈스 네스트)	3	한남동 736-39번지 203호
36	용산구	한강뷰(Han river View)	2	한강로3가 16-85 GS한강에클라트 2401호
37	용산구	덕수궁하우스	4	원효로2가8-20번지
38	용산구	Doo backpackers	6	한남동686-11번지
39	용산구	시온게스트하우스	4	한남동729-10번지
40	용산구	Jung guesthouse	2	이태원동96-117번지2층

41	용산구	굿데이코리아	8	한남동653-11번지
42	용산구	SP@Itaewon	7	태원동112-11번지
43	성동구	코리아 스테이(Korea Stay)	1	옥수동 극동아파트 2동 1403호
44	성동구	홈 스테이	1	마장동 현대아파트 102동 1703호
45	광진구	Bob's homestay	2	용마산로8길 29(중곡동)
46	광진구	Sweet homestay	1	아차산로 552, 9동 1103호(광장동, 극동A)
47	광진구	에밀리홈스테이	2	뚝섬로34길 67, A동 303호
48	광진구	Homestay Café Naru	2	광장로1길 18(광장동)
49	동대문구	세계로가는 나	1	답십리동10번지 동아 102-903
50	동대문구	서울 스위트	1	장안동 329-2 힐스테이트A 1008동1201호
51	동대문구	투게더	1	장안동 336번지 현대홈타운 119동 105호
52	동대문구	Korea Stay	1	답십리동998-0번지101-603
53	동대문구	Ko-Stay(구.휘정스테이)	1	휘경동 57 휘경주공아파트 103동 2305호
54	동대문구	David House	1	청량리동 234-2번지 현대A 3동 1403호
55	동대문구	미네르바하우스(Minerva House)	1	이문동264-410번지4층
56	중랑구	용마산 홈스테이	2	사가정로71길19,101동(면목동,용마한신A)
57	성북구	정릉동508-42	3	정릉동508-42
58	성북구	브라운스톤	2	돈암동636 브라운스톤@101-1604
59	성북구	Yam Guest House	2	동선동3가41-1
60	성북구	BJ Guest House	1	성북동1가104-34
61	성북구	동글이네	2	정릉동1031 정릉힐스테이트@315-602
62	강북구	해피 홈스테이	1	도봉로157 두원아파트802호
63	강북구	해피 하우스	1	삼양로27길19 삼성래미안트리베라@ 217-404
64	도봉구	그린홈스테이	1	창동 805 동아그린(아)101-1306
65	도봉구	해피하우스	1	창동 808 동아청솔(아)115-704
66	도봉구	도봉홈스테이	2	도봉동 30-1 한신(아)109-1109
67	노원구	Kong's House	1	상계동1255 은빛아파트110동1504호
68	노원구	Book Lover's Homestay	1	중계동360-15 건영아파트308동1402호
69	노원구	Happy Homestay	2	공릉동121태릉현대홈타운아파트206동101호
70	노원구	DREAM HOUSE	1	중계동514 중앙하이츠아쿠아103동701호
71	은평구	코리아스테이	4	대조동 172-51
72	은평구	한국인의 집	2	불광동 131-16
73	은평구	Han Ok(한옥)	1	수색동 415-1 대림A 111-1504
74	은평구	히토미	2	갈현동 540 우남A 102-202
75	은평구	엘리쥬	2	신사동 370 두산위브A 103-1202
76	은평구	글로벌 은평 홈스테이	1	응암동 730-26 대양빌라 1층 101호
77	은평구	해피 하우스	1	진관1로 55,305동 201호
78	은평구	허마와리	2	통일로 796, 112동 302호
79	서대문구	씨티게스트하우스	5	연희동 119-7번지 2통4반
80	서대문구	제이케이하우스	7	창천동 53-22번지 24통5반5층
81	서대문구	스마일스테이	2	연희동 132-57 26통7반 연희파레스빌
82	서대문구	해당화스테이	1	북아현동 1-271번지 2층
83	서대문구	필그림	2	북가좌동 458 가재울아이파크
84	서대문구	Helen's Place	2	거북골로 154, 102-1508

85	서대문구	홈스테이	2	연희동 연희로 11아길 35
86	마포구	Backpacker Friends	5	독막로9길 43(서교동)
87	마포구	킴인 게스트하우스	5	와우산로21길 20-10(서교동)
88	마포구	BLU HOME	5	동교로 142-16
89	마포구	BLU SEOGYO	4	동교로 142-13
90	마포구	안녕 게스트하우스	3	성미산로 118-5, 201호(연남동,테크빌)
91	마포구	HOSTEL HONGDAE	3	월드컵북로6길 53-11, 401호(연남동)
92	마포구	패밀리&프렌즈 하우스	8	월드컵북로6길 81-12(연남동)
93	마포구	김치홍대게스트하우스	8	연남로1길 67-6(연남동)
94	마포구	빈티지 하우스	3	와우산로29바길 11(서교동)
95	마포구	스테이코리아	7	동교로27길 60-5(연남동)
96	마포구	킴코리아	7	동교로41길 12-7(연남동)
97	마포구	하이 게스트하우스	10	동교로15길 32(서교동)
98	마포구	포시즌하우스	8	동교로18길 15(서교동)
99	마포구	하이코리아	7	성미산로16길 3-3(연남동)
100	마포구	타임 게스트하우스	5	성미산로28길 31(연남동)
101	마포구	SPACE TORRA	7	연남로1길 6(연남동)
102	마포구	버즈네스트	6	연남로3길 18(연남동)
103	마포구	백팩커스 스페이스	4	동교로 211-9(동교동)
104	마포구	산호하우스	4	와우산로29가길 54-11(서교동)
105	마포구	르솔	6	월드컵북로4길 23-3
106	마포구	메이 게스트하우스	5	독막로3길 24-8
107	마포구	서울 아이 게스트하우스	5	성미산로22길 24
108	마포구	오아시스 게스트하우스	4	와우산로29가길 12(서교동)
109	마포구	홍시게스트하우스	7	동교로 148-6(서교동)
110	마포구	하우스테이	6	와우산로29나길 12(서교동)
111	마포구	JJ게스트하우스	9	연희로1길 40-4(동교동)
112	마포구	쿠킹하우스 M	6	포은로2나길 46(합정동)
113	마포구	알파	3	서강로18길 30
114	마포구	ICOS	4	고산3길 15(노고산동)
115	마포구	비빔하우스	5	성미산로29길 24-6(연남동)
116	마포구	그레이프가든하우스	3	와우산로29라길 21-1(서교동)
117	마포구	스튜디오 41번가	7	성미산로29길 32(연남동)
118	마포구	리앤노게스트하우스	4	연남로3길 18-9(연남동)
119	마포구	그레이스 게스트하우스	1	성암로 91, 105동204호(중동,현대아파트)
120	마포구	비하이브게스트하우스	3	독막로3길 52(서교동)
121	마포구	미스터킴스프렌즈 게스트하우스	4	동교로 153-5(서교동)
122	마포구	나무	3	연남로5길 24, 1동 101호(연남동)
123	마포구	포유	2	성암로 91101동 201호(중동)
124	마포구	에드하우스	3	잔다리로 20-11(서교동)
125	마포구	마포경	1	새창로 52, 106동 203호
126	마포구	패밀리하우스텔	8	월드컵북로4길 90(동교동)
127	마포구	OMG guesthouse	4	동교로 212-26(동교동)
128	마포구	소담게스트하우스	2	서강로20길 11, 302호(노고산동)

129	마포구	게스트하우스 주노	1	동교로38길 36(연남동)
130	마포구	Dustin Guest House	5	어울마당로 122-1(서교동)
131	마포구	두리월드하우스	5	월드컵북로6길 31-7(연남동)
132	마포구	Cozzzy Guest House	5	동교로23길 63(연남동)
133	마포구	Best View Riverside	2	와우산로 47,1002호(상수동양)
134	마포구	Seoulwise Guesthouse	8	월드컵북로6길 82-7(동교동)
135	마포구	엘로우 서브마린	5	동교로29길 14(연남동)
136	마포구	조코 서울 흥대	2	연남동390-71번지1층
137	마포구	마루지 게스트하우스	6	연남동504-16번지
138	마포구	로이하우스	9	연남동229-45번지
139	마포구	수토메	6	망월동472-20번지
140	양천구	The Cosy House	2	목5동901목동아파트126-308
141	양천구	현대하이페리온	2	목1동 916 현대하이페리온102-3807
142	양천구	목동하우스	2	목5동901목동아파트120-703
143	양천구	대원하우스	1	목1동808-5대원칸타빌아파트 101-509
144	양천구	하모니빌	1	목2동532-25 401호
145	강서구	로담하우스	2	강서로45다길25(화곡동1012-2)
146	강서구	아리아하우스	2	양천로30길 123-9, 101동 1206호
147	강서구	다솜하우스	1	공항대로39길 100, 대림@ 102동 401호
148	강서구	Homestay in Seoul	2	강서로56나길 37, 303동 908호
149	구로구	Hi WORLD!	2	신도림로 56-13, 802-401
150	금천구	명지홈	3	금천구 독산동 1088 독산주공@1402-505
151	영등포구	다ियो홈스테이	2	국제금융로7길1, 에이동402호
152	영등포구	Kelly homestay	2	영중로145,103동 402호
153	영등포구	서울민박	2	여의도동 40 장미A 비동 705호
154	동작구	행복한 김씨네	1	사당로2가길 102, 101동 2202호
155	동작구	해당없음	1	알마타길58,201동402호
156	동작구	아르떼하우스	1	현충로151,108동204호
157	동작구	해피하우스홈스테이	3	장승배기로26,105동1802호
158	동작구	KIM Eun Jin	1	동작대로 29길 119,112동 511호
159	동작구	Soony Homestay	1	상도로53길 8, 316-404
160	관악구	파크뷰 (Park view)	1	신림동 1735-1 휴먼시아A 103동1502호
161	관악구	엄마홈스테이	2	신림동 1693번지 국제산장A 101동 102호
162	관악구	코리아게스트하우스	1	봉천동 1718 벽산블루밍A 205동 803호
163	관악구	그레이스빌	1	남현동 602-62번지 금호파크빌리지 402호
164	관악구	아씨방	1	남현동 1072-60번지 예촌하이츠빌 102호
165	관악구	신림방	1	조원로31길 17, A동 302호
166	관악구	재키쌤 홈스쿨	1	국회단지9길
167	서초구	Song's BNB	2	남부순환로323길 38-16, 102동 1506호
168	서초구	SeoulStay	2	반포대로 122, B동 804호
169	서초구	서래 그리니치	1	사평대로28길31,2동
170	서초구	JOY HOME	2	서초대로65길 13-10(서초동)
171	서초구	로얄 홈스테이	2	남부순환로2183, 201동 302호
172	서초구	엘립	1	동산로12길 13-10, 101호(양재동)

173	서초구	KOREA SEOUL	3	남부순환로297길 31,2층 201호
174	서초구	House And Naughty Boys	2	사임당로80-18, 102호 아트빌라
175	서초구	금계	4	마방로 10(양재동)
176	서초구	POOG	2	식유촌길 79(우면동)
177	서초구	더 자 인 강남	1	서초대로73길 30, 508호
178	서초구	나눔이네	1	사평대로 154, 101동 1506호
179	서초구	수은의집	2	잠원로 37-48, 209동 101호
180	강남구	압구정게스트하우스	2	압구정로29길 71,23동 603호
181	강남구	선릉 하우스	3	봉은사로64길 3 (삼성동 114-2)
182	강남구	정 팬션	3	남부순환로397길 5, 902
183	강남구	스마트 하우스	1	삼성로 212 17동 409호
184	강남구	더 민스	1	역삼로 309, 103동 1002호
185	강남구	화가의 집	2	도산대로99길 28-12, 2층 201호
186	강남구	민성 게스트하우스	2	'도곡로63길 33, 401
187	강남구	신디의 보금자리	2	선릉로130길 20, 103동 202호
188	강남구	안 게스트하우스	5	압구정로34길 33, 22동 102호
189	강남구	오렌지	1	광평로31길 27, 103동 401호
190	강남구	비앤비 청담	2	선릉로148길 52-18 3층 (청담동)
191	강남구	강남 게스트하우스	4	테헤란로13길 40 (역삼동)
192	강남구	게스트하우스 더집	5	도산대로19길 47-1 (신사동)
193	강남구	압구정룸 A & B	2	강남구 압구정로 401, 51동 302호
194	강남구	게스트하우스강남	4	압구정로34길 33, 22동 202호
195	송파구	그루브 시티	2	풍성로 25나길 16-1, 101-301
196	송파구	별이네	1	한가람로 448, 107-602
197	송파구	유정	2	올림픽로 212 C-3903
198	송파구	가영	2	올림픽로 432 가락 삼화아파트 1-502
199	송파구	유균상	3	송파구 송파동 118-15번지
200	송파구	티나	1	송파구 삼전동 128-1 동화빌딩 5층
201	송파구	아름다운나라	2	중대로 24, 223-301
202	송파구	지일이네	1	중대로 24, 107-701
203	송파구	레인보우	2	석촌호수로 169
204	송파구	리라망하우스	1	잠실동 19 잠실엘스 157-303
205	송파구	키즈나	1	잠실로 62, 313동 2603호
206	송파구	러블리하우스	1	올림픽로 99. 127동 1101호
207	송파구	해피하우스	2	송파대로 32길 15, 102-103
208	송파구	소영	1	신천로 102, 7동 502호
209	송파구	RM NEAR GANGNAM & SAMSUNG STATION	3	올림픽로 99, 128동 1503호
210	강동구	리에하우스(Rie's house)	2	암사동518번지
211	강동구	락꾸 하우스	1	길동332번지
212	강동구	작은집(The small house)	1	암사동 442-1번지 101동 1005호

한옥체험업(65개소)

연번	자치구명	업소명	객실수	주소
1	종로구	유진하우스	8	종로구혜화동5-43번지
2	종로구	가회한옥체험관	11	종로구계동67-7번지
3	종로구	시인통신	2	종로구계동2-61번지
4	종로구	그린하우스	1	종로구계동67-3번지
5	종로구	북촌체험관	3	종로구 원서동 179-1
6	종로구	연우하우스	2	종로구가회동11-46번지
7	종로구	티 게스트하우스	5	종로구계동131-1번지
8	종로구	우프 게스트하우스	3	종로구계동140-29번지
9	종로구	락고재	5	종로구계동98번지
10	종로구	게스트하우스 마루	2	종로구계동2-164번지
11	종로구	승효하우스	2	종로구가회동11-109번지
12	종로구	대원	14	종로구적선동25번지
13	종로구	프렌즈 하우스	5	종로구명륜1가33-15번지
14	종로구	북촌 게스트하우스	6	종로구계동72번지
15	종로구	만해당	4	종로구계동43번지
16	종로구	심심헌	4	종로구가회동31-29번지
17	종로구	청춘재	1	종로구가회동31-24번지
18	종로구	밤부하우스	4	종로구계동134-1번지
19	종로구	유진 한옥문화센터	5	종로구혜화동5-31번지
20	종로구	여름집	4	종로구권농동156번지
21	종로구	이랑	2	종로구원서동91번지
22	종로구	소피아 게스트하우스	10	종로구소격동157-1번지
23	종로구	아리랑하우스	4	종로구계동101-6번지
24	종로구	취운정	4	종로구가회동31-53번지
25	종로구	효선당	3	종로구안국동93번지
26	종로구	사랑1010	3	종로구필운동185번지
27	종로구	효선당2	4	종로구안국동133-2번지
28	종로구	큰대문집	5	종로구계동124번지
29	종로구	가림재	2	종로구가회동16-16번지
30	종로구	남현당	5	종로구경운동23번지
31	종로구	문게스트하우스	7	종로구운니동87-1번지

32	종로구	라온	7	종로구사간동34번지
33	종로구	도회원부활을 꿈꾸는 사람들	4	종로구가회동199-2번지
34	종로구	두게스트하우스	5	종로구계동15-6번지
35	종로구	인우하우스	3	종로구계동2-63번지
36	종로구	가인	5	종로구가회동1-38번지
37	종로구	소리울	5	종로구사간동15-1번지
38	종로구	도다하우스	1	종로구계동36-10번지
39	종로구	적선재	3	종로구계동101-2번지
40	종로구	프렌즈하우스2	3	종로구명륜1가31-6번지
41	종로구	안코코 예술문화공간	3	종로구계동140-25번지
42	종로구	소피아하우스	5	종로구사간동21번지
43	종로구	청원산방	0	종로구계동79-12번지
44	종로구	삼청동 한옥 게스트하우스	7	종로구팔판동104-10번지
45	종로구	중앙	4	종로구계동133-5번지
46	종로구	김치 게스트하우스	5	종로구필운동228번지
47	종로구	고운당	5	종로구통의동21번지
48	종로구	한옥 게스트 하우스	3	종로구계동32-12번지
49	종로구	오복게스트하우스	6	종로구사간동57번지
50	종로구	해밀게스트하우스	4	종로구권농동152-2번지
51	종로구	명가재	5	종로구계동2-160번지
52	종로구	한게스트하우스	2	종로구통인동65-1번지
53	종로구	두꺼비하우스	4	종로구삼청동35-222번지
54	종로구	담소정	4	종로구가회동57번지
55	종로구	북촌여관	2	종로구계동65-1번지
56	종로구	양현재	1	종로구계동101-3번지
57	종로구	삼청동 민박	3	종로구팔판동112-5번지
58	종로구	1 2 3 한옥 게스트하우스	2	종로구행촌동209-57번지
59	종로구	모다	3	종로구화동67-1번지
60	종로구	한옥	3	종로구누하동168-3번지
61	종로구	소풍 게스트하우스	3	종로구계동140-17번지
62	종로구	봉산 게스트하우스	7	종로구계동81번지
63	광진구	육영재단어린이회관	7	광진구 광나루로441(능동)
64	성북구	한국가구박물관	2	성북구성북동330-577
65	강북구	한미장	1	강북구삼양로181길168(우이동304)

자치구 관광호텔 담당자 및 연락처

(2012. 12. 31 현재)

자치구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종로구	관광산업과	2148-1852
중구	관광홍보과	3396-4982
용산구	문화체육과	2199-7255
성동구	문화체육과	2286-5214
광진구	문화체육과	450-7582
동대문구	문화체육과	2127-4710
중랑구	문화체육과	2094-1844
성북구	문화체육과	920-2358
강북구	문화체육과	901-6213
도봉구	문화관광과	2289-1153
노원구	문화체육과	2116-3777
은평구	문화체육관광과	351-6504
서대문구	문화체육과	330-1550
마포구	문화체육과	3153-8382
양천구	문화체육과	2620-3405
강서구	문화체육과	2600-6634
구로구	문화체육과	860-2278
금천구	문화체육과	2627-1453
영등포구	홍보관광과	2670-3010
동작구	문화체육과	820-1260
관악구	문화체육과	880-3509
서초구	문화행정과	2155-6224
강남구	관광진흥과	3423-5552
송파구	국제관광도시추진단	2147-2106
강동구	문화체육과	3425-5254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과 관광호텔 담당(3704-9755)
 서울특별시 관광정책과 관광호텔 담당(2133-2826)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도시계획 담당(2133-8329)

관광숙박시설 건립 및 지원제도 안내서

- ▶ 발 행 일 : 2013년 2월
 - ▶ 발 행 처 : 서울특별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관광정책과
 -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61번지(서소문동 37번지)
 - ▶ 역 은 이 : 서울특별시 관광호텔건립지원센터 한광훈(2133-2823)
서울특별시 관광호텔건립지원센터 김완신(2133-2826)
서울특별시 관광호텔건립지원센터 김현호(2133-2827)
 - ▶ 인 쇄 :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

이 책은 서울특별시에서 관광숙박시설 건립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안내서로서
게재된 정보는 2013.1.3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므로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